

#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감사의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8개월 이라는 시간이 흘러 결과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국 각지를 누비며 모니터링을 해주신 모든 단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모니터링 과제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과 의료기관 이용, 문화·예술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0년 6. 10. 지방선거 투표소와 투표안내문,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였고, 올해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유사 항목을 모니터링하여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가 개선 요청했던 대부분의 사항들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안내문은 모든 선거구에서 제공될 만큼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는 모니터링단 여러분의 열정어린활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지가 결합되면서 일구어 낸 우리들의 소중한 성과입니다.

모니터링 대상기관에 결과를 송부하고 자체 개선을 요청한 후 가장 많이 접수한 질문은 "모니터링 항목에 적시된 사항이 의무사항입니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법을 이행해야 할 상당수의 의무대상기관들이 여전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존재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모니터링을 계기로 많은 의료기관과 문화·예술시설들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마련하고 시설물을 개조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2013년부터 의무대상기관에 포함되는 일부 사업장과 교육기관, 체육시설에서도 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끊임없는 사전점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해,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모든 영역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생활 현장 곳곳을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길에 모니터링단원 여러분들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회에 대해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현



### ■■ 목 차

#### **Contents** ■ ■

### I 모니터링단 선언문 / 1

### II 모니터링 사업 개요 / 5

1.	모니터링 사업 취지	및 목적		7
2.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8
3	모니터링단 주요 일	ス)	1	1

### Ⅲ 모니터링 결과 보고 / 13

과제	1.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16
과제	2.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모니터링	50
과제	3.	장애인	문화·예술시설 이용 모니터링	85



IV	모니터링	평가	및	제언	/	123
----	------	----	---	----	---	-----

1.	2012년 모니터링 사업 성과	125
2.	향후 개선 사항	126

### V 모니터링 활동 사진 / 129

### ※ 부록/143

〈부록	1>	활동소감문(가나다순)	145
〈부록	2>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원 명단	172
/부로	3>	무니터링 관러 조항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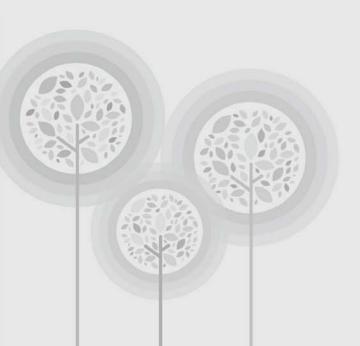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식(2012. 3. 22.)



# I. 모니터링단 선언문





### Ⅰ. 모니터링단 선언문

우리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400만 장애인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넘어서기 어려운 편견과 차별의 벽은 아직도 두텁기만 합니다.

장애인 차별의 현장은 여전히 넓습니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다 양한 영역에서, 장애인들은 오늘도 부당한 차별과 힘겹게 부대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이 특별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원치 않습니다. 비장애인과 구별되는 지위나 자리를 바라는 것은 더 더욱 아닙니다.

편견 없이 능력을 발휘하며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세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차별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세상, 편안하게 산책하고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 차별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서 원하는 자료에 접근하고, 영화관에서 편안하게 좋은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세상, 웹에 불편 없이 접근해 사이버 세상을 즐기는 세상,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자식으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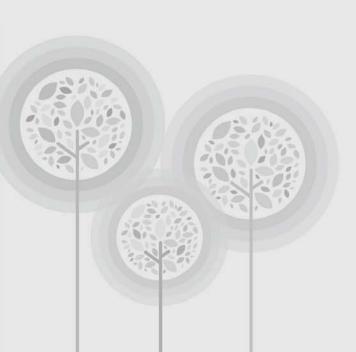


그러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일상의 현장을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우리 모니터링 단원은 장애인의 차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완전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세상의 밑거름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열정이 세상을 바꾸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 Ⅱ. 모니터링 사업 개요

#### 1

#### 모니터링 사업 취지 및 목적

#### 가. 모니터링 사업 취지

- 모니터링 사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 규정된 차별금지영역 및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를 위원회 진정사건·정책과제·기관협의 등과 연결시켜, 동법의 대국민 인식 제고와 실효적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2009년부터 주요 현안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적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생활 밀착형 주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참정권 행사' 와 '의료기관 이용', '문화·예술시설 이용'을 중심으로 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 여 차별 예방 및 홍보 강화,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함.

#### 나. 모니터링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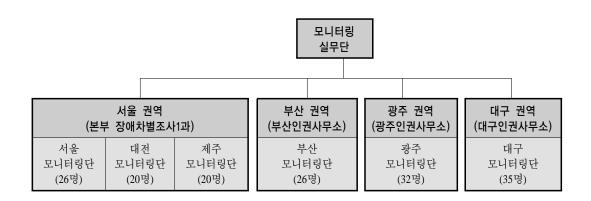
-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차별의 예방적 활동 강화
- 정책과제 발굴을 통한 장애차별 정책 및 제도 개선
-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실효성 있는 이행 유도
- O 장애차별시정 전담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 2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가. 모니터링단 구성

○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지역 등 6개 권역을 중심으로 구성



#### 나. 모니터링단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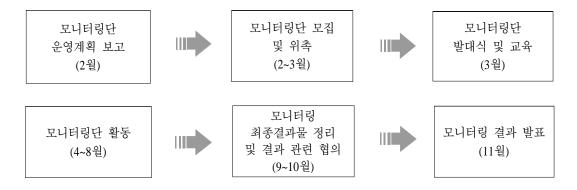
○ 각 지역별 20~30여명 규모로 선발하되, 모니터링단원의 50% 이상을 장애당사자로 구성하고 다양한 장애유형(지체, 시각, 청각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

(단위: 명. %)

				장애인			
지역	계	비장애인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호흡기	정신
서울	26	12	7	6	1	0	0
대전	20	2	11	3	3	0	1
부산	26	10	13	1	1	1	0
대구	35	13	16	3	3	0	0
광주	32	13	14	3	2	0	0
제주	20	6	12	2	0	0	0
계	159	56	73	18	10	1	1
(비율%)	100	35.06	47.40	11.69	4.55	0.65	0.65



#### 다. 모니터링 사업 흐름도



#### 라. 모니터링 개요

#### (1) 과제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권역 모니터링단별로 과제별 세부 내용에 대한 집합교육 실시
  -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및 장애차별 주요 결정례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령
  - 모니터링단의 역할 및 방식,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 (2)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전국 공통과제 3개, 지역 인권사무소의 경우 권역별 1개씩의 지역 과제 추가 선정
- 5개월 간(2012. 4.~8.) 월 2회 현장 모니터링 실시
- O 모니터링 대상기관에 사전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필요시 위원회 직원 동행
- O 모니터링 후 조별 체크리스트 각 1부씩, 개인별 활동보고서 제출
- 월별 과제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현장에서의 차별사례 발굴에 집중

#### (3)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사후조치

- O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료집 발간
-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공문 송부 및 기관 협의
- O 권역별 모니터링 결과발표회 개최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O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개선 권고 및 중·장기 장애정책 과제 발굴

#### 마. 모니터링 주제

#### <전국과제>

- O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2012. 4. 1. ~ 4. 11.)
-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모니터링 (2012. 5. 1. ~ 2012. 5. 31.)
- 장애인 문화·예술시설 이용 모니터링 (2012. 6. 11. ~ 6. 30.)

#### <지역별과제>

- 부산권역 장애인 재학 고등교육기관 모니터링(2012. 7. 23. ~ 8. 10.)
- 대구권역 장애인 활동영역 모니터링(2012. 7. 1. ~ 8. 17.)
- 광주권역 고등교육기관 이용 모니터링(212. 7. 23. ~ 8. 7.)



### 3 모니터링단 주요 일지

월	2012년도 주요 활동
1	○모니터링 사업 기획 ○제1차 실무단 회의 개최(2012. 1. 5.)
2	○제2차 실무단 회의 개최(2012. 2. 6.) ○모니터링 과제 선정(2012. 2. 16.) ○제3차 실무단 회의 개최(2012. 2. 21.)
3	○모니터링단 모집 및 위촉 ○2012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발대식 개최 및 전체교육 실시(2012. 3. 22.)
4	○모니터링 코디네이터 오리엔테이션(2012. 4. 6.)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현장 모니터링 실시(2012. 4. 1.~4. 11.) ○모니터링 사전설명회 개최 ・서울 : 2012. 3. 28.(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대전 : 2012. 3. 27.(화) 대전장애인인권포럼 ・제주 : 2012. 4. 3.(화) 제주시청소년수련관 ・부산 : 2012. 3. 29.(목)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울산 : 2012. 4. 3.(화)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 : 2012. 3. 16.(금)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경주 : 2012. 3. 28.(수) 경주시의회 ・상주 : 2012. 3. 16.(금)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지회 ・안동 : 2012. 3. 28.(수) 한국척수장애인협회경북협회 안동지회 ・광주 : 2012. 3. 30.(금)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전주 : 2012. 4. 3.(화) 전북시설인권연대 사무실
5	○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현장 모니터링 실시(2012. 5. 1.~5. 31.)  ○ 모니터링 사전설명회 개최  ・서울: 2012. 5. 3.(목)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대전: 2012. 4. 30.(월) 대전장애인인권포럼  ・제주: 2012. 4. 25.(수) 제주시청소년수련관  ・부산: 2012. 5. 3.(금)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울산: 2012. 5. 7.(월)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 2012. 4. 30.(금)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경주: 2012. 5. 4.(금) 경주시의회  ・상주: 2012. 5. 2.(수) 정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지회  ・안동: 2012. 5. 2.(수) 한국척수장애인협회경북협회 안동지회  ・광주: 2012. 5. 2.(수)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정주: 2012. 5. 4.(금) 전북시설인권연대 사무실



월	2011년도 주요 활동
	○'장애인 문화·예술 시설 이용' 현장 모니터링 실시(2012. 6. 11.~6. 30.)
6	○모니터링 사전설명회 개최  · 서울 : 2012. 5. 31.(목)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대전 : 2012. 5. 29.(화) 대전장애인인권포럼  · 제주 : 2012. 6. 4.(월) 제주시청소년수련관  · 부산 : 2012. 6. 4.(월)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 울산 : 2012. 5. 31.(목)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대구 : 2012. 5. 30.(수)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 경주 : 2012. 6. 5.(화) 경주시의회  · 상주 : 2012. 6. 4.(월) 전복지체장애인협회 상주지회  · 안동 : 2012. 6. 4.(월) 한국척수장애인협회경북협회 안동지회  · 광주 : 2012. 6. 5.(화)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 전주 : 2012. 6. 7.(목) 전북시설인권연대 사무실
7 8	○지역별 과제 모니터링 실시(2012. 7. 1.~8. 31.)  ○모니터링 사전설명회 개최  ・부산: 2012. 7. 17.(화)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울산: 2012. 7. 19.(목)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 2012. 7. 3.(화)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경주: 2012. 7. 11.(수) 경주시의회  ・상주: 2012. 7. 16.(월)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지회  ・안동: 2012. 7. 13.(금) 한국척수장애인협회경북협회 안동지회  ・광주: 2012. 7. 17.(화)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전주: 2012. 7. 18.(수) 전북시설인권연대 사무실
9	ㅇ과제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10	○모니터링 결과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및 개선계획 취합 (2012. 10. 22.)
11	○모니터링 결과발표회 개최 ・서울 : 2012. 11. 21.(수) 이룸센터 이룸홀 ・부산 : 2012. 11. 27.(화) 부산인권사무소배움터 ・대구 : 2012. 11. 27.(화)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기획전시실 ・광주 : 2012. 11. 27.(화) 광주광역시의회회의실

## Ⅲ. 모니터링 결과 보고





#### 〈결과보고서 구성〉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총 6개 과제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지	역	과제명	모니터링 기간
전국과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2012.4.1.~4.11.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모니터링	2012.5.1.~5.31.
		장애인 문화·예술시설 이용 모니터링	2012.6.11~6.30.
	부산 장애인 재학 고등교육기관 모니터링		2012.7.23.~8.10.
지역과 대구		장애인 활동영역 모니터링	2012.7.1.~8.17.
광주		고등교육기관 이용 모니터링	2012.7.23~8.7.

모니터링 과제는 크게 전국과제와 지역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국과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적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실무진 회의 및 상임위원회를 거쳐 확정하였고,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지역과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해당 권역이 중심이 되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는 그중 전국과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주요 내용, △모니터링 결과 분석, △모니터링 총평, △회신 등 개선사항, △체크리스트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모니터링 회신 등 개선사항은 위원회가 송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각 모니터링 기관이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기관 보호를 위해 익명처리후 주요 내용만을 요약하였습니다.

※ 부산·대구·광주 인권사무소에서 각각 실시한 지역별 모니터링 결과는 이 보고 서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1.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 〈1〉모니터링 개요



### 1 모니터링 과제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설 접근성 및 정당한 편 의제공 등에 대한 모니터링
  - 투표소 접근성
  - 투표 관련 정당한 편의 제공
  -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안내문 및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 2 모니터링 목적

O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정보, 인력 등의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개선 도모



### 3 모니터링 기간

○ 2012. 4. 1. ~ 2012. 4. 11. (선거기간 내)

### 4 모니터링 대상

- 투표소 : 모니터링 단원이 속한 선거구의 투표소를 중심으로 전국 167개소 선정
- 투표안내문 : 모니터링 단원이 속한 51개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안내문
- 선거관리위원회 웹 사이트 : 전국 64개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선정

#### 〈지역별 모니터링 대상 투표소, 투표 안내문, 웹사이트 현황〉

(단위: 개소, 건)

지역	계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제주
투표소	167	28	16	24	47	32	20
투표안내문	51	15	5	15	12	3	1
웹사이트	64	20	5	20	12	6	1

#### 5 모니터링 참가자

O 총 143명 참가 : 장애인 참가비율 약 67%



#### 〈장애유형별 모니터링 참가자 현황〉

(단위: 명)

			장애인				
지역	계	비장애인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호흡기	정신
서울	23	11	6	6	0	0	0
대전	16	2	10	3	0	0	1
부산	23	7	12	1	1	2	0
대구	33	12	10	3	3	0	0
광주	29	10	14	3	2	0	0
제주	19	5	12	2	0	0	0
계 (비율)	143 (100.0)	47 (32.8)	69 (48.3)	18 (12.6)	6 (4.2)	2 (1.4)	1 (0.7)

### 〈2〉모니터링 추진방법



### 1 모니터링 진행 절차

1	모니터링 사전 계획 수립
2	지역별 사전설명회 개최
3	해당기관 모니터링 협조 요청
4	현장 모니터링 실시
5	결과 보고서 작성
6	모니터링 결과 관련 기관 협의



### 2 모니터링 추진 내용

#### 가. 모니터링 사전 계획 수립

- 4월 모니터링 과제 선정
- 모니터링 과제 체크리스트 작성
- O 모니터링 방법 검토
- 모니터링 대상(투표소 및 투표안내문,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선정

#### 나. 지역별 사전설명회 개최

#### (1) 권역별(11개 지역) 사전설명회 개최

지역	일 시	장 소	주관	
서울	2012. 3. 28.(수) 14:00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서울본부	
대전	2012. 3. 27.(화) 14:00	대전장애인인권포럼 회의실	(장애차별	
제주	2012. 4. 3.(화) 14:00	제주시청소년수련관 회의실	조사1과)	
부산	2012. 3. 29.(목) 14:00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부산인권 사무소	
울산	2012. 4. 3.(화) 16:00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무실		
경북북부 (상주, 문경, 예천)	2012. 3. 16.(글) 10:00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지회 사무실		
대구	2012. 3. 16.(급) 14:00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대구인권	
경주	2012. 3. 28.(수) 10:00	경주시의회 사무실	사무소	
안동	2012. 3. 28.(수) 14:00	한국척수장애인협회경북협회 안동지회 사무실		
광주	2012. 3. 30.(금) 14:00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광주인권	
전주	2012. 4. 3.(화) 14:00	전북시설인권연대 사무실	사무소	

#### (2) 사전설명회 주요 내용

- 모니터링 과제 및 목적, 관련 법령 등 설명
- 참정권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교육



- O 지역별 모니터링 대상기관 안내
-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안내(이동시 안전, 단원증 패용, 모니터링단 조끼 착용 등)

#### 다. 해당기관 모니터링 협조 요청

O 모니터링 협조 공문 발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3. 26.)

#### 라. 현장 모니터링 실시

- 투표소 : 2012. 4. 11. 모니터링 실시(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일)
- 투표안내문 및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 4. 1.~ 4. 11. 기간 내 자율적으로 모니 터링

#### 마.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모니터링 단원 : 체크리스트는 조별 각 1부씩,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는 개인별 각 1~4부씩 제출
- 권역별 담당자 : 모니터링단원이 제출한 체크리스트 및 활동보고서 취합 및 결과 보고서 작성

#### 바. 모니터링 결과 관련 기관 협의

○ 모니터링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하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관 협의 진행(2012. 10. 19.)



#### 〈3〉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관련 규정



### 1

#### 모니터링 항목

#### 가. 투표소 및 기표대 접근성

○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을 위한 주출입구, 층별 이동, 기표대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 나. 투표 관련 정당한 편의 제공

○ 높낮이조절용 기표대, 점자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투표보조인력 제공 등 투표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 다.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안내문 및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 점자형·보이스아이삽입형·확대문자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안내문 및 장애인의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관련 모니터링

#### 2

####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투표소 접근성	지체	투표소 접근을 위한 주출입구, 층별 이동 등 물리적 환경		
정당한 편의제공	지체	휠체어사용자 투표가능한 기표대, 투표보조인력 제공 등		
경영안 원의제공	시각	점자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등		
안내문 및 시각 웹사이트		점자형·보이스아이 삽입형·확대문자로 된 투표안내문 제공 홈페이지 정보 접근성		
정보접근성	청각	홈페이지 내 동영상에 대한 자막 또는 수화통역 제공		



### 3 관련 규정

####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제3호 및 제4호

#### 나. 장애인권리협약

- O「장애인권리협약」제9조(접근성)
- O 「장애인권리협약」제29조(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 O 「장애인권리협약」제33조(국내이행과 모니터링)

####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O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7조(참정권)

#### 라. 기타

- 「공직선거법」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제2항,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7항,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제1항, 제157조(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제6항
- 「공직선거관리규칙」제3조(선거사무의 조정·대행 등) 제3항, 제74조(시각장애선거 인용 특수투표용지 등)



### 〈4〉 모니터링 결과 분석





### 투표소 접근성

####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투표소 접근성	지체	• 투표소 접근을 위한 주출입구 단차제거/거리/폭 • 기표대 접근을 위한 충간 이동

####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주출입구 단차 제거	주출입구 전면 유효 거리 (1.2m 이상)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0.8m 이상)	기표대 접근성 (층간 이동)
조사대상	167	167	167	167
충족	105 (계단, 턱 있으나 경사로 설치로 단차 제거)	150	155	9 (기표대가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설치되었으나 경사로, 엘리베이터 설치)
	47 (단차 없음)			157 (1층에 기표대 설치)
미충족	15	17	12	1
이행비율(%)	91.1	89.9	92.9	99.4



#### 다. 모니터링 주요 사례

#### 《 주요 사례 》

#### O 주출입구 단차 제거 관련,

- 임시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폭이 좁아 전동휠체어가 통과하기 어려움
- 임시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휠체어의 회전반경이 좁아 이용 어려움
- 임시경사로가 계단의 높이와 맞지 않아 턱이 발생함
- 임시경사로가 나무로 만들어져 부실하고 휘청거리는 등 안전하지 않음
- 입구와 달리 출구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다시 입구로 돌아 나와야 함

#### ○ 투표소 주출입구의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관련,

- 유효거리는 확보되어 있으나, 경사로-출입문-투표소까지 연결되는 복도를 책 상이나 짐 등으로 막아두어 실질적으로 이용 어려움
- 고정경사로 끝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통과가 어려움
-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입구 문이 잠겨 있음

#### ○ 투표소 주출입구의 통과유효폭(0.8m 이상) 관련,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이나, 투표장 바로 앞 문의 폭이 0.6m로 휠 체어가 통과하기 어려움

#### O 기타 참고사항

- 투표소까지 가는 길이 가파른 언덕으로 되어 있어 수동휠체어 접근이 어려움
- 투표소가 학교 건물이었는데, 기표대가 설치된 교실에는 보조인력이 있었으나, 복도에는 없어 이동이 불편함
- 투표 전날 비가 와서 투표소 실내 바닥에 미끄럼방지 깔개를 설치함에 따라 턱이 가려져 전동휠체어 바퀴에 끼는 등 이동에 어려움이 많음
- 투표소를 알리는 안내문이 너무 작은 글씨로 주출입구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저시력장애인은 투표소를 찾는데 불편함

#### 24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라. 결과 분석

#### O 주출입구 단차 제거

- 휠체어 사용자 등을 고려해 '주출입구 단차를 제거한 투표소' 비율은 91.1%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 6.2.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니터링 결과(68.8%)<sup>1)</sup>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높은 수준임.
- '주출입구 단차 제거'는 1) 단차가 없는 경우, 2) 단차(계단이나 턱)는 있으나 경사로 설치를 통해 단차를 제거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비율은 각각 30.9%와 69.1%임. 즉,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선정 시, 출입구에 계단이나 턱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기 보다는 장소를 우선 선정한 후 임시경사로 등을 통해 단차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음.
- '주출입구 단차는 제거되었으나 부적절하게 설치'된 경우로는, '임시경사로의 폭이 좁아 전동휠체어의 통과가 어려운 경우'와 '임시경사로의 재질이 나무로 되어 있어 이용하기 불안정한 경우' 등임.

#### O 주출입구 전면 유효 거리<sup>2)</sup>

- 모니터링 결과, '주출입구의 전면 유효 거리가 1.2m 이상인 투표소'는 89.9%로 나타났고, 이는 2010년 6.2.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니터링 결과(76.1%)3)와 비교해 보았을 때 다소 높은 수준임.
- 한편, 투표소 주출입구 전면유효거리는 1.2.m 이상이나, 실질적으로 이동이 어려운 사례로는 '경사로 끝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경사로가 설치된 주출입구 앞의 문이 잠겨 있는 경우' 등임.

#### O 주출입구 통과 유효폭

- 주출입구 통과 유효폭은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최소 0.8m 이상이어야 함.
- 모니터링 결과, **'주출입구 통과 유효폭이 0.8m 이상'인 투표소는 92.9**%로 매우 높게 나타남.

<sup>1)</sup> 국가인권위원회(2010).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p.36.

<sup>2)</sup> 출입구 턱 또는 경사로 상단 끝부터 건물입구(문)까지의 거리. 휠체어가 안정적으로 건물입구에 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며, 최소 1.2m 이상이 되어야 함.

<sup>3)</sup> 국가인권위원회(2010). 같은 보고서 p.36.



- 부적절 사례로는, 투표장 바로 앞 문의 폭이 0.6m여서 실질적으로 접근이 불가 능한 경우'임.

#### O 기표대 접근성(충간 이동 포함)

- 투표소 접근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표대가 2층 또는 지하에 설치되었고, 층간 이동을 보조하는 엘리베이터가 없을 경우, 실질적으로 투표소 접근이 어려움.
- 모니터링 결과, **휠체어 사용자가 기표대까지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는 투표소는 99.4%**였음. 기표대 접근성 보장은 1) 기표대가 1층에 설치된 경우와 2) 기표대가 1층 이외에 층에 설치되었으나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비율은 각각 5%와 95%였음.

#### 마.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선 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이 투표소에 쉽게 접근하여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투표소를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동보조기구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만일, 장애인이 투표소 또는 기표대에 접근하기 어려운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과도한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과 같은 차별 예외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적음.
- 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 대상 투표소 총 167개소 중 약 90%는 '주출입구 단차 제거,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통과유효폭 0.8m' 등으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성을 상당부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표대 역시 접근 가능한 비율이 99.4%로 높게 나타났음.
- 다만, **투표소 접근권은 기표를 위한 가장 기초적 권리**이며, 접근 불가능한 투표소 는 다수의 장애인에게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소 및 기표대 접근** 성은 충족률이 100%가 될 때까지 개선이 필요함.



### 2

#### 투표 관련 정당한 편의 제공

####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투표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공통	장애인이 지명한 2인이 투표 보조,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인력 배치
	지체	휠체어사용자가 투표 가능한 기표대 설치
	시각	점자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제공

####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휠체어사용자 투표 가능한 기표대 설치 (높낮이조절)	점자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제공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이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허용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인력 배치
조사대상	167	167	167	167
충족	138	164	161	164
미충족	29	3	6	3
충족비율(%)	82.6	98.2	96.4	98.2

#### 다. 모니터링 주요 사례

#### 《 주요 사례 》

- 휠체어사용자가 투표 가능한 기표대 설치 관련,
  - 기표대 높이가 수동휠체어 사용자에게는 높고, 전동휠체어 사용자에게는 낮음
  - 기표대의 폭과 깊이가 짧고 얕아 휠체어 사용 시 비밀투표가 어려움
  - 휠체어 사용자용 기표대가 비치되어 있으나, 보조인력 및 관리관 등 담당자들 이 비치 여부를 알지 못하여 안내받는데 어려웠음



#### 《 주요 사례 》

- 점자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제공 관련,
  - 기표 칸과 기표도장 크기에 차이가 없어 도장 찍기가 어려움
  - 투표보조용구는 투표용지를 끼우는 방식이라서 고정이 되지 않음. 투표용지 가 흔들려서 정확한 투표가 될지 의심이 됨
  - 시각장애인용 투표 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은 없고 번호만 있어 불편함
  - 점자투표보조용구와 확대경을 비치해두었지만, 투표보조원이 존재여부와 사용법을 알지 못함
- O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이 동반하여 투표 보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여부와 관련,
  - 보조인력에게 기표대 앞까지의 안내 및 기표방법 설명만을 부탁하였으나, 기 표대 안까지 들어옴. 보조를 거절하였으나 계속적으로 투표 활동을 방해하여 불쾌감을 유발함
  - 가족 이외의 동반 투표는 허용하지 않음
- O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인력 배치 관련.
  - 수화안내인이나 필담메모지 등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 투표안내 직원 및 도우미의 경우, 신분증 외에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선거관리요원인지 투표하러 온 시민인지 구분하기 어려움(신분증이 외투 등 옷 안으로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았음)

#### 라. 결과 분석

- 휠체어 사용자가 투표 가능한 기표대 마련
  -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하여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기표대**를 설치한 투표소는 **82.6%**에 해당되며, 이는 2010년 6.2.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니터링 결과(충족비율 56.3%)4)에 비해 증가한 수치임.

28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sup>4)</sup> 국가인권위원회(2010), 같은 보고서 p.36.



- 기표대가 부적절하게 설치된 예로는, '기표대의 높이가 수동휠체어사용자에게는 높고, 전동휠체어사용자에게는 낮은 경우', '기표대의 폭과 깊이가 얕아 휠체어가 외부로 튀어나옴으로써 비밀투표가 어려운 경우' 등임.

#### O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의 제공

- 모니터링 결과, 전체 167개 투표소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가 제공'된 곳은 164개소로, 98.2%에 해당됨. 이는 2010년 6. 2. 전국 동시지방선거 모니터링 결과인 57.6%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임.
- 그러나 시각장애 모니터링단원들은 '기표 칸과 도장 크기에 차이가 없어 칸 내에 정확히 도장을 찍기가 어려웠다.', '투표용지가 투표보조용구에 고정이 되지 않아, 정확히 기표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 '점자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은 없고 번호만 있어 기표하기 불편했다' 등 의견 제시함.

#### ○ 장애인 또는 가족이 지명한 2인이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허용

- 장애인 또는 가족이 지명한 2인이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96.4%의 투표소가 이를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0년 6. 2.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니터링 결과인 79.0%에 비해 상당부분 증가한 수치임.5)
- 다만, 일부 투표소에서는 가족 이외의 동반 투표는 허용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 보조인력이 기표소 안까지 동행하는 경우도 있었음.

#### O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인력 배치

- 모니터링 결과, **98.2%**의 투표소에서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0년 6. 2.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니터링 결과인 75.6%에 비해 증가한 수치임6.
- 한편, 보조인력의 유형으로는 선거관리요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자원봉 사자임.

<sup>5)</sup> 국가인권위원회(2010), 같은 보고서 p.36.

<sup>6)</sup> 국가인권위원회(2010), 같은 보고서 p.36.



#### 마.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7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제151조 제7항 및 제157조 제6항, 「공직선거관리규칙」제74조 제1항 등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의 제작,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의 투표보조 등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공직선거관리규칙」제3항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할 경우,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표를 하기 쉽도록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 투표보조인력 지정 등은 비록 임의규정이나, 모니터링 결과 이행률이 80.0% 이상으로 나타남. 또한 2010년 6. 2.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모든 항목에서 충족률이 증가하 여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 음을 알 수 있었음.
- 다만, **일부 투표소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기표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투표보조 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점자투표용구가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27조 제2항은 물론, 「공직선거관리규칙」제74조 제3항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3 투표 안내문 및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투표 안내문 및	시각	투표안내문(점자형, 보이스아이 삽입형, 확대문자) 제공 선관위 홈페이지 정보 접근성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청각	선관위 홈페이지 내 동영상에 대한 자막 또는 수화통역 제공



####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시각장애인	을 위한 투표인	반내문 제공 <sup>1</sup>		웹사이트 사용 및 정보 제공		
모니터링	짇	범자형 투표 안내	문	요청하는 경우,	051511- 740	키보드만	자막 또는	
항목	점자형 투표 안내문 제공	점자형· 묵자형 투표안내문 함께 제공	점자형 · 묵자형 내용 동일	보이스아이 삽입된 안내문제공	요청하는 경우, 확대문자로 된 안내문 제공	으로 컨텐츠 접근 가능	수화통역 제공	
조사대상	51	51	51	51	51	64	64	
충족	44	37	32	20	19	64	22	
미충족	0	7	12	31	32	0	8	
해당없음	72	72 7		-	-	-	343	
이행비율(%)	100.0	84.1	72.7	39.2	37.3	100.0	73.3	

- 1.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안내문 제공 모니터링은 '점자형', '보이스아이', '확대문 자'형태로 나뉘며, '점자형'은 선거관리위원회 요구 후 집으로 송부된 것을 기준으로, '보이스아이'와 '확대문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 요구 후, 담당자 답 변을 기준으로 체크
- 2. 총 51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투표안내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7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경우 점자투표안내문을 미제공하여 이런 경우 '해당 없음' 처리
- 3.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동영상자료 없음



#### 다. 모니터링 주요 사례

### 《 주요 사례 》

#### O 투표안내문 제공 관련

- 투표안내문에 투표소와 등재번호 등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점자형 안내문은 제공가능하나, 보이스아이 삽입 안내문, 확대문자 안내문은 제공한 적이 없어 금년에도 제공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묵자형 투표안내문, 보이스 아이, 확대 문자 등의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 해당 주민센터 및 선관위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서로 관할여부를 미룸

#### O 웹사이트 사용 및 정보제공 관련,

- 허위유포신고안내, 약도, 정당정책공약 등 이미지로 표시된 것들은 스크린 리더기가 읽지 못하여 시각장애인이 확인 불가능함
- 선거방송 다시보기 등 영상이 나오는 경우, 원도우미디어 플레이어 키보드 조 종이 어려움
- 메인화면 글자 포인트는 크지만 나머지 알림창이나 문서파일의 글자 포인트 는 크지 않아 저시력장애인의 내용 접근이 어려움
- 홈페이지나 투표안내문에 투표보조설비 및 인력 등에 대한 안내 필요함

#### 라. 결과 분석

#### O 점자형 투표안내문 제공

-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 모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동일 항목에 대해 2010년 6. 2.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니터링에서 결과가 49.2%로 나타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임").

#### 32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sup>7)</sup> 국가인권위원회(2010), 같은 보고서 p.36.



#### O 점자형·묵자형 투표안내문 동시 제공 및 내용 동일

- 점자형 투표안내문 제공 시, 묵자형 투표안내문도 **함께 제공하는 선거관리위원** 회는 84.1%였음.
- 점자형 투표안내문과 묵자형 투표안내문을 대조하였을 때, **내용이 동일한 경우** 는 72.7%였으며, 이는 일부 점자형 투표안내문의 경우 묵자형 투표안내문에 비해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O 요구 시, 보이스아이 및 확대문자로 된 안내문 제공

- 「공직선거법」제153조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동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또는 확대문자만으로 묵자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보이스아이가 삽입된 투표안내문 또는 확대문자로 된 투표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보이스아이 안내문'은 39.2%, '확대문자 안내문'은 37.3%만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O 웹사이트 사용 및 정보 제공

- 64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웹사이트 사용 및 정보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모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시각장애인을 고려 하여 **키보드만으로 컨텐츠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을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수화통역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에서는 **73.3%의 영상물만이 상기 편의 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마.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7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참 정권 행사에 필요한 홍보 및 정보 전달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는 정보전달 및 정보통신 등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점자, 확대문자 등 필요한 수 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공직선거법」제153조 제1항은 시·군·구선거관



리위원회가 시각장애인에게 투표안내문 발송 시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함께 동봉하도록 하고 있음.

- 모니터링 결과, 점자투표안내문은 100% 이행되고 있음. 이는 「공직선거법」 상 그의무가 명확히 명시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일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점자형 투표안내문과 묵자형 투표안내문을 함께 제공하지 않거나, 내용이동일하지 않은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었음. 한편, 점자를 읽지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요구할 경우, 보이스아이가 삽입된 투표안내문 또는 확대문자로 된 투표안내문을 제공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1/3 정도에 지나지않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도구 및 서비스 등'인 바, 점자 인지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일괄적으로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편의로 볼 수 없음.
- 한편, 웹사이트 사용 및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모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키보드만으로 컨텐츠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 어 있으나, 동영상 컨텐츠에 대해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자막 및 수화통역을 삽 입한 경우는 2/3 정도에 불과**하였음.



### 〈5〉 모니터링 총평



#### O 투표소 접근성

- 투표소 주출입구 및 기표대 등 시설물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일부 투표소는 경사로 등을 이용해 주출입구 단차를 제거하지 않거나, 자판기가 설치된 입구를 주출입구로 지정하는 등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투표소 및 기표대에 대한 접근성은 장애인이 투표를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 인 권리에 해당되므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고, 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차별예외사유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투표소 및 기표대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는 **향후 선거준비 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결과 및 관련** 내용을 안내하였음.

#### O 투표 관련 정당한 편의 제공

-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높낮이 조절용 기표대 설치,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점자 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 제공,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인력 제공 등 **투표 관** 런 정당한 편의 제공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 다만, 높낮이 조절용 기표대의 경우 전동휠체어 이용자에게 비좁아 비밀투표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등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고, 투표보조용구의 경우에 도 기표 칸이 좁아 시각장애인이 어려움을 겪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일부 발견되었음.
-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모니터링 결과 송부 시,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미진한 부분이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

#### O 투표 안내문 및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 투표안내문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는 유권자들이 선거시기와 방법, 장소



등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 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투표안내문은 점자를 제외하고는 보이스아이, 확대문자 등의 형식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상당히 적었고, 이로 인해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었음.
- 또한 웹사이트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키보드만으로 컨텐츠 접근이 가능** 하도록 설계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동영상에 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삽입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모니터링 결과를 송부하여 **향후 선거** 시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투표안내문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1조 및 제27조,「공직선거법」 제153조 등 해당 조항을 검토하여, 시각장애인유권자에게 점자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합.



# <6>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및 회신 등 개선사항 📦 🧊



##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공문 송부

가. 수신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목 2012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 따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동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 4월에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 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3.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장애인 차별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위 차별사례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제척인 개 선 사항 및 계획(붙임 참조) 등을 2012. 11. 9.(금) 까지 우리 위원회로 회 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참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의무) 및 제27조(참정권) 등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참정권 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회신 등 개선 사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회신

#### □ 투표소 관련 점검 및 개선요청 사항

- 1) 투표소 주출입구 단차 제거, 임시경사로 설치 시 각도 및 폭, 재질 등 확인
- 2) 투표소 주출입구 전면유효거리 및 통과유효폭 확인, 주출입구 장애물 제거
- 3)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기표대 마련 시, 전동휠체어사용자 고려
- 4) 점자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제공, 묵자투표용지와 동일한 정보 제공
- 5)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인력 배치
- 6)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이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허용
- 우리위원회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8. 10.부터 9. 14.까지 정당 및 장애인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와 협조 하에 전국 모든 투표소에 대한 장애인투표편의 실태를 일제 점검한 바 있으며,
- 점검결과를 토대로 휠체어 이동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모든 투표장소(3,556개소)에 는 임시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등 투표참여 취약계층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며, 임시경사로 설치 세부기준은 별지와 같음.
- 한편, 장애인겸용기표대 최초 보급 당시인 2004년에는 일반 휠체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일반 휠체어에 맞게 제작·보급하였으나, 현재는 전동휠체어 사용이 보 편화되어 그에 맞게 기표대를 개선할 필요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다만,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현행 기표대를 개선하기에는 물리적으로 가능하 지 않은 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임시 기표판을 제작하여 전동휠체어 사용자 가 투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 또한, 대통령선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되는 투표보조용구에는 일반 투표 용지와 동일하게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등 후보자정보를 점자인쇄할 계 획임(재·보궐선거에서는 기호, 교육감재선거에서는 후보자명 점자인쇄).
- 아울러 종전 선거와 동일하게 모든 투표소에는 투표안내도우미를 2명씩 배치하여 장애인 투표편의를 지원하는 한편,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포 함)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정한 바 와 같이 투표보조행위를 허용하도록 하겠음.



※ 참고로 우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장애인 등의 투표참여 취약계층 에 대한 투표편의 향상차원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선거인으로서 손 떨림 또는 시지각 협응능력 저하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가족 등에 의한 투표보조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음.

#### ② 투표안내문 관련 점검 및 개선요청 사항

- 1)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과 일반(묵자)형 투표안내문 제공
- 2) 점자형 투표안내문 제공 시, 묵자형 투표안내문과 동일한 내용 제공
- 3) 시각장애인 요청 시, 보이스아이 또는 확대문자로 된 투표안내문 제공
- 우리위원회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일반 투표안내문을 매세대에 발송하는 외에 시각장애선거인 세대에 대해서도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추가적으로 발송하여 왔 으며, 점자형 투표안내문에는 '투표할 수 있는 사람, 투표일시, 투표장소, 투표방 법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점자 뿐만 아니라 묵자로 인쇄하여 왔음.
- 다만, 점자형 투표안내문 제작일정상 구체적인 투표장소 및 약도 정보를 시각장 애선거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구·시·군위원회가 관내 시각장애선거인 세대에 직접 전화안내를 하는 등 투표장소 안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 한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시 모든 점자형 투표안내문은 확대문자로 인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voice-eye)를 점자형 투표안내문 앞면 표지 상 단에 인쇄하는 한편, CD 형태의 음성형 투표안내문(72,000개)을 제작하여 점자형 투표안내문 뒷면에 부착하여 시각장애선거인 등에게 발송하였음.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한 기준으로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제작・ 보급할 계획임.

#### ③ 웹사이트 관련 점검 및 개선요청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시·청각장애인이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웹 접근성 보장

○ 우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여 가급적 시·청각장애인이 모든 선거정보를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임.



### 「별 지」

#### 임시경사로 설치 세부기준

#### 1. 기울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정에 따른 1:8 ~ 1:12의 경사도를 충족하되,
- 투표장소의 여건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그 이하로 적용
  - ※ 기울기 1:8 ~ 1:12의 경사도 적용이 어려운 경우
  - 임시경사로가 도로 및 화단 등 구역을 침범하는 경우
  - 경사로의 시작부분에 휠체어 등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등
- 2. 유효폭 : 0.9미터 이상의 유효폭 충족

#### 3. 하중 및 재질

27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플라스틱 또는 금속성 재질

※ 하중요건 : 전동휠체어 100kg + 장애인 1인 70kg + 활동보조인 70kg + 13% 무게 가산

#### 4. 추락방지턱 등 설치

임시경사로 양측면에 휠체어 바퀴가 밖으로 미끄러나가지 않도록 추락 방지턱 및 측벽 설치



# <7>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

### 1) 투표소

항목		점 검 사 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1. 투표소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지나 가기 어려운 정도의 <b>계단이나 턱</b> 이 있으나, <b>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b> <b>않음</b>	계단,턱 ○ 경사로 ×	계단,턱 ○ 경사로 ○	계단,턱 ×	* 주출입구에 계단이나 턱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그정경사로 임시경사로 기타
	투 표 소	2. 투표소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 거리가 1.2m 이상임				* '아니오'인 경우, 유효거리cm - 전면 유효거리란, 출입구턱-건물입구(문) 또는 경사로상단끝-입구 (문) 간의 거리
	시 설 접 근 성	3. 투표소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 '아니오'인 경우, 통과유효폭 m * <u>문이 잠겨져 있더라도,</u> 요구 시 열어주었을 때 <u>0.8.m 이상이면 '예' 표기</u>
		4. 기표소가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설치되었으나, 경사로 또는 엘리베 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기표소 지하 또는 2층 ○ 경사로 등 ×	기표소 지하 또는 2층 ○ 경사로 등	기표소 1층 ○	* 기표소가 1층에 설치되 어 있는 경우 "해당없 음" 표기 * 기표소가 1층이 아닌 경우, 설치 층층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예'인 경우, □ 경사로 □ 엘리베이터 □ 기타
	정 당 한	5. 휠체어사용자가 투표 가능한 높이 의 기표대가 마련되어 있음				* '예'인 경우, 기표대높이 m



항목		점 검 사 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투표소 접근성	편의	6.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가 제공되고 있음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예'인 경우,   점자투표용지  투표보조용구  점자용보조용구  돌보기 및 확대경 기타							
및 투표참여	제 공	7.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이 동반하여 투 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8. 장애인의 투표활동을 위한 보조인 력이 배치되어 있음(투표방법 안 내, 이동 보조 등)			* '예'인 경우, 보조인력의 유형 (예시: 선거관리요원)
	9. 위	투표소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및 의견	이 있는 7	병우, 작성	요망(사진첨부)							



## 2) 선거관리위원회 안내문 및 웹사이트

항목	점 검 사 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시각장애 인을 위한 투표 21개명	1.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음	□ 1-1, 1-2	<b>=</b> 2		* 시각장애인이 아닌 경우, 해당지역 선관위에 전화 로 요청하여 체크 * 만일, 시각장애인이 아닌 이유로 점자형투표안내문 제공을 거부당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1-1. 점자형 투표안내문과 묵자형 투표 안내문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안내문 제공	1-2. 점자형 투표안내문과 묵자형 선거안내 문의 내용이 동일함				* 조원 중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 비교하여 체크
	2. 요청하는 경우, 보이스아이가 삽입된 안내 문을 제공하고 있음				* 해당지역 선관위에 전화로
	3. 요청하는 경우, 확대문자로 된 안내문을 제 공하고 있음				질문하여 체크
	4.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 로 컨텐츠 접근이 가능함				
웹사이트 사용 및 정보제공	5.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선관위 홈페이지 내 동영상에 대해 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제공 하고 있음				* 동영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자막 수화통역 기타
	6. 상기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및 으	l견이 있	는 경우, 적	가성 요망(	(사진첨부 등)



## 〈8〉 지역별 모니터링 결과



### 1) 서울

항목		점검사항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투 표	주출입구 단차 제거	28	1	15	12	93.8
	소 시	주출입구 전면 유효 거리(1.2m 이상)	28	25	3	0	89.3
가.	스 설 접	설 주출입구 통과유효폭(0.8m 이상) 접			3	0	89.3
투표소 접근성	근 성	기표대 접근성(층간 이동)	28	0	4	24	100.0
및 투표참여	정 당	휠체어사용자 투표 가능한 기표대 설치 (높낮이 조절)	28	28	0	0	100.0
	한 편	점자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제공	28	28	0	0	100.0
	의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이 동반하여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허용	28	27	1	0	96.4
	제 공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인력 배치	28	28	0	0	100.0
	점 자 형	점자형 투표안내문 제공	15	15	0	0	100.0
나. 시각 장애인을	· 투 표 안	점자형·묵자형 투표안내문 함께 제공	15	12	3	0	80.0
위한 투표안내문 제공	안 내 문	점자형·묵자형 투표안내문 내용 동일		12	3	0	80.0
"0	요청	하는 경우, 보이스아이 삽입된 안내문 제공	18	9	9	0	50.0
	요청	하는 경우, 확대문자로 된 안내문 제공	18	7	11	0	38.9
다. 웹사이트	키보	드만으로 컨텐츠 접근 가능	20	20	0	0	100.0
사용 및 정보제공	자막	또는 수화통역 제공	20	1	8	11	5.0



## 2) 대전

항목		점검사항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투 표	주출입구 단차 제거	16	0	13	3	100.0
	소 시	주출입구 전면 유효 거리(1.2m 이상)	16	16	0	0	100.0
	스 설 접	주출입구 통과유효폭(0.8m 이상)	16	16	0	0	100.0
가. 투표소	근 성	기표대 접근성(충간 이동)		0	2	14	100.0
접근성 및 투표참여	정당	휠체어사용자 투표 가능한 기표대 설치 (높낮이 조절)	16	8	8	0	50.0
一	당 한 편	점자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제공	16	16	0	0	100.0
	의제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이 동반하여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허용	16	15	1	0	93.8
	공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인력 배치	16	15	1	0	93.8
	점 자 형	점자형 투표안내문 제공	5	5	0	0	100.0
나. 시각 장애인을	투 표	점자형·묵자형 투표안내문 함께 제공	5	3	2	0	60.0
위한 투표안내문 제공	안 내 문	점자형 묵자형 투표안내문 내용 동일	5	1	4	0	20.0
A11 0	요청	하는 경우, 보이스아이 삽입된 안내문 제공	5	1	4	0	20.0
	요청	하는 경우, 확대문자로 된 안내문 제공	5	1	4	0	20.0
다.	키보	드만으로 컨텐츠 접근 가능	5	5	0	0	100.0
웹사이트 사용 및 정보제공	자막	또는 수화통역 제공	5	0	0	5	0.0



## 3) 부산

항목		점검사항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투 표	주출입구 단차 제거	24	6	10	8	62.5
	소 시	주출입구 전면 유효 거리(1.2m 이상)	24	22	2	0	91.7
	시 설 접	주출입구 통과유효폭(0.8m 이상)	24	22	2	0	91.7
가. 투표소	근 성	기표대 접근성(충간 이동)		1	1	22	50.0
접근성 및 투표참여	정마	휠체어사용자 투표 가능한 기표대 설치 (높낮이 조절)	24	20	4	0	83.3
	당 한 편	점자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제공	24	24	0	0	100.0
	의제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이 동반하여투표를 보조 할 수 있도록 허용	24	24	0	0	100.0
	공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인력 배치	24	24	0	0	100.0
	점 자	점자형 투표안내문 제공	15	14	0	1	100.0
나. 시각	형 투 표	점자형·묵자형 투표안내문 함께 제공	15	14	0	1	100.0
장애인을 위한 투표안내문 제공	안 내 문	점자형·묵자형 투표안내문 내용 동일	15	14	0	1	100.0
110	요청	하는 경우, 보이스아이 삽입된 안내문 제공	15	8	7	1	55.6
	요청하는 경우, 확대문자로 된 안내문 제공			8	7	1	55.6
다. 웹사이트	키보	드만으로 컨텐츠 접근 가능	20	20	0	0	100.0
사용 및 정보제공	자막	또는 수화통역 제공	20	20	0	0	100.0



## 4) 대구

항목		점검사항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투 표	주출입구 단차 제거	47	3	32	12	91.4
	소 시	주출입구 전면 유효 거리(1.2m 이상)	47	43	4	0	91.5
	설 접	주출입구 통과유효폭(0.8m 이상)	47	45	2	0	95.7
가. 투표소	근 성	기표대 접근성(충간 이동)		0	2	45	100.0
접근성 및 투표참여	정당	휠체어사용자 투표 가능한 기표대 설치 (높낮이 조절)	47	34	13	0	72.3
十五44	· 당 한 편	점자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제공	47	44	3	0	93.6
	의 제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이 동반하여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허용	47	46	1	0	97.9
	공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인력 배치	47	46	1	0	97.9
	점 자 형	점자형 투표안내문 제공	12	9	0	3	100.0
나. 시각 장애인을	· 투 표 안	점자형·묵자형 투표안내문 함께 제공	12	9	0	3	100.0
위한 투표안내문 제공	안 내 문	점자형 묵자형 투표안내문 내용 동일	12	9	0	3	100.0
~11 O	요청	하는 경우, 보이스아이 삽입된 안내문 제공	12	2	7	3	22.2
	요청	하는 경우, 확대문자로 된 안내문 제공	12	3	6	3	33.3
다. 웹사이트	키보	=만으로 컨텐츠 접근 가능	12	12	0	3	100.0
사용 및 정보제공	자막	또는 수화통역 제공	12	0	0	12	0.0



## 5) 광주

항목		점검사항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투 표	주출입구 단차 제거	32	4	21	7	84.0
	소 시	주출입구 전면 유효 거리(1.2m 이상)	32	28	4	0	87.5
	설 절 접	주출입구 통과유효폭(0.8m 이상)	32	29	3	0	90.6
가. 투표소	근 성	기표대 접근성(층간 이동)		0	0	32	0.0
접근성 및 투표참여	정다	휠체어사용자 투표 가능한 기표대 설치 (높낮이 조절)	32	28	4	0	87.5
,-2,	당 한 편	점자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제공	32	32	0	0	100.0
	의 제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이 동반하여투표를 보조 할 수 있도록 허용	32	30	2	0	97.8
	공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인력 배치	32	31	1	0	96.9
	점 자 형	점자형 투표안내문 제공	3	3	0	0	100.0
나. 시각 장애인을	· 투 표 안	점자형·묵자형 투표안내문 함께 제공	3	3	0	0	100.0
위한 투표안내문 제공	안 내 문	점자형·묵자형 투표안내문 내용 동일	3	3	0	0	100.0
~·II O	요청さ	하는 경우, 보이스아이 삽입된 안내문 제공	3	3	0	0	100.0
	요청さ	하는 경우, 확대문자로 된 안내문 제공	3	3	0	0	100.0
다. 웹사이트	키보드	드만으로 컨텐츠 접근 가능	6	6	0	0	100.0
사용 및 정보제공	자막	또는 수화통역 제공	6	0	0	6	0.0



## 6) 제주

항목		점검사항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투 표	주출입구 단차 제거	20	1	14	5	93.3
	소 시	주출입구 전면 유효 거리(1.2m 이상)	20	16	4	0	80.0
	스 설 접	주출입구 통과유효폭(0.8m 이상)	20	18	2	0	90.0
가. 투표소	근 성	기표대 접근성(충간 이동)		0	0	20	0.0
접근성 및 투표참여	정당	휠체어사용자 투표 가능한 기표대 설치 (높낮이 조절)	20	20	0	0	100.0
十五44	· 당 한 편	점자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제공	20	20	0	0	100.0
	의제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이 동반하여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허용	20	19	1	0	95.0
	공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인력 배치	20	20	0	0	100.0
	점 자 형	점자형 투표안내문 제공	1	1	0	0	100.0
나. 시각 장애인을	투 표	점자형·묵자형 투표안내문 함께 제공	1	1	0	0	100.0
위한 투표안내문 제공	안 내 문	점자형·묵자형 투표안내문 내용 동일	1	1	0	0	100.0
~11 O	요청	하는 경우, 보이스아이 삽입된 안내문 제공	1	0	1	0	0.0
	요청	하는 경우, 확대문자로 된 안내문 제공	1	0	1	0	0.0
다. 웹사이트	키보	드만으로 컨텐츠 접근 가능	1	1	0	0	100.0
사용 및 정보제공	자막	또는 수화통역 제공	1	1	0	0	100.0



## 과제 2.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모니터링

### 〈1〉모니터링 개요



## 1 모니터링 과제

- 의료기관 '시설 접근성' 및 '의료행위 시 정당한 편의 제공', '홈페이지 정보접근 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 의료기관 시설 접근성
  - 의료행위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 의료기관 홈페이지 정보 접근성

## 2 모니터링 목적

○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및 상담, 관련 서식 제공 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와, 시설 접근성 및 홈페이지 정보 접근성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함.



## 3 모니터링 기간

O 2012. 5. 1. ~ 2012. 5. 31.(한 달간)

## 4 모니터링 대상

- 종합병원 56곳 :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내과 등 9개 이 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된 병원
- 한방병원 37곳 :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병원
- 요양병원 65곳 :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병원

#### 〈지역별 모니터링 대상 병원 현황〉

(단위: 개소)

지역	계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종합병원	56	13	5	7	12	13	6
한방병원	37	3	3	5	6	19	1
요양병원	65	12	8	11	16	12	6

## 5 모니터링 참가자

○ 총 140명 참가 : 장애인 참가비율 약 66.4%



#### 〈장애유형별 모니터링 참가자 현황〉

(단위: 명)

		장애유형					
지역	계	비장애인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호흡기	정신
서울	23	11	6	6	0	0	0
대전	15	1	10	3	0	0	1
부산	23	8	11	1	1	2	0
대구	33	14	14	3	2	0	0
광주	27	9	13	3	2	0	0
제주	19	4	13	2	0	0	0
계 (비율%)	140 (100.0)	47 (33.6)	67 (47.9)	18 (15.86)	5 (3.6)	2 (1.4	1 (0.7)

## 〈2〉모니터링 추진방법



## 1 모니터링 진행 절차

1	모니터링 사전 계획 수립
2	지역별 사전설명회 개최
3	해당기관 모니터링 협조 요청
4	현장 모니터링 실시
5	결과 보고서 작성
6	모니터링 결과 관련 기관 협의



## 2 모니터링 추진 내용

### 가. 모니터링 사전 계획 수립

- 5월 모니터링 과제 선정
- 모니터링 과제 체크리스트 작성
- O 모니터링 방법 검토
- 모니터링 대상(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선정
- 5월 모니터링 계획 및 사전 설명회 개최안 보고(4. 23.)

### 나. 사전설명회 개최

### (1) 권역별(11개 지역) 사전설명회 개최

지역	일 시	장 소	주관	
서울	2012. 5. 3.(목) 10:00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서울본부	
대전	2012. 4. 30.(월) 14:00	대전장애인인권포럼 회의실	(장애차별	
제주	2012. 4. 25.(수) 14:00	제주시청소년수련관 회의실	조사1과)	
부산	2012. 5. 4.(글) 14:00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부산인권	
울산	2012. 5. 7.(월) 16:00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무실	사무소	
경북북부 (상주, 문경, 예천)	2012. 5. 2.(수) 11:00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지회 사무실	'실	
대구	2012. 4. 30.(글) 14:00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대구인권	
경주	2012. 5. 4.(크) 10:00	경주시의회 사무실	사무소	
안동	2012. 5. 2.(수) 14:00	한국척수장애인협회경북협회 안동지회 사무실		
광주	2012. 5. 2.(수) 14:00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광주인권	
전주	2012. 5. 4.(글) 14:00	전북시설인권연대 사무실	사무소	



#### (2) 사전설명회 주요 내용

- O 모니터링 과제 및 목적, 관련 법령 등 설명
- O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교육
- O 지역별 모니터링 대상기관 안내
-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안내(이동시 안전, 단원증 패용, 모니터링단 조끼 착용 등)

#### 다. 해당기관 협조 요청

- O 모니터링 대상기관 목록 협조 요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협조 요청(2012. 4. 13.)
- O 모니터링 협조 공문 발송
  - 6개 권역 158개 모니터링 대상 의료기관(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모니터링 협조 요청(2012. 5. 7.)

#### 라. 현장 모니터링 실시

O 조별 월 2회 현장 방문 및 모니터링 실시

#### 마.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모니터링 단원 : 체크리스트는 조별 각 1부씩,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는 개인별 각 1~4부씩 제출
- 권역별 담당자 : 모니터링단원이 제출한 체크리스트 및 활동보고서 취합 및 결과 보고서 작성

#### 바. 모니터링 결과 관련 기관 협의

○ 보건복지부의 협조 하에 모니터링 결과를 각 피모니터링 병원에 송부한 후 미진 한 사항에 대해 개선계획 제출 요구(2012, 10, 19,)



## 〈3〉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관련 규정



## 1

### 모니터링 항목

#### 가. 의료기관에서의 시설 접근성

○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위한 주출입구, 복도 및 통로, 접수대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 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진료 및 상담, 의료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의 점자 및 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 다. 의료기관 시설 홈페이지 정보 접근성

○ 의료기관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관련 모니터링

## 2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시설 접근성	지체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및 높이 복도 및 통로 유효폭·충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시각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설치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	의료기록 제공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부
	청각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시각		키보드 사용을 통한 병원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예약 가능 여부

## 3 관련 규정

####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제3호 및 제4호

#### 나. 장애인권리협약

- O 「장애인권리협약」제9조(접근성)
- 「장애인권리협약」제21조(의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 O「장애인권리협약」제25조(건강)
- O 「장애인권리협약」제33조(국내이행과 모니터링)

####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 O 「장애인차별금지법」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
- O「장애인차별금지법」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 라. 기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및 [별표2], 동법 시행규칙 [별표1]

#### 56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4〉모니터링 결과 분석





## 시설 접근성

##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시설이용 접근성	지체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및 높이 복도 및 통로 유효폭·충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시각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설치

###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이행 비율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158	149 (단차없음 : 62) (경사로설치:87)	9	90.6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158	139	19	88.0
주출입구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158	154	4	97.5
	적정 문 형태 및 재질 (회전문 또는 무거운 재질 아님)	158	128	30	81.0
	점형블럭 설치	158	107	51	67.7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158	41	117	25.9
	_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 여부	10	5	5	5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158	132	26	83.5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이행 비율
	적정 통과 유효폭(1.2m 이상)	158	156	2	98.7
복도 및 통행로	_ 통과 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 또는 통행로에 장애물 없음	156	135	21	86.5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158	149	9	94.3
접수대	적정 접수대 높이 (0.7m 이상 0.9m 이하)	158	60	98	38.2
심구내	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158	25	133	15.8

#### 다. 모니터링 주요 사례

### 《 주요 사례 》

#### O 주출입구 단차 제거 관련,

- 경사로의 각도가 심하여(45도 가량) 수동휠체어 이용이 어려움.
- 경사로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어 전동 휠체어의 바퀴가 밀림.
-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리프트 입구가 잠겨 있고, 도움벨을 눌러 도 응답이 없는 등 실제 사용이 불가능함.
- 경사로 앞 시멘트가 손상되어 휠체어 이용이 위험함.
- 경사로가 지그재그형태로 설치되어 전동휠체어 회전이 어려움.

#### ○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관련,

- 경사로 끝에 유효거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바로 문이 설치되어 있어, 휠체 어가 뒤로 넘어질 위험성이 큼.

#### O 주출입구 통과유효폭(0.8m 이상) 관련,

- 주출입구 한쪽 문이 닫혀 있어 관리실에 요구하였으나 열어주지 않음.
- 주출입구 안쪽에 화분이 있어 통행 불편함.



### 《 주요 사례 》

#### O 주출입문 형태 및 재질 관련,

- 주출입문이 두꺼운 유리로 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면서 문을 여닫기 어려움.

#### O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관련,

- 주출입구에 점형블럭이 설치되어 있으나, 출입구에서부터 엘리베이터까지는 선형블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병원 내부시설 이용이 어려움.
- 점형블럭 위에 카페트가 깔려 있어 블록을 확인하기 어려움.
- 점형블럭의 파손이 심해 확인이 어려움.

#### O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관련,

- 점자안내판과 촉지도식안내판이 설치되었으나, 주출입구가 아닌 후문에 설치되어 있음.
- 병원 주출입구에 촉지도식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안내판 앞에 화분이 놓여 있어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어려움.
-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되지 않음.

#### O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관련,

-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입구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있으나, 폭이 2.3m로 좁음.
- 장애인전용주차장 옆면에 경사가 있어, 휠체어 사용자가 차에 내렸을 때 굴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장애인용 주차장이 지하 1층에 설치되었으나, 지하1층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경사가 급하여 혼자서는 이용이 어려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자전거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 복도 및 통행로 통과 유효폭(1.2m 이상) 및 장애물 설치 관련,

- 복도폭은 1.2m 이상이나 복도 중간에 화분과 의자가 비치되어 있어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움.



### 《 주요 사례 》

#### ○ 병원이 2층 이상에 설치된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관련,

- 엘리베이터가 2대 가동되지만 한 대는 폭이 좁아 전동휠체어의 탑승이 불가 능했고, 다른 한 대는 전동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하나 2층과 3층을 운행하지 않아 사실상 전동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음.
- 엘리베이터 타러 가는 복도의 폭이 87cm로 좁아 엘리베이터 접근이 어려움.

# ○ 접수대 높이(0.7m 이상 0.9m 이하) 및 하부공간(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 상) 관련,

- 휠체어사용자 전용 접수대가 마련되어 있으나, 깊이가 0.35m로 휠체어사용자 가 이용하기 부적절함.
- 접수대 윗판이 이동식이라서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다가도 휠체어사용자가 방문하면 윗판을 조정하여 하부 공간 확보가 가능함.
- 장애인 전용 창구가 있었으나, 비장애인의 항의로 철거된 곳이 있음.

#### O 기타 참고사항

- 접수를 하고 진료실로 이동하는 곳에 급경사로가 있음.
-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으나 폭이 좁아 이용이 어려움(기준이하 설치).
-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앞에 점자표기가 되어 있으나, 글자가 거꾸로 붙여져 있음.

#### 라. 결과 분석

#### O 주출입구 단차 제거

- 휠체어 사용자 등을 고려해 '주출입구 단차를 제거한 병원'은 전체 158개 중 149개로 90.6%에 해당됨. 병원별로는 종합병원이 100.0%, 한방병원이 87.0%, 요 양병원이 86.4%로, 종합병원의 단차제거율이 가장 높았음.
- '주출입구 단차 제거'된 149건 중 단차(계단이나 턱)가 아예 없는 경우 62건, 단차는 있으나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단차를 제거한 경우는 87건으로 나타났음.
- '주출입구 단차 제거가 부적절한 사례'로는 '경사로의 각도가 심하여 수동휠체

#### 60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어 이용이 어려운 경우', '경사로 바닥면에 미끄럼방지매트가 깔려 있어 휠체어바퀴가 끼는 경우', '경사로 앞 시멘트가 훼손되어 휠체어바퀴가 걸리는 경우' 등이 있었음.

#### O 주출입구 전면 유효 거리 (1.2m 이상)

- 전면 유효거리는 '출입구 턱 또는 경사로 상단 끝부터 건물입구(문)까지의 거리'로, 이는 휠체어가 안정적으로 건물입구에 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요 건이며, 최소 1.2m 이상이 되어야 함.
- 모니터링 결과, '주출입구의 전면유효거리가 1.2m 이상인 병원'은 88.0%로 나타 났고, 병원별로는 종합병원이 98.2%, 한방병원이 83.8%, 요양병원이 81.5%로, 종합병원의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았음.

####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0.8m 이상)

- 주출입구 통과 유효폭은 휠체어의 이용과 관련되며, 최소 0.8m 이상이 되어야 함.
- 모니터링 결과, '주출입구 통과 유효폭이 0.8m 이상'인 병원은 97.5%이며, 병원 별로는 종합병원이 100.0%, 한방병원이 97.6%, 요양병원이 96.9%로, 종합병원의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았음.
- 한편, 부적절 설치 사례로는 주출입구 한쪽 문이 닫혀 있어 관리실에 요구하였으나 열어주지 않아 휠체어의 통과가 어려운 경우, 출입구 안쪽에 화분이 있어 휠체어 통과가 어려운 경우 등이 있었음.

#### O 적정 문 형태 및 재질 (회전문 또는 무거운 재질 여부)

- 주출입문의 형태가 회전문으로 되어 있거나, 재질이 무거운 유리 또는 금속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뇌병변장애인이나 휠체어장애인 등에게 불편함을 초래할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 문이 회전문이나 무거운 재질로 되어 있는 병원은 전체의 19.0%에 해당하였으며, 병원유형별로는 종합병원이 17.9%, 한방병원이 32.4%, 요양병원이 12.3%로, 한방병원의 부적절 설치율이 가장 높았음.



#### O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접근 편의로, 구체적인 설치방 법은 「편의증진법」에 명시되어 있음.
- 모니터링 결과, 전체 병원의 67.7%만이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주출입구에 점형블럭을 설치하고 있고, 병원별로는 종합병원이 78.6%, 한방병원이 62.2%, 요양병원이 61.5%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이 사례로는 '점형블럭 위에 카페트가 깔려 있어 인식이 어려운 경우', '점형 블럭의 파손 정도가 심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점형블럭은 설치되어 있으나, 엘리베이터까지 선형블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내부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었음.

#### O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과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건물 내부 구조 및 설계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편의증진법」에 명시되어 있는 편의시설 중 하나임.
- 모니터링 결과, 상기 편의시설 중 하나라도 설치한 병원은 25.9%에 불과하였으며, 병원별로는 종합병원이 28.6%, 한방병원이 27.0%, 요양병원이 23.1% 설치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위 편의시설을 설치한 병원 41곳 중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한 병원은 10곳 이었으나, 그 중 5곳은 해당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음.
- 부적절 설치 사례로는 '촉지도식안내판 앞에 화분이 놓여 있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점자안내판이 주출입구가 아닌 후문에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었음.

#### O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사용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주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야 함.
-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율'은 83.5%로 나타났으며, 병원별로 는 종합병원이 96.4%, 한방병원이 75.7%, 요양병원 76.9%로 한방병원의 설치율이 가장 낮았음.

#### 62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부적절 사례로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입구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 폭이 2.3m로 되어 있는 등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 옆면에 경사가 있어, 휠체어 사용자가 차에서 내렸을 때 굴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을 자전거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었음.

#### ○ 복도 또는 통행로 통과 유효폭(1.2m 이상) 및 장애물 설치 여부

- 병원 복도 및 통행로가 휠체어 등이 통과할 수 있도록 유효폭이 1.2m 이상인 경우는 98.7%로 양호한 편이며, 병원별로는 종합병원이 100.0%, 한방병원이 97.3%, 요양병원이 98.5%로, 종합병원의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았음.
- 그러나 일부 복도는 화분이나 의자 등이 비치되어 실제 유효폭이 1.2m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이는 156건 중 21건임.

#### ○ 병원이 건물 2층 이상에 설치된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 모니터링 결과, 병원이 2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모니터링 대상병원 158곳 중 9곳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한방병원 2곳과 요양병원 7곳이었음.

#### ○ 접수대 높이(0.7m 이상 0.9m이하) 및 하부 공간(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물 중 하나는 진료접수 및 예약, 수납 등을 담당하는 접수대로, 휠체어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모니터링 결과, 접수대 높이가 휠체어 장애인을 고려하여 0.7m 이상 0.9m 이하 인 병원은 38.2%에 불과하였으며, 하부공간이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인 병원도 15.8%에 불과하였음.
- 병원별로는 접수대규격과 하부공간 적정한 경우가 각각 종합병원의 경우 64.3% 와 32.1%, 한방병원의 경우 21.7%와 0.0%, 요양병원의 경우 25.0%와 10.8%로, 한방병원의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음.



#### 마.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제31조 제2항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의료행위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은 종합병원 및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등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 및 이용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원 규모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종합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모니터링 대 상으로 선정하여, 158곳을 점검한 결과, 주출입구 단차제거, 주출입구 전면 유효 거리 및 통과유효폭, 주출입문 형태 및 재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로 통과 유효 폭, 층간 엘리베이터 등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주출입구 점 형블럭 설치 및 점자안내판 등 설치, 휠체어장애인을 고려한 적정 접수대 설치 등 은 설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를 병원별로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종합병원의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요양병원의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따라서 「편의증진법」 기준에 미흡하게 설치된 병원시설은 개선이 필요함.

## 2 의료행위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	점자자료・확대문서・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의료기록 제공 여부		
경영안 원의제공	청각	병원진료 및 상담 등을 위한 수화통역·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점자자료·확대문서·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의료 기록 제공	병원 진료 및 상담을 위한 수화통역·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조사대상	158	158
충족	41	39
미충족	117	119
충족비율(%)	25.9	24.7

### 다. 모니터링 주요 사례

### 《 주요 사례 》

### ○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의료기록 제공 여부 관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관련 기록은 전문의나 원무과에 요구하면 '소리안'이라는 장비를 통해 병원에서 직접 수령 가능함(소리안-장비를 통해 문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전달함).
- 병원 내원 3일 전에 신청하면, 점자진단서 제공. 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 인에 한해 수령 가능.
-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식은 제공하지 않으나, 본인 확인 후,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를 USB에 저장해 줌.
-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면 확대문서는 제공하나, 대부분 보호자와 동반하여 방문하므로 점자자료나 보이스바코드까지 제공한 적은 없음.

#### O 병원진료 및 상담 등을 위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관련,

- 진료 시 화상전화서비스나 수화통역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나, 필담은 허용 됨. 다만, 필담은 환자의 보호자가 해야 함.
- 수화통역사가 따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병원 직원과 의사, 간호사 중수화가능자가 있어 사전 요청하면 언제든 제공 가능함.
-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가 가능한 모니터와 태블릿pc가 준비되어 있음.
- 청각 장애인에 대한 편의는 아직 제공되지 않으나, 일부 직원은 수화 교육을 받고 있음.



### 《 주요 사례 》

- 입구 안내데스크에 화상전화기를 설치하여 청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화상전화기가 있으나 응급실에만 설치되어 있음.

### O 기타 참고사항

- 접수대 옆에 "장애인이 이동과 의료행위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준다"는 배너를 설치하였음.
- 그동안 장애인들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함.
- 시청각장애인과 관련된 편의제공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나, 병원에 공공 의료재활팀이 있어 장애인 관련 상담 및 안내 서비스, 의료행위의 보조 등을 제공함.

### 라. 결과분석

### ○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의료기록 제공

- 묵자형태의 의료기록을 인식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은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점 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된 의료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 어야 함.
- 모니터링 결과, 전체 158개 병원 중 25.9%에 해당하는 41개 병원만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고, 병원유형별로는 종합병원이 56곳 중 18곳(32.1%), 한방병원이 37곳 중 7곳(18.9%), 요양병원이 65곳 중 16곳(24.6%)으로종합병원에서의 제공율이 가장 높고, 한방병원에서의 제공율이 가장 낮았음.
- 의료기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편의 유형으로는 확대문서, 점자자료, 보이스바코드 삽입, 확대기 비치, 텍스트변환프로그램 비치 등이 있었으며, 요구방식은 점자자료의 경우 원무과 또는 담당의사에게 사전요구, 확대문서는 당일 요구 후 제공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한편, 제공방식과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는 응답이 집으로 송부해준다는 응답보다 많았고, 제공기간은 당일과 일주일 이내가 가장 많았음.
-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 66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보호자가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편의를 요구한 적 없어서 등이 있었음.

### ○ 병원 진료 및 상담을 위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 청각 장애인의 경우, 전문의와의 상담내용 및 진단결과를 비롯하여, 진료예약 방법 등 다양한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요구할 경우 수 화통역 및 화상전화서비스 등과 같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 모니터링 결과,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화상전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병원은 전체 158곳 중 24.7%에 해당하는 39곳에 불과하였고, 병원유형별로는 종합병원이 56곳 중 28곳(50.0%), 한방병원이 37곳 중 5곳(13.5%), 요양병원이 65곳 중 6곳(9.2%)으로 종합병원에서의 제공율이 가장 높고, 요양병원에서의 제공율이 가장 낮았음.
- 의료기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인근 수화통역 센터와 연계하여 요청하는 경우와 수화통역 가능한 직원이 상시 대기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화상전화기를 제공하는 곳은 7곳이었으나, 그 중 1곳은 실제 사용이 곤란함.
- '편의 요구방식'은 원무과 또는 담당의사에게 사전요구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제공기간'은 사전 요구하면 당일 바로 제공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한편, 청각장애인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용이 많이들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보호자가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편의를 요구한 적 없어서 등이 있었음.

### 마.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제2항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의료행위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의료행위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1항, 시행령 [별표3] 등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은 당해 기관에서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 이에 종합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158곳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문서 등은 25.9%,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화상전화서비스는 24.7%의 병원에서만 제공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이를 병원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는 한방병원에서(18.9%),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편의는 요양병원에서(9.2%) 제공율이 가장 낮았음.
- 진료결과 및 진단명, 전문의 소견 등은 건강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장애인에게도 차별없이 제공되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병원들 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 및 관련 법률 조항 등을 안내하여 법 이행을 독려함.

## 3 의료기관 홈페이지 정보 접근성

###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시각	키보드만으로 병원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 예약 가능 여부

###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 내 병원이용정보 확인 가능 여부 (키보드를 통한 접근성)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 예약 가능 여부		
조사대상	158	158		
충족	61	24		
미충족	62	93		
해당없음	35 (홈페이지 없음)	41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예약 불가)		
충족비율(%)	49.5	20.5		

※ 충족비율(%) = 충족 / (조사대상-해당없음)

#### 68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다. 모니터링 주요사례

### 《 주요 사례 》

#### O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관련,

- 홈페이지의 인쇄 페이지는 키보드 접근성이 좋으나 예약관련 페이지에서 목록, 글쓰기 버튼으로 이동이 안됨.
- 홈페이지에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글씨 확대 기능은 있으나, 키보드로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는 거의 없음.
- Tab, Enter, 방향키만으로도 정보접근 및 진료예약이 가능하나, 진료예약의 경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키보드를 이용한 접근기능이 있지만 글자확대기능과 음성지원서비스가 마련 되어 있지 않음.
- 진료 예약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이미지파일로 되어 있어 읽히지 않음.
- 병원위치 약도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 리더기로 읽을 수 없음.

### 라. 결과 분석

### ○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 내 병원이용정보 확인(키보드만 사용하여 이용 가능한지 여부)

- 시각장애인이 병원 홈페이지에 제공된 진료과목, 의료진, 진료시간 및 약도 등의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키보드만으로도 웹정보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 만일,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마우스를 필히 사용해야 한다면 시각장애인은 홈페이지 정보접근 제약이 클 가능성이 높음.
-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158개 병원 중 123개 병원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중 61개 병원(49.5%)만이 키보드를 통한 웹접근성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병원유형별로는 종합병원이 57.1%, 한방병원이 54.2%, 요양병원이 37.2%로 나타남.



### O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 예약

- 최근 많은 병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진료 예약을 받고 있으며, 이에 시각 장애인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예 약을 받고 있는 117개의 병원 중 24개의 병원(20.5%)에서만 시각장애인의 접근 성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병원유형별로는 종합병원이 33.3%, 한방병원이 17.4%, 요양병원이 5.0%이었음.

### 마.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1항, 시행령 [별표3] 등에 따르면,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은 당해 기관에서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웹사이트의 경우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 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함.
- 다만,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 4. 11.부터,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1. 4. 11.부터 이러한 의무가 적용되므로, 해당 병원들은 시각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함.
- 모니터링 결과, 시각장애인이 키보드만으로 이용 가능한 병원 홈페이지는 49.5% 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예약이 가능한 병원은 20.5%에 불과함.
- 홈페이지에는 진료과목과 의료진, 진료시간, 연락처, 병원약도 뿐 아니라, 의료기록 조회 및 발급 등 각종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접근권 보장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임. 따라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해당 의무를 안내함.



### 〈5〉 모니터링 총평



### O 의료기관 접근성

- 시설 접근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주출입구 단차제거·전면유효거리·통과유효 폭·재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로 유효폭, 층간 엘리베이터 등의 적정 설치율 은 양호한 편이나,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및 점자안내판 등 설치,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적정 접수대 설치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병원별로는 요양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시설 접근성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및 「편의증진법」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피모니터링 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관련 규정을 알리고 개선을 독려함.

#### O 의료행위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 시청각 장애인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즉,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및 확대문서 등은 25.9%,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및 화상전화서비스는 27.4%의 병원에서만 제공하고 있었음.
- 병원유형별로는 종합병원에서의 제공율이 가장 높았고, 시각장애인 편의는 한 방병원에서, 청각장애인 편의는 요양병원에서 가장 낮았음.
- 진료기록, 의료정보는 건강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제공 되어야 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 별금지법」이 명시한 '정당한 편의제공'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높음. 따라서 이 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 및 관** 련 규정을 안내하여 이행을 독려함.

#### O 의료기관 홈페이지 정보 접근성

- 의료기관 홈페이지 정보 접근성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예약이 가능한 경우는 모니터링 대상병원의 1/5에 지나지 않아 비장애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전예약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2009. 4. 11.부터,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은 2011. 4. 11.부터 웹 접근성 보장 의무가 적용됨.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웹 접근권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경우, 해당 병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 므로 모니터링 결과 및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등 차별 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함.

## 〈6〉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및 회신 등 개선사항 🔑 🧊



###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공문 송부

가. 수신자 : 보건복지부

제목 2012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 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 따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동법의 실효 적 이행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 5월에는 의료기관 이용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3.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장애인 차별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위 차별사례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모니터링 결과를 안 내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선사항 및 계획(붙임 참 조) 등을 2012. 11. 9.(금)까지 우리 위원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참고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건강권에서 의 차별금지) 및 제18조(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 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등에 따라 장애인에게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회신 등 개선 사항

런도 O런 네요		개선 사항	
협조 요청 내용	기관	주요 내용	비고
		· 종합병원	
	A 종합병원	- 반구형 벽부형 촉지도 설치 예정(2013. 10.)	
	B 종합병원	- 키보드만으로 병원이용정보사용 가능하도록 수정 예정 (2012.11.30. 완료) -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예약이 가능하도록 수정 예정(2012.12.31. 완료)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통 과유효폭 및 높이, 복도 및 통로 유효폭·충간 이동을	C 종합병원	<ul> <li>점형블럭, 장애인 접수대 설치 완료</li> <li>향후 점자안내판 등, 접수대하부공간 예산수립 후 설치 예정</li> <li>점자자료, 확대문서 등 고가의 장비임에 따라 예산 수립 후 구입 예정</li> <li>원무팀 직원 수화통역 교육 실시 예정</li> <li>현재 본원 홈페이지 개편작업 실시하고 있으며, 장차법 준수하여 개편 예정</li> </ul>	
위한 편의시설 설치, 접수 대 높이 및 하부공간, 장애 인전용주차구역 마련, 주 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점 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설치 등	D 종합병원	<ul> <li>점형블럭, 점자안내판 등 설치 예정(2013. 12.)</li> <li>접수대 관련 항목 병원 리모델링 공사시 시설보완토록 추진하 겠음</li> <li>시·청각장애인 편의제공 관련기관과 협약체결 추진 예정 (2013. 12.)</li> <li>웹사이트 관련 개선 예정(2013. 12.)</li> </ul>	
- 편의 제공 : 의료기록 제공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 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 부,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	E 종합병원	<ul> <li>점형블럭, 장애인 접수대 설치 예정(2012. 12.)</li> <li>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예정(2013. 12.)</li> <li>시·청각장애인 편의제공 관련기관과 협약체결 추진 예정 (2013. 6.)</li> <li>웹사이트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축 예정(2013. 12.)</li> </ul>	
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등 - 웹사이트 : 키보드 사용을 통한 병원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 예약 가능 여부 등	F 종합병원	<ul> <li>점형블럭 설치 예정(2013 상반기)</li> <li>점자안내판 등, 접수대 하부공간 병원로비 및 1층 리모델링 공사시 설치 예정(2014년도)</li> <li>시·청각장애인 편의제공 EMR 업체와 협의하여 제공 예정 (2014년도)</li> <li>홈페이지 리뉴얼 중비중이며 2014년까지 이용 가능 개편 예정</li> </ul>	
	G 종합병원	- 주출입구 접근성은 로비에 상주한 경비원이 인적서비스 제공 예정 - 홈페이지 개선 예정	
	H 종합병원	- 시각장애인의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는 본인확인 후 usb에 저 장해 줄 계획 - 청각장애인의 수화통역은 사전에 요청시 수화통역 가능한 직 원 전담 예정	



청자 이천 내유		개선 사항	비고
협조 요청 내용	기관	주요 내용	미끄
	I 종합병원	- 점형블럭 설치(2012. 11. 완료 예정) - 점자안내판 등 설치 예정(2013 하반기) - 시·청각장애인 편의제공 2013년 하반기 시행 예정 - 홈페이지 개편 작업중으로 2013년 하반기 시행 예정	
	J 종합병원	- 점자안내판 등 설치 대신 원무과 직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안내 담당으로 교육 및 배치 - 시·청각장애인 편의제공 2013년 하반기 시행 예정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K 종합병원	- 점형블럭 설치(2012. 12. 완료 예정) - 시·청각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전산관련업체를 통해 의뢰 및 시행, 직원채용시 수화통역가능 직원 채용 예정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통 과유효폭 및 높이, 복도 및	L 종합병원	- 점자안내판 등 설치 완료(2012. 7.) - 접수대 관련 13년 설치 예정 - 시·청각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13년 설치 예정 -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관련 13년 설치 예정	
통로 유효폭·충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접수 대 높이 및 하부공간, 장애	M 종합병원	-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 검토 중 - 시각장애인도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 예약이 가능하도록 개편 예정(2013. 12.)	
인전용주차구역 마련, 주 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점 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설치 등 - 편의 제공: 의료기록 제공	N 종합병원	<ul> <li>주출입구 문 형태로 인한 접근성은 도우미 지원 요청(1층 로비에 도우미 배치 운영중)</li> <li>일부 누락된 점형블릭 설치 예정(2012. 12.)</li> <li>점자안내판 등 1층 로비에서 도우미를 통해 안내 시행 중</li> <li>시·청각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추후 제공 가능토록 준비 중</li> </ul>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 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 부,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	0 종합병원	- 점자안내판 견적 의뢰 상태 - 시·청각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현재까지 요청이 없어 고려하 지 못함. 직원들에게 수화교육 받도록 교육 준비 중	
할 사비스 등 제공 여부 등 자시비스 등 제공 여부 등 생사이트 : 키보드 사용을 통한 병원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 예약 가능 여부 등	P 종합병원	- 점형블럭, 점자안내판 설치 완료 - 시각장애인 요청시 보이스바코드 도입 예정 - 청각장애인 요청시 수화 통역 서비스 검토중 - 시각장애인 키보드만으로 정보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나, 홈페이지 통해 진료 예약 서비스는 검토중	
	Q 종합병원	<ul> <li>시·청각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병원 교환시스템을 점검하여 화 상전화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li> <li>홈페이지관리부서와 상의하여 시각장애인도 예약가능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li> </ul>	
	R 종합병원	- 점자안내판, 안내판 등 개선 계획 없음 - 시·청각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개선 계획 없음	
	S 종합병원	- 현재 공사중인 관계로 임시 안내데스크 사용중, 2013년 6월 이 내에 공사완료 후 재 배치 예정	



월도 요한 내용		개선 사항	
협조 요청 내용	기관	주요 내용	비고
	T 종합병원	- 2013년 2월 예산 확보 및 장애인편의시설 전문기관 자문완료 후 자동문으로 교체 예정 - 시각장애인 의료관련기록 광학인식음성출력기(소리안H) 설치 예정	
	U 종합병원	- 음성안내장치 추후 설치 고려 - 장애인전용접수대 설치 완료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V 종합병원	<ul> <li>문 재질 교체 계획은 없으나 주출입문 바로 앞에 안내인력 상 주 및 차임벨 설치 등으로 즉각 어려움 해결</li> <li>2013년 1월 1일부터 시각장애인에게 의료관련기록을 사전 요청시 확대문서 등 서비스 제공</li> <li>현재 웹사이트 관련 외주 업체에서 구축으로 해결 예정(2012. 12.)</li> </ul>	
요구 -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및 높이, 복도 및	W 종합병원	- 예산확보로 점자블럭과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2. 12.) - 일부 업데이트 과정에서 작업이 누락된 부분을 수시로 확인하 여 업데이트하고 있음	
통로 유효폭·충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접수	X 종합병원	- 장애인전용접수대 마련 완료(2012. 11.) - 수화통역서비스 시행을 위한 관련업체와 계약논의(2013. 1.)	
대 높이 및 하부공간, 장애		한방병원	
인전용주차구역 마련, 주 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점 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설치 등 - 편의 제공: 의료기록 제공	A 한방병원	- 점형블럭, 점자안내판 등, 장애인주차구역, 접수대 등 빠른시 일내에 설치 예정 - 시·청각장애인 편의제공 관련업체에 요청 - 현재 홈페이지 개편 중으로,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장애인 웹 사이트 정보접근성 관련하여 의뢰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부,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등 웹사이트: 키보드 사용을 통한 병원이용정보 확인	B 한방병원	<ul> <li>점형블럭 설치 완료</li> <li>점자안내판 등, 접수대 관련 향후 공사예산 수립후 설치 예정</li> <li>점자자료, 확대문서 등 고가의 장비임에 따라 예산 수립 후 구입 예정</li> <li>원무팀 직원 수화통역 교육 실시 예정</li> <li>현재 본원 홈페이지 개편작업 실시하고 있으며, 장차법 준수하여 개편 예정</li> </ul>	
및 진료 예약 가능 여부 등	C 한방병원	- 시·청각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향후 개선	
	D 한방병원	- 점자안내판 등, 접수대 관련 시설관리 유지 하면서 더욱더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음	
	E 한방병원	- 주출입구 문재질, 점형블럭, 점자안내판 등, 복도 통과유효폭 재설치 예정('13. 2/4분기) - 접수대 교체 예정'13년 설치 예정) - 홈페이지 및 시·청각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개선 예정('13 3/4 분기)	
	F 한방병원	- 추후 접수대 교체 예정 - 시·청각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추후 설치 예정	



취ェ 이런 비오		개선 사항	
협조 요청 내용	기관	주요 내용	비고
	G 한방병원	-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현재 제작완료 - 주출입구 문 재질 변경이 어려워, 벨호출시 직원 활용 - 접수대는 특수제작하여 이동식으로 구비 - 시·청각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차후 개선 예정	
	H 한방병원	<ul> <li>구출입구 점형블럭 및 점자안내판 등 건물주와 협의 후 추후 설치 여부 판단</li> <li>접수대 관련 예산확보 후 추후 조절</li> <li>추후 직원 채용시 수화가능자 우선 채용 예정</li> </ul>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통 과유효폭 및 높이, 복도 및 통로 유효폭·충간 이동을	I 한방병원	<ul> <li>주출입문 자동문으로 교체</li> <li>점자안내판 입구에 배치</li> <li>의료관련 점자자료 요청시 한컴오피스 점자변환기능을 통해 제공 예정</li> <li>청각장애인 방문시 컴퓨터 캠을 이용하여 화상대화 채팅이 가능하도록 개선</li> <li>홈페이지 제작 업체와 협조하여 개선토록 노력</li> </ul>	
위한 편의시설 설치, 접수 대 높이 및 하부공간, 장애 인전용주차구역 마련, 주	J 한방병원	- 점수대 차후 검토후 보완 예정 - 시·청각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차후 검토후 보완 예정	
전선공구자 및 다던, 무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점 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설치 등 - 편의 제공 : 의료기록 제공	K 한방병원	-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13년 2월 경 보수공사시 실행 예정 - 벗겨진 장애인전용구역 주차표시 수시 점검 - 13년 2월경 보수공사시 장애인전용접수창구 마련 예정 - 음성변환출력용 보이스아이 구비 예정(12. 12.) - 향 화상전화기 구입 예정(13. 2.)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 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 부,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	L 한방병원	- 주출입구 문 재질 차후 변경 예정 - 점자안내판 점자척으로 설치 예정 - 시·청각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점차적으로 시행 예정	
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등	M 한방병원	- 의료관련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장애확인 후 usb에 저장하여 제공	
- 웹사이트 : 키보드 사용을 통한 병원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 예약 가능 여부 등	O 한방병원	- 점형블럭 설치 예정(2012. 11. 30) - 13년 예산확보 후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 - 사전 요청시 수화봉사활동 단체 통하여 수화통역 제공 예정 (2012. 12. 31. 시행)	
	P 한방병원	-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2. 12.) - 진단관련문서 점자자료 요청시 제공 시스템 구축 예정 (2013. 3.)	
	Q 한방병원	- 현재 접수대옆에 추가로 장애인 접수대 1개소 설치 - 직원 수화교육 후 원무과 배치 - 홈페이지 관리회사와 협의하여 2013년부터 음성안내 가능 하도록 조율 예정	



철도 오취 내용		개선 사항	ul ¬
협조 요청 내용	기관	주요 내용	비고
		요양병원	
	A 요양병원	- 점형블럭 설치 - 점자안내판 등 설치 예정 - 시·청각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프로그램 업체와 상의 후 개선 예정, 직원 교육 예정 - 홈페이지 정보 접근성 관련 홈페이지 제작업체와 상의 후 개선 예정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B 요양병원	- 장애인 접수대 설치 예정(2012. 12.) -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사전에 요청 시 수화 통역 가능한 병원 직원 배치 예정	
요구 -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및 높이, 복도 및 통로 유효폭·충간 이동을	C 요양병원	- 시각장애인 진단서 점자자료 등은 현재 사용중인 프로그램 업체와 협의 후 제공(2013년도) - 홈페이지 정보접근성 관련 예산 편성하여 개편 예정 (2013년도)	
당도 규효숙·당간 이동들 위한 편의시설 설치, 접수 대 높이 및 하부공간, 장애 인전용주차구역 마련, 주	D 요양병원	- 점자안내판 등, 접수대 관련 설치 예정(2013. 12.) - 시·청각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사전 요청 시, 한국시각장애인 협회와 수화통역센터를 통해 제공할 계획	
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점 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설치 등 - 편의 제공: 의료기록 제공	E 요양병원	<ul> <li>기 설치된 점자블럭의 일부분 탈락으로 재시공 준비중</li> <li>점자안내판 등, 접수대 관련 설치 계획 예정</li> <li>의무기록을 점자 자료로 만들거나, 보이스바코드에 필요한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임에 따라 예산수립 후 구입할 예정</li> <li>안동시 수화통역센터 업무연계 및 협조 준비중</li> </ul>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부,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등	F 요양병원	<ul> <li>점형블럭, 시각장애인 안내표지판, 점수대 규격 등 2013년 상반기 내에 설치 완료 예정</li> <li>시·청각장애인 편의제공고 관련하여 2013년 상반기 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li> <li>시각장애인도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 예약 할 수 있도록 2013년 상반기 내에 홈페이지 개편 예정</li> </ul>	
통한 병원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 예약 가능 여부 등	G 요양병원	- 점형블럭, 점자안내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마련, 접수대 등 개선 예정(2012. 12.) - 시·청각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순차적으로 계획하여 시행 예정	
	H 요양병원	- 접수대 적정 높이는 12년 말 설치 예정이며, 하부공간은 향후 공사 시행 예정 - 청각장애인 관련 편의제공 가급적 12년 말 소리안(문서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장치) 구입 예정	
	I 요양병원	- 접수대 관련 추후 개선 예정 - 시각장애인 의료관련 기록 usb에 제공 - 홈페이지 관련 추후 관리업체 선정 후 개선 예정	



철표 이런 내용		개선 사항	ш
협조 요청 내용	기관	주요 내용	비고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J 요양병원	- 주출입구 점형블러 설치 고려 - 점자안내판 등 설치 어려움으로 원무과 직원 1:1 서비스 제공 - 시각장애인 의료관련 기록 사전 요청시 점자 문서로 전환 제공 예정	
요구	K 요양병원	- 주출입구 문 자동문으로 교체 고려중 - 접수대 관련 장애인전용 창구 설치 완료	
-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통 과유효폭 및 높이, 복도 및 통로 유효폭·충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접수	L 요양병원	- 주출입구 문 자동문으로 교체 고려증 - 시·청각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현재까지 요구 사례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못함. 추후 직원 수화교육 예정	
대 높이 및 하부공간, 장애 인전용주차구역 마련, 주 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점 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M 요양병원	<ul> <li>주출입구 점형블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건물주와 협의후 추후 설치 여부 판단</li> <li>접수대 관련 추후 예산 확보 후 조절</li> </ul>	
설치 등 - 편의 제공 : 의료기록 제공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 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 부,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O 요양병원	- 점형블럭 공사업체에 의뢰 및 설치(2012. 12.) - 점자안내판 제작업체 의로 설치 계획(2013. 2.) - 장애인주차구역 확보를 위해 인근주차장 계약 - 확대경, 돋보기 등 구입 비치(2012. 12. 31.) - 홈페이지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업체에 의뢰(2013. 2.)	
구, 정원전료 및 경임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 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등	P 요양병원	- 주출입구 유효거리 확보 개선 계획 - 촉지도식 안내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보 예정 (2013년 하반기내) - 직원 수화교육 시행 예정	
통한 병원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 예약 가능 여부 등	Q 요양병원	- 점형블럭 설치 완료 - 예산확보 후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 - 원무과 직원 스마트 폰으로 화상전화 실시 - 홈페이지제작사 선정 후 정보접근성 개선 방안 모색	

<sup>※</sup> 현재도 계속해서 개선 문의나 개선계획 회신공문이 위원회에 접수되고 있음



## 〈7〉 의료기관 이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1. 병원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지나가 기 어려운 정도의 계단이나 턱이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	계단, 턱 ○ 경사로 ○	계단, 턱 ○ 경사로 ×	계단, 턱 ×	* 주출입구에 계단이나 턱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기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 경사로
의료기관 시설 접근성	건물주출입구	2. 병원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가 1.2m 이상임				* '아니오'인 경우, 유효거리m - 전면 유효거리란, 출입구턱-건물입구 (문) 또는 경사로상단끝-입구 (문) 간의 거리
	및 접근로	3. 병원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 '아니오'인 경우, 통과유효폭 m * <u>문이 잠겨져 있더라</u> 도, 요구 시 열어주었 을 때 0.8.m 이상이면 '예'표기
		4. 주출입문이 회전문 또는 무거운 재 질의 문으로 되어 있어 통과하기 어 러움				* '예'인 경우, □ 회전문 □ 무거운 재질의 문 (사진첨부요망) □ 기타
		5. 주출입구 바닥면에 점형블럭이 설치되어 있음				
		6.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 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 치 등을 설치하고 있음	□ 6-1 (음성 안내 장치인 경우만)	<b>3</b> 7		* 상기 예시 중 하나라 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예'인 경우, □ 점자안내판 □ 축지도식안내판 □ 음성안내장치 □ 기타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6-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 는 경우, 실제 작동하고 있음				* 6번 항목 참고사항에 서, '점자안내판', '촉 지도식 안내판'을 체 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음						
	복	8. 복도 또는 통행로의 유효폭이 휠체 어 사용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1.2m 이상임	8-1	<b>□</b> 9		* '아니오'인 경우, 유효폭m		
의료기관 시설	도및통로	8-1. 복도 또는 통행로의 유효폭이 1.2m 이상이지만, 화분이나 의 자 등 기타 장애물로 인하여 통 과가 어려움						
접근성	비이	9. 병원이 2층 이상에 있거나, 또는 병 원이 2층 이상인 경우, 이동에 필요 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음				* 병원이 1층으로 된 경우, "해당없음" 표기 엘리베이터  기타		
		10. 접수대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 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0.7m 이상 0.9m 이하"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음				* '아니오'인 경우, 접수대높이m		
	접수대	11. 접수대 하부 공간은 무릎 및 휠체 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 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으로 설치되어 있음				* 높이와 깊이 모두 상 기 기준을 충족하여 야 "예" * '아니오'인 경우, - 높이m - 깊이m		
		* 아래 질문은 병원 '원무	-과'에서 도	<b>計당자에게</b>	직접 결	· 보의 *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년 등	가장애인이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등 - 인의 의료관련 기록을 점자자료, 확대 - 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b>사전</b>   <b>요구할 경우</b> , 제공 가능함	12-1, 12-2, 12-3	☞ 12-4		* 상기 예시를 <b>하나라도</b> 제공하면 "예"로 표기 □ 점자자료 □ 확대문서 □ 보이스바코드 □ 기타		
	12-1. 요구 방식 (예시: 의사에게 직접 요구 / 원무과에서 요구 등)							
	12-2. 제공 방식 (예시: 병원에서 직접 수령 / 집으로 송부 등)							
	12-3.	제공 기간일						
	12-4.	제공하지 않는 이유 (예시: 비용이 많	이 들어서,	필요성을	못느껴	서)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13. 청각장애인이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 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을 <b>사</b> 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13-1, 13-2, 13-3 13-4	13-5, 13-6		* <b>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b> 제공하면 "예"로 표기 □ 수화통역 □ 화상전화 □ 기타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13-1. 화상전화기를 구비한 경우, 실제 작동함				* 13번 항목 참고사항에 서, '수화통역'을 체크 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13-2. 요구 방식 (예시: 당일 의사에게 직접	요구 / 유	원무과에서	사전 요	요구 등)
	13-3. 제공 방식 (예시: 인근 수화통역센터	에 요청 /	화상전화기	기 구비	<u>등)</u>
	13-4. 제공 기간일				
	13-5. 제공하지 않는 이유 (예시: 비용이 믾	남이 들어서	], 필요성	을 못느끼	<u> </u>
	13-6. 대체수단으로써 '필담' 제공 여부 및	제공자 (	계시: 간호	사가 필	담할 수 있음)
홈페이지 사용 및	14.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병원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병원 홈페이지가 없는
정보제공	15. 시각장애인도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예약 이 가능함				<u>경우, "해당없음" 표기</u>
기타	16. 그밖에 전반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데 돌 (사진 등을 첨부하여 기재 가능)	불편한 사형	<b>및 보완</b>	할 사항	₾?



## <8> 병원유형별 모니터링 결과



### (1) 종합병원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없음	이행 비율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56	56 (단차제거 29) (단차없음 27)	0	0	100.0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56	55	1	0	98.2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58	56	0	0	100.0
주출입구	적정 문 형태 및 재질 (회전문 또는 무거운재질 X)	56	44	12	0	82.1
	점형블럭 설치	56	44	12	0	78.6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56	16	40	0	28.6
	_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 여부	5	4	1	0	8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56	54	2	0	96.4
	적정 통과 유효폭(1.2m 이상)	56	56	0	0	100.0
복도 및 통행로	복도 또는 통행로 장애물 여부	56	52	4	0	92.9
0 0—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56	56	0	0	100.0
접수대	적정 접수대 높이 (0.7m 이상 0.9m 이하)	56	36	20	0	64.3
심구네	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56	18	38	0	32.1
정당한	점자자료·확대문서·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의료기록 제공	56	18	38	0	32.1
편의제공	병원 진료 및 상담을 위한 수화통역·화상전 화서비스 등 제공	56	28	28	0	50.0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 내 병원이용정보 확인 가능 여부(키보드를 통한 접근성)	56	32	24	0	57.1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 예약 가능 여부	56	18	36	2 (홈페이 지X예약 기능X)	20.5



## (2) 한방병원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없음	이행 비율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37	34 (단차제거 20) (단차없음 14)	3	0	87.0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37	31	6	0	83.8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37	35	2	0	94.6
주출입구	적정 문 형태 및 재질 (회전문 또는 무거운재질 X)	37	25	12	0	67.6
	점형블럭 설치	37	23	14	0	62.2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37	10	27	0	27.0
	_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 여부	1	0	1	0	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37	28	9	0	75.7
	적정 통과 유효폭(1.2m 이상)	37	36	1	0	97.3
복도 및 통행로	복도 또는 통행로 장애물 여부	36	26	10	0	72.2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37	35	2	0	91.9
접수대	적정 접수대 높이 (0.7m 이상 0.9m 이하)	37	8	29	0	21.7
십구네	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37	0	37	0	0.0
정당한	점자자료·확대문서·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의료기록 제공	37	7	30	0	18.9
편의제공	병원 진료 및 상담을 위한 수화통역·화상전 화서비스 등 제공	37	5	32	0	13.5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 내 병원이용정보 확인 가능 여부(키보드를 통한 접근성)	37	13	11	13 (홈페이 지X)	54.2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 예약 가능 여부	37	4	19	14 (홈페이 지X예약 기능X)	17.4



### (3) 요양병원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없음	이행 비율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65	59 (단차제거 38) (단차없음 21)	6	0	86.4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65	53	12	0	81.5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65	63	2	0	96.9
주출입구	적정 문 형태 및 재질 (회전문 또는 무거운재질 X)	65	57	8	0	87.7
	점형블럭 설치	65	40	25	0	61.5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65	15	52	0	23.1
	_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 여부	4	1	3	0	25.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65	50	15	0	76.9
	적정 통과 유효폭(1.2m 이상)	65	64	1	0	98.5
복도 및 통행로	복도 또는 통행로 장애물 여부	64	57	7	0	89.1
0 0—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65	63	2	0	95.4
접수대	적정 접수대 높이 (0.7m 이상 0.9m 이하)	65	16	48	1 (접수대 X)	25.0
십구내	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65	7	57	1 (접수대 X)	10.0
정당한	점자자료·확대문서·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의료기록 제공	65	16	48	1	24.6
편의제공	병원 진료 및 상담을 위한 수화통역·화상전 화서비스 등 제공	65	6	58	1	9.23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 내 병원이용정보 확인 가능 여부(키보드를 통한 접근성)	65	16	27	22 (홈페이 지X)	37.2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 예약 가능 여부	65	2	38	25 (홈페이 지X예약 기능X)	5.0



## 과제 3. 장애인 문화·예술시설 이용 모니터링

### 〈1〉모니터링 개요



## 1 모니터링 과제

- O 문화·예술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 문화·예술시설 장애인 접근성
  - 문화·예술시설 이용 및 관람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문화·예술시설 웹 사이트 정보 접근성

### 2 모니터링 목적

○ 최근 높아지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 욕구를 반영하여, 2012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항 적용대상이 되는 1천석이상의 대규모 종합공연장과, 사립대학소속 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시설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등을 모니터링하여 관련 기관의 개선을 유도하고 장애인 문화향유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 3 모니터링 기간

○ 2012. 6. 11. ~ 2011. 6. 30 (20일 간)

## 4 모니터링 대상

○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 35곳

#### 〈지역별 모니터링 대상 기관 현황〉

(단위: 개소)

지역	계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제주
공연장	35	13	3	3	8	4	4
박물관	33	12	4	5	9	1	0
미술관	4	1	0	1	1	1	0

## 5 모니터링 참가자

○ 총 153명 참가 : 장애인 참가비율 약 71%



### 〈장애유형별 모니터링 참가자 현황〉

(단위: 명)

		장애유형							
지역	합계	비장애인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호흡기	정신		
서울	22	10	6	6	0	0	0		
대전	15	1	10	3	0	0	1		
부산	22	7	11	1	1	2	0		
대구	59	18	27	10	1	2	1		
광주	20	5	12	2	1	0	0		
제주	15	3	12	0	0	0	0		
계 (비율%)	153 (100.0)	44 (28.8)	78 (51.0)	22 (14.4)	3 (2.0)	4 (2.6)	2 (1.3)		

## 〈2〉모니터링 추진방법



## 1 모니터링 진행 절차

1	모니터링 사전 계획 수립
2	지역별 사전설명회 개최
3	해당기관 모니터링 협조 요청
4	현장 모니터링 실시
5	결과 보고서 작성
6	모니터링 결과 관련 기관 협의



## 2 모니터링 추진 내용

### 가. 모니터링 사전 계획 수립

- 6월 모니터링 과제 선정
- 모니터링 과제 체크리스트 작성
- O 모니터링 방법 검토
- 모니터링 대상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사립 대학박물관 및 미술관) 선정
- 6월 모니터링 계획 및 사전 설명회 개최안 보고(2012. 5. 15.)

### 나. 사전설명회 개최

### (1) 권역별(11개 지역) 사전설명회 개최

지역	일 시	장 소	주관
서울	2012. 5. 31.(목) 14:00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서울본부
대전	2012. 5. 29.(화) 14:00	대전장애인인권포럼 회의실	(장애차별
제주	2012. 6. 4.(월) 14:00	제주시청소년수련관 회의실	조사1과)
부산	2012. 6. 4.(월) 14:00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부산인권
울산	2012. 5. 31.(목) 13:00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무실	사무소
경북북부 (상주, 문경, 예천)	2012. 6. 4.(월) 11:00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지회 사무실	
대구	2012. 5. 30.(수) 14:00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대구인권
경주	2012. 6. 5.(화) 11:00	경주시의회 사무실	사무소
안동	2012. 6. 4.(월) 14:00	한국척수장애인협회경북협회 안동지회 사무실	
광주	2012. 6. 5.(화) 14:00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광주인권
전주	2012. 6. 7.(목) 14:00	전북시설인권연대 사무실	사무소



### (2) 사전설명회 주요 내용

- O 모니터링 과제 및 목적, 관련 법령 등 설명
- O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교육
- O 지역별 모니터링 대상기관 안내
-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안내(이동시 안전, 단원증 패용, 모니터링단 조끼 착용 등)

### 다. 해당기관 협조 요청

- O 모니터링 대상기관 목록 협조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문화여가정책과/공연전통예술과 자료협조 요청 (2012. 5. 15.)
- O 모니터링 협조 공문 발송
  - 6개 권역 72개 모니터링 대상 시설 모니터링 협조 요청(2012. 6. 7.)

### 라. 현장 모니터링 실시

O 조별 현장 모니터링 월 2회 실시

#### 마. 보고서 작성 및 제출 (7. 8.)

- 모니터링 단원 : 체크리스트는 조별 각 1부씩,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는 개인별 각 1~4부씩 제출
- 권역별 담당자 : 모니터링단원이 제출한 체크리스트 및 활동보고서 취합 및 결과 보고서 작성

### 바. 모니터링 결과 관련 기관 협의

O 16개 시·도 문화예술 관련 과의 협조를 받아 모니터링 결과를 각 피모니터링 기 관에 송부한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해 개선계획 제출 요구(2012. 10. 19.)



### 〈3〉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관련 규정



## 1

### 모니터링 항목

### 가. 문화·예술시설 장애인 접근성

○ 장애인의 문화·예술시설 접근을 위한 주출입구, 복도 및 통로, 매표소 등 물리적 화경에 대한 모니터링

### 나. 문화·예술시설 이용 및 관람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팜플렛 등의 제공에 있어 점자 및 확대문자 등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 터링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정당 한 편의로서의 각종 장비 및 기기 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 다. 문화·예술시설 웹 사이트 정보 접근성

O 문화·예술시설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모니터링

### 2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시설 접근성	지체	주출입구 단차·전면유효거리·통과유효폭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복도 및 통로 유효폭,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매표소 높이 및 하부공간 화장실 통과유효폭 및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등

### 90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시각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공통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	팜플렛 등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제공 점자안내책자 제공
	지체	휠체어,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휠체어사용자의 좌석 선택 가능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시각	키보드 사용을 통한 공연정보 확인 및 예약 가능

## 3 관련 규정

###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제3호 및 제4호

### 나. 장애인권리협약

- O 「장애인권리협약」제9조(접근성)
- O 「장애인권리협약」제21조(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 O 「장애인권리협약」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 O「장애인권리협약」제33조(국내이행과 모니터링)

###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접근 이용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및 시행령 제15조



### 라. 기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및 [별표2], 동법 시행규칙 [별표1]
- O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1]
- O「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

## 〈4〉모니터링 결과 분석



## 1)

## 문화·예술시설 장애인 접근성

###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시설이용 접근성	지체	주출입구 단차·전면유효거리·통과유효폭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복도 및 통로 유효폭, 충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매표소 높이 및 하부공간 화장실 통과유효폭 및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등
	시각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72	611	11	0	84.7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72	69	1	22	98.6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72	70	0	22	100.0
	적정 문 형태 및 재질 (회전문 또는 무거운재질 아님)	72	59	11	22	84.3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72	34	36	22	48.6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72	12	58	22	17.1
	_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 여부	8	4	4	0	5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72	63	9	0	87.5
	적정 통과 유효폭(1.2m 이상)	72	65	5	22	92.9
복도 및	_ 통과 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 또는 통행로에 장애물 없음	65	58	7	0	89.2
통행로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72	39	21	12³	66.1
	건물 내부 각 층 휠체어 이용가능	72	42	18	12³	68.9
ᆒᇴᆌ	적정 매표대 높이 (0.7m 이상 0.9m 이하)	72	10	22	40 <sup>4</sup>	31.6
매표대	매표대 하부 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72	4	30	40 <sup>4</sup>	12.5
	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72	30	42	0	41.7
	대소변칸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72	52	20	0	72.2
화장실	대변기칸 통과유효폭(0.8m 이상)	72	48	24	0	66.7
	대변기칸 회전 공간 확보 (너비 1.0m이상, 깊이 1.8m이상)	72	46	26	0	63.9

\* '해당없음'이 있는 경우, 이행비율 = 충족/ (충족+미충족)

1. 단차제거 = 단차없음(13) + 경사로 등 설치를 통해 단차제거(48)

2. 해당없음 : 모니터링시설이 '야외공연장'이라 주출입구 및 복도가 없는 경우

3. 해당없음 : 모니터링시설이 1층으로 되어 있거나 야외공연장인 경우

4. 해당없음 : 매표대가 없는 경우



### 다. 모니터링 주요 사례

### 《 주요 사례 》

### O 주출입구 단차 제거 관련,

- 오래된 건물이라 임시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너비가 좁아 휠체어가 지나 가기 어려움.
- 경사로는 있으나, 경사각이 급격해 휠체어 이동이 어려움.
- 경사로를 가파른 곳에 설치하여 경사로에 진입하기도 전에 뒤로 밀림.
- 경사로 바닥면이 미끄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 휠체어 사용 시 위험함.
- 정문에는 경사로가 없고 후문에 설치되었으나, 후문에는 장애인콜택시의 접 근이 불가능함.

#### O 주출입문 형태 및 재질 관련,

- 여닫이문이 무거운 재질(통유리)로 제작되어 있어 휠체어를 타고 문을 열기가 어려움.

#### O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관련,

- 점형블럭은 설치되어 있으나 선형블럭(유도블럭)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건물 내부 이용이 어려움.

### O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관련,

- 점자안내판이 있으나 점자 내용이 틀림.
- 음성안내장치가 있으나 작동하지 않음.

#### O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관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으나 연결 엘리베이터가 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입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박물관 건물에는 없고, 옆 건물 지하에 있어, 옆 건물 지하에 주차하고 1층으로 올라와서 다시 박물관이 마련된 건물 지하로 이동 하여야 하는 등 이용이 불편함.

#### 94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 주요 사례 》

### ○ 복도 및 통행로 통과 유효폭(1.2m 이상) 및 장애물 설치 관련,

- 미술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이동하여야 함. 그러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건물 기둥과 주위에 설치된 의자 때문에 휠체어이용자의 보행이 어려움.
- 미술관 내부가 좁아 휠체어 이용자는 관람할 수 없음.

### ○ 공연장 등이 2층 이상에 설치된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 공연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1층에서 반 층 올라가야 함. 이를 위해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계단 폭이 좁아 휠체어사용자와 비장애인 모두에 게 불편함.
- 공연장 내부가 1~3층으로 되어 있으나,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모두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사용자는 1층에서만 관람이 가능함.
-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크기가 작아 전동스쿠터는 이용 불가능함.

# ○ 매표대 높이(0.7m 이상 0.9m 이하) 및 하부공간(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마련 관련,

- 장애인 전용 매표창구가 따로 마련되어있음.
- 하부공간의 높이는 기준에 충족되나(0.7m), 깊이 미충족(0.16m)

#### O 화장실 관련,

-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 설치되어 있으나, 화장실 입구에 점형블럭은 설치되지 않음.
- 대변기칸 내부공간은 기준에 충족할 만큼 넓었으나, 수직수평손잡이에 걸레 를 널어놓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 사용이 어려움.
- 남자 화장실의 경우 소변기에는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대변 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입구는 너비와 내부의 너비는 0.8m로 기준에 부합하였으나, 깊이는 1.5m로 휠 체어가 이동하거나 회전하기 협소했음.



### 《 주요 사례 》

#### O 기타 참고사항

- 1층에만 휠체어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있고, 그 외 층에는 전혀 없음.
- 화장실 입구에 턱이 있음.
- 장애인이 공연에 참여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연자의 출입구에도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지하에서부터 연주장까지 설치되어 있었음.
- 장애인전용화장실만 남녀 공용임.
- 주출입구까지 유도 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점은 좋으나, 유도블럭이 공연장 입구나, 매표소가 아니라 공연장 안내판으로 유도하고 있음.
-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으로 올라올 때 통과해야 하는 문이 무거워 혼자 힘으로 여닫기 어려움.

### 라. 결과 분석

### (1) 주출입구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O 주출입구 단차 제거

-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려해 '주출입구 단차를 제거한 공연장 및 미술관, 박물관'은 전체 72개 조사대상 중 61곳으로 84.7% 가량임. 유형별로는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35곳 중 30곳(85.7%), 사립대학박물관 33곳 중 28곳(84.8%), 사립대학미술관 4곳 중 3곳(75.0.%)의 단차가 제거됨.
- '주출입구 단차 제거'의 경우, 단차(계단이나 턱)가 아예 없는 경우 13곳, 단차는 있으나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단차를 제거한 경우 48곳으로 나타나, 물리적 개선을 통해 단차를 극복한 사례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경사로 설치와 관련한 부적절 사례로는 임시경사로의 너비가 좁아 휠체어 이용 이 불가능한 경우, 경사로의 기울기가 급격하여 수동휠체어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경사로가 가파른 길 위에 설치되어 휠체어가 뒤로 밀리는 경우 등이 있음.



### O 주출입구 전면 유효 거리(1.2m 이상)

- 전면유효거리는 출입구 턱 또는 경사로 상단 끝부터 건물입구(문)까지의 거리로, 이는 휠체어가 안정적으로 건물입구에 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요 건으로, 최소 1.2m 이상이 되어야 함.
- 모니터링 결과, 주출입구의 전면유효거리가 1.2m 이상인 문화·예술시설은 98.6%(70곳 중 69곳)로 적정설치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0.8m 이상)

- 문화·예술시설 72곳 중 야외공연장 2곳을 제외한 70곳에 대해 주출입구 통과유 효폭을 점검한 결과, 모든 시설에서 유효폭이 0.8m 이상(100.0%)인 것으로 나타 났음.

#### O 주출입문 형태 및 재질(회전문 또는 무거운 재질 여부)

- 주출입문의 형태가 회전문으로 되어 있거나 재질이 무거운 유리 또는 금속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뇌병변장애인이나 휠체어장애인 등에게 불편함을 초래할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 문이 회전문이나 무거운 재질로 되어 있는 문화·예술시설은 전체 70곳(야외공연장 2곳 제외) 중 11곳이었음(15.7%). 시설유형별로는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33곳 중 6곳(18.2%), 사립대학 박물관 33곳 중 3곳(9.1%), 사립대학 미술관 4곳 중 2곳(50.0%)의 문이 장애인 등 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O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 주출입구 점형블럭은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편의시설로, 공연장과 같이 넓은 공간에서는 특히 유용할 수 있음.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48.6%의 문화·예술시설에서만 해당 편의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70곳 중 34곳).
- 시설유형별로는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33곳 중 21곳(36.6%), 사립대학 박물관 33곳 중 12곳(36.4%), 사립대학 미술관 4곳 중 1곳(25.0%)의 주출입구에만 점형블럭이 설치되어 있음.
- 참고 사례로는 '시설 입구에만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유도블럭을 설치



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건물 이용이 어려움', '주출입구에 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으나 공연장 내부나 매표소가 아닌 공연장 안내판으로 안내하고 있음' 등이 있음.

### O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건물 주출입구 부근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 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의 설치비율은 17.1%(70곳 중 12곳)로 상당히 미진한 편임.
- 시설유형별로는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33곳 중 8곳(24.2%), 사립대학 박물관 33곳 중 3곳(9.0%), 사립대학 미술관 4곳 중 1곳(25.0%)에서만 위 편의 중하나라도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적절한 설치 사례로는 '점자안내판이 있으나 점자 내용이 틀린 경우', '음성안 내장치가 있으나 작동되지 않는 경우',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8곳 중 기계가 실제 작동되는 경우는 4곳(50.0%)에 불과하였음.

#### O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율은 87.5%(72곳 중 63곳)로 나타났으며, 시설별로는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35곳 중 34곳(97.2%), 사립대학 박물관 33곳 중 26곳(78.8%), 사립대학 미술관 4곳 중 3곳(75.0%)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적절한 설치 사례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있으나 연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입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등이 있음.

### (2) 복도 및 통로, 매표소

#### ○ 복도 또는 통행로 통과유효폭(1.2m 이상) 및 장애물 여부

-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복도 유효폭이 1.2m이상인 문화·예술시설은 70곳 중 65곳으로 92.9%정도 되었으며, 시설별로는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33곳 중 33곳(100.0%), 사립대학 박물관 33곳 중 28곳(84.8%), 사립대학 미술관 4곳 중 4곳(100.0%)으로 사립대학 박물관을 제외한 여타 시설들은 이행률이 100.0%로 나타남.



- 부적절한 설치 사례로는, '건물 기둥과 주위에 설치된 의자 때문에 휠체어사용 자의 보행이 어려운 경우', '미술관 내부가 좁아 휠체어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음.
- 한편, 통과 유효폭이 1.2m 이상인 65개 시설 중 복도 또는 통행로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어 실제 이동이 어려운 시설은 10.8%(65곳 중 7곳) 가량 되었음.

#### ○ 공연장 등이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등 설치

- 1층에 공연장 및 미술관, 박물관이 설치된 12곳을 제외하고 총 60개 시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39곳에서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남 (66.1%).
- 시설별로는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5곳 중 19곳(67.9%), 사립대학 박물관 29곳 중 18곳(62.1%), 사립대학 미술관 4곳 중 2곳(50.0%)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었고, 부적절하게 설치한 사례로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계단이 좁아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이동이 불편한 경우',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나 넓이가 좁아 전동스쿠터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음.

#### ○ 휠체어 이용자의 공연장 내부 각 층 이동 가능 여부

-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이 1층에 설치된 12곳을 제외하고 총 60곳에 대한 모니 터링을 실시한 결과, 42곳에서만 공연장 내부 각 층의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났고, 이는 68.9%에 해당하는 수치임.
- 시설별로는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31곳 중 22곳(71.0%), 사립대학 박물관 28곳 중 18곳(64.3%), 사립대학 미술관 4곳 중 2곳(50.0%)에서 내부 각 층의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 매표대 높이(0.7m 이상 0.9m이하) 및 하부 공간(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마련

- 휠체어사용자들이 공연티켓을 구매하거나 공연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높이의 매표소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 72개 피모니터링 시설 중 매표대가 없는 40곳을 제외하고 32곳에 대해 모니터 링을 실시한 결과 높이가 0.7m 이상 0.9m 이하인 매표대가 31.6%, 하부공간 높이가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인 매표대가 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시설에서는 장애인 전용 매표창구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용을 편리하게 한 사례



도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음.

### (3) 화장실

- 화장실 출입구에 점형블럭을 설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한 결과 72개 문화·예술시설 중 42곳의 화장실 입구에만 점형블럭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남(41.7%).
- 휠체어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한 문화·예술시설은 72곳 중 52곳(72.2%)이었으며, 대변기칸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인 시설은 72곳 중 48곳이었음(66.7%). 한편, 휠체어사용자가 대변기칸에서 충분한 회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의 너비가 1.0m 이상, 깊이가 1.8m 이상인 시설은 72곳 중 46곳으로, 63.9% 정도되었음.
- 화장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례로는 '수직수 평손잡이에 걸레를 넣어놓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남자화장실 소변기 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였으나, 대변기에는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음.

### 마.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4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에 게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치의 설치 또는 개조'등이 정당한 편의에 포함됨.
-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35곳과 사립대학 미술관 4곳, 사립대학 박물관 33곳, 이상 총 72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주출입구 단차 제거·전면 유효거리 확보·통과유효폭 확보·적정한 문 형태 및 재질 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마련, 복도 및 통행로의 적정 통과유효폭 마련 등의 항목은 비교적 양호한데 반해 (적정설치율 80%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 및 건물 내부 각층 이동편의 마련, 화장실 수평수직손잡이 설치·대변기 통과유효폭 마련·대변기칸 회전 공간 확보 등의항목은 다소 미진하였고(적정설치율 60% 이상), 주출입구 점형블릭 설치·점자안내판 등 설치, 화장실 출입구 점형블릭 설치, 매표대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 등의항목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적정설치율 50% 이하).



○ 최근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시설 참여 및 관람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시설접근권 은 관련 활동을 향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문화·예술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관계기관 등에 개선을 독려하였음.

## 2 문화·예술시설 이용 및 관람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 가. 모니터링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공통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	팜플렛 등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제공 점자안내책자 제공
	지체	휠체어,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휠체어사용자의 좌석 선택 가능

##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사전에 요구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의 리플렛 제공)	72	14	55	31	20.3
현장에서 요구하는 경우,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72	32	40	0	44.4
_ 휠체어 및 보청기 실제 작동 여부	32	30	2	0	93.8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지정석 마련	72	29	6	37 <sup>2</sup>	82.9
_ 휠체어사용자의 좌석 선택 가능 여부	29	9	20	0	31.0
보조인력 배치	72	63	9	0	87.5

\* '해당없음'이 있는 경우, 이행비율 = 충족/충족+미충족

1. 해당없음 : 리플렛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해당없음 : 관람석이 없는 경우 = 박물관(33곳)+미술관(4곳)



## 다. 모니터링 주요 사례

## 《 주요 사례 》

- 사전에 요구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관련,
  - 행사주최측에 사전 요구 시, 공연장에서 확대문서 제공가능함.
  - 확대문자나 점자자료는 일주일 내에 제공 가능함. 다만, 대관 공연일 경우 공연팀에 의뢰해야 함.
  - 공연장 측에서 운영하는 공연과 공연장 안내 팜플렛에는 모두 보이스바코드 를 삽입함.
  - 동물표본전시관에서 표본 하나하나에 보이스바코드를 모두 부착함.
  -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도슨트(전시해설가)가 동행하여 음성안내 제공함.
- O 현장에서 요구하는 경우,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관련,
  - 휠체어 2~3대 보유 중임.
  - 사전 신청 시, 보청기 대여 가능함.
  - 장애인 전문 도우미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다른 편의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장애인이 방문한 적 없으며, 예산 상의 문제로 준비하기 어려움.
  - 휠체어와 점자안내책자는 준비되어 있으나 보청기는 준비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이 편의를 요구하는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지원함.

#### O 휠체어 사용자 지정석 마련 관련,

- 객석 중에 2~3번째 줄은 의자 옆 부분이 열려 휠체어 사용자가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휠체어 사용자는 좌석 맨 앞 뒤 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지정석을 마련하고 있음.
- 맨 뒷좌석에만 휠체어사용자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음. 다른 곳에도 앉을 수는 있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맨 뒷자리만 앉을 것을 권유함.
- 장애인지정석은 따로 없으나, 공연장 중간에 넓은 공간이 있어 휠체어사용자 방문 시, 그곳에서 관람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 주요 사례 》

- 맨 뒷자리에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지정석이 있지만, 일반 좌석도 이용할 수 있음(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 지정석이 무대와 너무 멀어 공연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임.
- 좌석 100석 당 1석은 휠체어 이용 좌석으로 해야한다는 법조문에 따라 이동 식 좌석을 배치하고, 따로 휠체어 출입 가능 공간을 마련해두었음.

#### O 보조인력 배치 관련,

- 보조인력을 따로 배치하지 않지만, 주최측이나 공연장 측에 직접 요구하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음.
- 장애인들이 종종 단체로 오게 되면 외주에서 발탁한 교육 인력을 배치함. 되 도록 장애인 한명 당 비장애인 한명으로 배치하려고 노력함.
- 전문 보조인력이 항시 대기하고 있으며, 인원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 장애인들이 잘 오지 않아 보조인력을 따로 배치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아르 바이트생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음.

## 라. 결과 분석

- 사전에 요구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 바코드 형태의 리플렛 제공)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에 게 제공되는 정보를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연 및 전시와 관련한 기본정보는 리플렛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확대 문서 형태의 리플렛 제공은 문화·예술시설에 필요함.
  - 모니터링 결과, 시각장애인이 사전에 요구하는 경우, 리플렛을 점자나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로 제공하는 문화·예술시설은 조사대상 69곳(전체 72곳 중 3 곳은 리플렛 미제공) 중 14곳에 불과하였으며(20.3%), 시설유형별로는 1천석 이 상의 대규모 공연장 28곳 중 6곳(17.7%), 사립대학 박물관 31곳 중 7곳(22.6%),



사립대학 미술관 4곳 중 1곳(25.5%)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시설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편의 유형으로는 확대문서, 점 자자료, 보이스바코드 삽입 등이 있으며, 요구방식은 행사 주최측에 사전 요구, 현장에서 당일 요구 등이 있음. 한편, 제공방식은 사전에 요구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제공가능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제공기간은 당일과 일주일 이내가 가장 많았음.
- 우수사례로는 '공연장 측에서 운영하는 공연 및 공연장 안내 팜플렛에 보이스바 코드를 모두 삽입한 경우'와 '동물표본전시관에서 표본 하나하나에 보이스바코 드를 모두 부착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전시해설가가 동행하여 음성안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었음.
-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필요성을 못느껴서, 수요가 없어서 등이 있었음.

#### ○ 현장에서 요구하는 경우,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보조를 위해 시설로 하여금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 대상기관 72곳 중 44.4%에 해당하는 32곳에서만 해당 장비 및 기기가 제공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휠체어가 27곳, 점자안내책자가 3곳, 보청기가 4곳에서 제공되고 있었음. 휠체어가 구비된 32곳을 대상으로 작 동여부를 점검한 결과 2곳을 제외한 30곳에서는 실제 작동이 가능하여 언제든 장애인이 필요로 할 경우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시설유형별로는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35곳 중 21곳(60.0%), 사립대학 박물관 33곳 중 10곳(30.3%), 사립대학 미술관 4곳 중 1곳(25.5%)에서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립대학 미술관과 박물관에서의 편의 제공율이 낮았음.
- 문화·예술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편의 유형으로는 휠체어, 점자안내 책자, 보청기 등이 있으며, 요구방식은 '현장에서 안내데스크에 요구', '현장에서 시설관리팀에 요구' 등이 있음. 한편, 제공방식은 현장에서 즉시 대여 및 제공 가능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음.



- 우수사례로는 '휠체어 2~3대 가량을 보유 중인 경우', '장애인이 편의를 요구하면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었음.
- 한편,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필요 성을 못느껴서, 수요가 없어서 등의 응답이 많았음.

#### ○ 휠체어 사용자 지정석 마련 및 좌석 선택 가능 여부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관람석이 없는 미술관과 박물관을 제외하고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총 35곳을 대상으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별도 마련 여부'를 점검한 결과, 82.9%에 해당하는 29곳에서 휠체어 전용석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별도 좌석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휠체어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른 좌석에 착석 가능한지 점검한 결과, 29개 대상 점검시설 중 9곳(31.0%)에서만 다른 장소로의 착석 및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공연장은 휠체어 장애인이 특정 좌석에만 앉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우수사례로는 좌석 맨 앞 뒤 뿐 아니라, 중간에도 각각 장애인을 위한 지정석을 마련한 경우, 법에 따라 100석 당 1석의 휠체어 좌석 공간을 마련하고, 휠체어가 출입 가능한 공간을 별도 마련한 경우 등이 있었음.

#### O 보조인력 배치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보조인력에는 이동보조인력 및 안내 보조인력 등이 포함됨.
- 모니터링 결과, 총 72개 문화·예술시설 중 87.5%에 해당하는 63곳에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인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시설별로는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35곳 중 32곳(91.4%), 사립대학 박물관 33곳 중 29곳(87.9%), 사립대학 미술관 4 곳 중 2곳(50.0%)에서 인적 편의가 제공되고 있었음.



## 마.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장애인을 위한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따라 의무 적용 대상인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35곳과 사립대학 미술관 4곳, 사립대학 박물관 33곳을 대상으로 모 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지정석 마련은 비교적 양호한데 반해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착석을 불가능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음(69.0%). 또 한 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보청기, 휠체어 역시 제공되는 경우는 매우 적었고 (50.0% 이내),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은 비교적 양호하게 제공되고 있었음 (87.5%).
- 문화·예술시설에서 제공하는 리플렛에는 행사 안내 및 관람과 관련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 및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점자 또는 확대 문자 등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 한편,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가 제공되어야 하고, 제2호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만일 문화·예술시설이 단계적 적용범위에 해당됨에도 위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장애차별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모니터링 대상 시설에 모니터링 결과 및 규정을 안내하여 이행을 독려함.



## 3

## 문화·예술시설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시각	키보드 사용을 통한 공연정보 확인 및 예약 가능 여부				

##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 내 공연정보 확인 가능 여부 (키보드를 통한 접근성)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를 통한 공연예약 가능 여부
조사대상	72	72
충족	34	4
미충족	23	26
해당없음	15 (홈페이지 없음)	42 (홈페이지를 통한 공연 예약 불가)
충족비율(%)	59.6	13.3

## 다. 모니터링 주요 사례

## - 《 주요 사례 》

#### O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관련,

- 팝업창이 많아서 키보드만으로 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키보드만으로는 공연정보 뿐 아니라 홈페이지 이용 자체가 불가능함.
- 키보드만으로 공연정보 확인은 가능하나, 예약이 어려움. 다만, 전화로는 가능함.
- 플래쉬기능과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여 키보드를 통한 정보습득이 제한됨.
-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음성안내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으나, 장애인서비스 란을 별도 설치하여 장애인 할인과 리프트 설치안내, 엘리베이터 안내 및 장애인을 위한 해피콜(예약 및 문의)시스템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음.



## 라. 결과 분석

### ○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 내 공연정보 확인 가능 여부(키보드를 통한 접근성)

- 시각장애인이 타인이 도움 없이 문화·예술시설 홈페이지에 제공된 공연시간 및 일정, 장소 등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키보드만으로도 웹 정보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
- 이에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사립대학 미술관, 사립대학 박물관 등 총 72 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홈페이지가 없는 15개 웹사이트를 제외한 57개 웹사이트 중 34개 웹사이트에서 키보드를 통한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었고 나머지 23곳은 마우스를 이용해야만 정보 접근이 가능했음(59.6%).
- 시설유형별로는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35곳 중 22곳(62.9%), 사립대학 박물관 20곳 중 12곳(60.0%), 사립대학 미술관 2곳 중 0곳(0.0%)에서 키보드를 통한 정보 접근이 가능했음.

## O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를 통한 공연예약 가능 여부

-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 사립대학 미술관 등 총 72개 홈페이지 중 홈페이지를 통한 공연 예약 서비스가 없는 42개 홈페이지를 제외한 30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불과 4개의 홈페이지에서만 시각장애인 스스로 공연예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시설 유형별로는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4곳 중 4곳(15.4%)은 홈페이지를 이용한 티켓 발매가 가능하나, 사립대학 박물관 및 사립대학 미술관은 이용이 곤란함.

#### 마.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문화·예술 사업자는 당해 시설에서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중 하나는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임.
-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과 사립대학 미술관 및 박물관은 2012. 4. 11.부터 위 의



무가 적용되므로, 해당 시설들은 시각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함.

- 모니터링 결과, 시각장애인이 **키보드만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예술시설 웹사이트** 는 불과 59.6%에 불과했고, 특히 웹사이트를 통해 공연예약이 가능한 시설은 13.3% 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홈페이지에는 공연·전시 및 예매 안내, 위치정보 등을 비롯한 각종 정보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접근권 보장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필수적임. 따라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화·예술시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해당 의무를 안내함.

## 〈5〉모니터링 총평



#### O 문화·예술시설 장애인 접근성

- 문화·예술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체장애인을 위한 주출입구 높이 및 너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엘리베이터 등은 비교적 양호하게 설치된데 반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럭 및 점자안내판 등은 매우 미흡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지체장애인에 비해 시설접근성이 더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란 장애유형을 고려한 것으로, 특정 장애유형에게만 치중된 시설 편의제공은 개선이필요함.
- 시설접근성은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편의증진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모니터링 대상 기관에 모니터링 결과를 알리고 개선을 독려함.

#### O 문화·예술시설 이용 및 관람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 문화·예술시설에서 제공하는 리플릿 등에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움.
- 모니터링 결과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점자 및 확대문자 등의 형태로 된 리플 릿을 제공하는 문화·예술시설은 매우 저조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보청기를 미리 구비하는 시설 역시 매우 적었음. 한편,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하여 지정석을 마련한 시설은 많은 편이었으나, 지정석 외 좌석 착석을 허용하는 시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휠체어사용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음. 단,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제공은 양호한 수준이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문화·예술활동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바, 모니터링 대상 기관에 모니터링 및 관련 규정을 안내하여 이행을 독려함.

#### O 문화·예술시설 웹 사이트 정보 접근성

- 모니터링 결과, 문화·예술시설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은 매우 미흡한 편이었음. 특히,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공연예매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4조 제4항 및 시행령 15조, 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등을 종합하면,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과 사립대학 미술관 및 박물관은 2012. 4. 11.부터 웹 접근성 보장 의무가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웹사이트를 구축하지 않은 문화·예술시설은 장애차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모니터링 대상 시설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이행을 독려함.



## <6>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및 회신 등 개선사항 📦 🧊



##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공문 송부

가. 수신자 : 16개 시·도 문화예술과

제목 2012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 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 따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동법의 실 효적 이행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 6월에는 문화·예술시설 이용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3.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장애인 차별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위 차별사례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귀 기관 소속 시설에 모니터링 결과를 안내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선사항 및 계 획(붙임 참조) 등을 2012. 11. 9.(금)까지 우리 위원회로 회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4. 참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문화·예술사업자는 동 법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및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장애 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회신 등 개선 사항

현고 이런 네이		개선 사항	ul ¬
협조 요청 내용	기관	주요 내용	비고
		공연장	
피모니터링 시설에 의견 및	A 공연장	<ul> <li>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점자자료, 확대문서 등) 시험 시행 후 확대여부 결정</li> <li>휠체어사용자의 좌석 선택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향후 리모 델링시 반영</li> </ul>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 차·전면유효거리·통과유	B 공연장	<ul> <li>시설개선계획에 의거 매표소 관련하여 점차적으로 개선 예정(2013~2014)</li> <li>장애인 활동 보조 장비 및 기기 2013년 장비구입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구입 예정</li> </ul>	
효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 복도 및 통로 유효폭, 충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매표소 높이 및하부공간, 화장실 통과유효폭 및 수평·수직손잡이설치, 주출입구 점형블럭설치, 점자안내판·축지도식안내판·음성안내장치둥설치 - 편의 제공: 문화·예술활동보조인력 배치, 팜플렛 등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	C 공연장	<ul> <li>2013년 하반기 주출입구 전면 경사로 및 점형블럭 설치 계획</li> <li>2014년 안내 및 경보설비(촉지도식안내판, 장애인용 경보· 피난장치) 설치 계획</li> <li>2013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보 계획</li> <li>로비안에 간이 매표소 사용중, 2014년 외부매표소는 내부리모델링시 개선할 계획</li> <li>2014년 일반화장실 내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li> <li>예술회관 자체 책자 제작시 점자자료를 포함하거나 확대문자 책자 제작 계획</li> <li>장애인 활동 장비 및 기기 2013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구비할 계획</li> <li>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지정석을 내부 리모델링시 개선할 계획</li> </ul>	
일 검사자료, 목대군시, 모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제공, 점자안내책자 제공, 휠체어,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휠체어사용자	D 공연장	- 2013년도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 - 1991년 준공된 건물로서 향후 공연장 시설 개보수시 주출입 구 문, 엘리베이터 등 조치하겠음	
의 좌석 선택 가능 등 - 웹사이트 : 키보드 사용을	E 공연장	- 2000년 준공된 건물로서 향후 공연장 시설 개보수 시 장애 인전용화장실 설치 예정	
통한 공연정보 확인 및 예약 가능 등	F 공연장	- 향후 예산 확보 후 점자안내판 등 제작 계획 - 향후 예산 확보 후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높이도록 계획 중	
	G 공연장	- 2004년 준공된 건물로서 향후 공연장 시설 개보수시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 2013년 기획공연 팜플렛 점자자료, 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제작 제공 예정	



현고 이런 네이		개선 사항	ul ¬
협조 요청 내용	기관	주요 내용	비고
	H 공연장	- 2013년 예산 편성하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 - 2002년 준공된 건물로 향후 공연장 시설 개보수시 주출입구 문, 매표소 등 조치 예정 - 외부예약사이트의 시각장애인 예약기능이 가능하도록 티켓 링크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피모니터링 시설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I 공연장	- 향후 예산 확보하여 점자안내판, 매표소 등 점진적으로 설 치 예정 - 점자자료, 보이스바코드 제공은 예산 사정상 어려우나, 확 대문서 제공 가능 - 휠체어 2대 구입예정(2013년 예산반영)	
-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 차·전면유효거리·통과유		박물관	
차·전단규료// 다·동과규 효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복도 및 통로 유효폭,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 설 설치, 매표소 높이 및 하부공간, 화장실 통과유 효폭 및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점자안내판·촉지도	A 박물관	- 엘리베이터 항시 점검 지시 - 점형블럭, 점자안내판 추후 설치 예정 - 장애인 화장실 점형블럭, 수평·수직손잡이, 내부 통과유효 폭 등 차후 화장실 수리 시 반영 - 시각장애인을 위하 자료 및 보조 장비 및 기기 예산 확보 후 개선 예정 - 현재 홈페이지 구축 예정(장애인 편의 반영 제작 계획)	
식안내판·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 편의 제공 :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팜플렛 등 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	B 박물관	<ul> <li>현재 공사 중으로, 단차 제거, 점형블럭 설치, 장, 점자안내 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로 폭 확보, 엘리베이터 설치 등 완공 예정(2012. 12.)</li> <li>화장실 점형블럭, 수평·수직손잡이, 통과유효폭, 회전공간 확보 공사 계획 중(2013년)</li> </ul>	
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제공, 점자안내책자 제공, 휠체어, 보청기 등 장비 및	C 박물관	- 점자 안내판 등, 팜플렛 관련 편의 제공, 보조 장비 및 기기 관련 편의 제공 예산 확보 후 개선 예정(2013년)	
기기 제공, 휠체어사용자의 좌석 선택 가능 등 - 웹사이트 : 키보드 사용을 통한 공연정보 확인 및 예약 가능 등	D 박물관	<ul> <li>구출입구 문의 재질, 점자안내판 등 추후 예산 확보될 시 수리 예정</li> <li>엘리베이터,화장실은 옆 건물에 설치(본건물과 옆건물 연결되어 있음)</li> <li>보조 장비 및 기기 추후 예산 확보될 시 고려</li> </ul>	
	E 박물관	- 건물 주출입구, 화장실 점형블럭 설치, 점자안내판 등 설치 등 본 대학교 시설팀과 협의 후 빠른 시간안에 설치 계획	
	F 박물관	- 복도 및 통로, 화장실, 점자안내판 등 리모델링 및 증축 계 획에 반영 예정	
	G 박물관	- 화장실, 전시실 통로 폭 등 설치 예정(2013년)	



참포 이런 내용		개선 사항	ш¬			
협조 요청 내용	기관	주요 내용	비고			
피모니터링 시설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 시설 접근성: 주출입구 단 차·전면유효거리·통과유 효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복도 및 통로 유효폭,	H 박물관	<ul> <li>해당 박물관 건물은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서 시설 접근성 개선은 박물관 이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 학교와 협의 중에는 있으나 현재로 향후 박물관 이전 계획은 없는 상태임</li> <li>시각장애인 팜플펫 등(점자자료, 확대문서 등) 내부 협의(예산 확보)하여 개선 노력</li> <li>소규모 대학박물관으로 장애인 보조인력의 확보가 어려움 (잔류인력이 보조)</li> </ul>				
충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 설 설치, 매표소 높이 및 하부공간, 화장실 통과유	I 박물관	- 추후 박물관 점자안내 팜플렛 등 안내자료 제작 예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에 따라 안내 데스크 교체 예정				
효폭 및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주출입구 점형블럭	미술관					
설치, 점자안내판·촉지도 식안내판·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A 미술관	- 주출입구, 화장실 점형블럭, 점자안내판 설치 등 예산에 반 영하여 개선 예정(2013년)				
- 편의 제공 :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팜플렛 등 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	B 미술관	- 전시물이 상시 변경되는 관계로 시각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도슨트(전시해설가)가 동행하여 음성안내로 대체 - 휠체어, 보청기 등 향후 예산 확보 후 구입하여 제공 예정				
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제공, 점자안내책자 제공, 휠체어,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휠체어사용자 의 좌석 선택 가능 등 - 웹사이트: 키보드 사용을 통한 공연정보 확인 및 예약 가능 등	C 미술관	- 진입로 확보를 위해 학교 측에 개선사항을 적극 건의 중 - 점자 리플렛, 휠체어 등 2013년 예산에 도입 - 전문 인력을 동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 모색 중				

※ 현재도 계속해서 개선 문의나 개선계획 회신공문이 위원회에 접수되고 있음



# <7> 문화·예술시설 이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1.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운 정도의 계단이나 턱이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	계단, 턱 ○ 경사로 ○	계단, 턱 ○ 경사로 ×	계단, 턱 ×	* 주출입구에 계단이나 턱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 계단이나 턱이 있는 경우, 총 높이 cm * 경사로가 있는 경우, □ 고정경사로 □ 임시경사로 □ 기타
시설	건 물 주 출 입 구	2.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가 1.2m 이상임				* '아니오'인 경우, 유효거리m - 전면 유효거리란, 출입구턱-건물입구(문) 또는 경사로상단끝-입구 (문) 간의 거리 * <u>모니터링시설이 야외공연</u> 장인 경우 "해당없음" 표기
접근성	및 접 3.	3.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임				* '아니오'인 경우, 통과유효폭m * 문이 잠겨져 있더라도, 요 구 시 열어주었을 때 0.8.m 이상이면 '예'표기 * 모니터링시설이 야외공연 장인 경우 "해당없음"표기
		4. 주출입문이 회전문이나 무거운 재질의 문으로 되어 있어 통과하기 어려움				* '예'인 경우,  □ 회전문 □ 무거운 재질의 문 (사진첨부요망) □ 기타 * 모니터링시설이 야외공연 장인 경우 "해당없음" 표기
		5. 주출입구 바닥면에 점형블럭이 설치 되어 있음				* 모니터링시설이 야외공연 장인 경우 "해당없음" 표기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6.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 여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 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음	'음성 안내 장치가 설치되 어 있는 경우' 6-1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 '예'인 경우,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기타  모니터링시설이 야외공연 장인 경우 "해당없음" 표기
		6-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제 작동하고 있음				* 6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음				
		8. 복도 또는 통행로의 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1.2m 이 상임	8-1	9	9	* '아니오'인 경우, 유효폭m * 모니터링시설이 야외공연 장인 경우 "해당없음" 표기
		8-1. 복도 또는 통행로의 유효폭이 1.2m 이상이지만, 화분이나 의자 등 기 타 장애물로 인하여 통과가 어려움				
시설 접근성	복및통 등	9. 시설이 2층 이상에 있거나, 또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이동에 필요한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음	시설 2층 이상 ○ 경사로 등 ○	시설 2층 이상 ○ 경사로 등 ×	시설 1층 ○	* 시설이 1층만으로 설계되 어 있는 경우/야외공연장 인 경우 "해당없음" 표기 * 시설이 1층 이상인 경우, 층 개수 층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 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시 - '예'인 경우, □ 경사로 □ 엘리베이터 □ 기타
		10. 건물(공연장 및 박물관, 미술관) 내 부 각 층을 휠체어 사용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음				* 내부 층이 없는 경우, "해 당없음"표기 * 모니터링시설이 야외공연 장인 경우 "해당없음"표기
		11. 매표소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 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0.7m 이상 0.9m 이하"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음				* '아니오'인 경우, 매표소 높이 m * 매표소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매 표 소	12. 매표소 하부 공간은 무릎 및 휠체 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 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 로 설치되어 있음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 준을 충족하여야 "예" * '아니오'인 경우, - 높이 m - 깊이 m * <u>매표소가 없는 경우,</u> "해당없음" 표기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13.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14.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설치되어 있음				* 대소변칸 모두 수평·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로 표기
시설 접근성	화 장 실	15.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 려하여 0.8m 이상임				* '아니오'인 경우, 너비 m
		16. 화장실 내부(대변기칸)가 휠체어가 회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 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예' 로 표기 * '아니오'인 경우, - 너비m - 깊이m
	* 아	개 질문은 공연장 또는 학교소속 박물관·	미술관 연	반내센터	담당자이	  게 직접 질의 *
문화·예 술활 에 있어(	뮨	]각장애인이 <b>팜플렛</b> 등을 점자자료, 확대 - 산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b>사전에</b> L <b>구할 경우</b> , 제공 가능함	17-1, 17-2, 17-3	17-4		※ 시설담당자에게 질의! (행사팜플렛을 행사주최측에서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 시설담당자가 임의로 행사주최측을 선정하여 질의한후 체크함) * "예"인 경우, 제공주최 □ 광연장'박물관/미술관측□ 행사주최측□ 기타
의 정당한	17-1.	. 요구 방식 (예시: 전화 등으로 요구, 관	런서식 직	  성 후 요	구 등)	
편의제		. 제공 방식 (예시: 현장에서 직접 수령 /	집으로	발송 등)		
공		. 제공 기간 일				
	17-4.	. 제공하지 않는 이유 (예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필요성을	· 못느껴	1
	18.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b>점자안내책자</b> ,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를 <b>현장에서 요구할 경우</b> , 제공 가능함			18-4		* 상기 예시 중 <b>하나라</b> 도 제 공하면 "예"로 표기 □ 점자안내책자 □ 휠체어 □ 보청기 □ 기타
		. 휠체어, 보청기가 실제 작동하고 있음				* 18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점자안내책자'를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 요구 방식 (예시: 공연 시작 전 안내데:	스크에 요	.구 등)		
		. 제공 방식 (예시: 장비 대여 등)	اد داد	피스거스	D 11	))\
	18-4	. 제공하지 않는 이유 (예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벌요성을	:	시)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제공)
	19.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음	☞ 19-1	20	20	*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 "해당없음" 표기
문화·예 술활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19-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지정석의 위치가 맨 앞 또는 맨 뒤 등으로 특정되어 있고, 다른 좌석에는 앉을 수 없음				* '예'인 경우,  □ 맨 앞자리만 □ 맨 뒷자리만 □ 맨 앞자리 및 뒷자리만 □ 기타 (사진첨부 요망)
편의제공	20.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 부	20-1	20-2		
	20-1. 보조인력의 종류 (예시: 시설안내원, 전				
	20-2. 제공하지 않는 이유 (예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필요성을	못느껴	
홈페이지	21.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공연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또는 홈페이지에서 공연
사용 및 정보제공	22. 키보드(tab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 예약이 가능함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없 음" 표기
기타	23. 그밖에 전반적으로 공연장 등을 이용하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기재 가능)	데 불편한	· 사항 및	보완할	사항은?



## <8> 문화·예술시설별 모니터링 결과



## (1)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35	30	5	0	85.7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35	33	0	2	100.0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35	33	0	2	100.0
작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35 33 0 2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35 33 0 2 적정 문 형태 및 재질 (회전문 또는 무거운재질 X) 35 27 6 2 점형블릭 설치 35 21 12 2 점차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 여부 6 4 2 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35 34 1 0 0 4 3 5 33 0 2 2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81.8				
즈추 <u>이</u> 구		33	21	日子   日子   日子   日子   日子   日子   日子   日	01.0	
15日1		35	21	12	2	63.6
		35	Q	25	2	24.2
		33	0	23		24.2
		6	4	2	0	66.7
			34	1	0	97.1
		35	33	0	2	100.0
보드 민		33	29	4	0	87.88
			2)		0	07.00
0 0 3		35	19	9	6	67.9
		35	22	7	6	75.9
		35	9	19	7	32.1
매표대				17	,	32.1
		35	3	26	6	10.3
			20 15 0 57.1			
	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		85.8
매표대 하무 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35     35       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35     20       대소변간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35     30       화장실     대변기간 통과유효폭(0.8m 이상)     35     28	7	0	80.0			
		35	28	7	0	80.0
			20	,		00.0
		35	6	28	1	17.7
-1-1-1-1-1-1						-0.0
		35	21	14	0	60.0
제공			20			07.0
	_ 휠체어 및 보청기 실제 작동 여부	21	20		-	95.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지정석 마련	35	29	-		82.9
	_ 휠체어사용자의 좌석 선택 가능 여부	29	9			31.0
	보조인력 배치	35	32	3	0	91.4
웹사이트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 내 공연정보 확인 가	35	22	13	0	62.86
정보	능 여부(키보드를 통한 접근성)					
접근성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를 통한 공연예약 가능	35	4	22	9	15.4
	여부					



## (2) 사립 대학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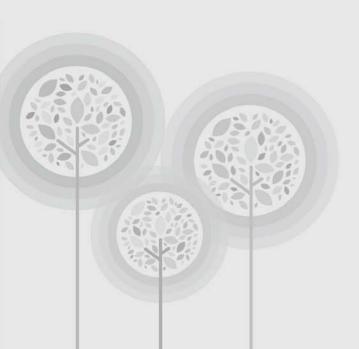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4	3	1	0	75.0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4	3	1	0	75.0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4	4	0	0	100.0
주출입구	적정 문 형태 및 재질 (회전문 또는 무거운재질 X)	4	2	2	0	50.0
	점형블럭 설치	4	1	3	0	25.0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4	1	3	0	25.0
	_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 여부	0	0	0	0	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4	3	1	0	75.0
	적정 통과 유효폭(1.2m 이상)	4	4	0	0	100.0
복도 및	_ 통과 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 또는 통행로에 장애물 X	4	4	0	0	100.0
통행로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4	2	0	2	100.0
	건물 내부 각 층 휠체어 이용가능	4	2	0	2	100.0
-1 TF -11	적정 매표대 높이 (0.7m 이상 0.9m 이하)	4	0	0	4	0.0
매표대	매표대 하부 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4	0	0	4	0.0
	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4	1	3	0	25.0
	대소변칸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4	3	1	0	75.0
화장실	대변기칸 통과유효폭(0.8m 이상)	4	3	1	0	75.0
	대변기칸 회전 공간 확보 (너비 1.0m이상, 깊이 1.8m이상)	4	3	1	0	75.0
정당한 편의 제공	사전에 요구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의 리플렛 제공)	4	1	3	0	25.0
	현장에서 요구하는 경우,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1	3	0	25.0
	_ 휠체어 및 보청기 실제 작동 여부	1	1	0	0	100.0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지정석 마련	0	0	0	0	0.0
	_ 휠체어사용자의 좌석 선택 가능 여부	0	0	0	0	0.0
	보조인력 배치	4	2	2	0	50.0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 내 공연정보 확인 가능 여부(키보드를 통한 접근성)	4	0	2	2	0.0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를 통한 공연예약 가 능 여부	4	0	2	2	0.0



## (3) 사립 대학박물관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33	28	5	0	84.8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33	33	0	0	100.0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33	33	0	0	100.0
	적정 문 형태 및 재질	33	30	3	0	90.9
주출입구 -	(회전문 또는 무거운재질 X)	33	30	3	U	90.9
一一一一	점형블럭 설치	33	12	21	0	36.4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33	3	30	0	9.1
	_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 여부	2	0	2	0	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33	26	7	0	78.8
	적정 통과 유효폭(1.2m 이상)	33	28	5	0	84.8
복도 및	_ 통과 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 또는 통행로에 장애물 X	28	25	3	0	89.3
통행로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33	18	11	4	62.1
	건물 내부 각 층 휠체어 이용가능	33	18	11	4	62.1
-1 T -1	적정 매표대 높이 (0.7m 이상 0.9m 이하)	33	1	3	29	25.0
매표대	매표대 하부 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33	1	3	29	25.0
	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33	9	24	0	27.3
	대소변칸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33	19	14	0	57.6
화장실	대변기칸 통과유효폭(0.8m 이상)	33	17	16	0	51.5
	대변기칸 회전 공간 확보 (너비 1.0m이상, 깊이 1.8m이상)	33	15	18	0	45.5
정당한 편의 제공	사전에 요구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의 리플렛 제공)	33	7	24	2	22.6
	현장에서 요구하는 경우,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33	10	23	0	30.3
	_ 휠체어 및 보청기 실제 작동 여부	10	9	1	0	90.0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지정석 마련	33	0	0	33	0.0
	_ 휠체어사용자의 좌석 선택 가능 여부	33	0	0	33	0.0
	보조인력 배치	33	29	4	0	87.9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 내 공연정보 확인 가능 여부(키보드를 통한 접근성)	33	12	8	13	60.0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를 통한 공연예약 가 능 여부	33	0	2	31	0.0

# Ⅳ. 모니터링 평가 및 제언





## Ⅳ. 모니터링 평가 및 제언

## 1

## 2012년 모니터링 사업 성과

# 가. 투표소·투표안내문·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 비교(2010-2012)

-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어,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에서도 투표소, 투표안내문, 웹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개선 효과 확인
- 모니터링 결과, 2010년 모니터링 이후 투표소의 장애인 시설접근성 및 투표안내문 제공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충족률이 상당히 개선된 것을 확인
- 모니터링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내하고, 일부 미진한 항목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 나. 생활속 장애차별 시정 계기 마련

○ 의료기관, 문화·예술시설 등 생활 반경 내 시설들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기관에 모니터링 결과를 안내하여, 자체 개선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진정사건과 연계하여 개 선 권고

####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장애차별 예방 효과

○ 장애차별에 대한 시정과 함께「장애인차별금지법」의 홍보 및 장애차별 예방에 중 점을 두어 모니터링 사업 수행



- 모니터링 실시 전 모니터링 대상기관 및 관리·감독기관에 모니터링 계획 등을 통 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효과 도모
-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관계 기관들의 지속적인 문의가 있는 등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 및 장애차별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

## 라. 모니터링단원의 권리의식 고취 및 활동성 제고

- 모니터링단원의 65%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 당사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스스로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
- 또한, 모니터링에 참여한 비장애인 단원에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학습 효과와 함께 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2 ) 향후 개선 사항

## 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내용 명확화

- 금년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는 시설물 접근성, 정당한 편의제공, 웹정보 접근성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항목에 대한 해석이 단원별로 상이하여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야기되었는바.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해서는 실무진 회의 등을 통해 사전 보 완 필요

## 나. 모니터링 결과 즉시 도출

- 전년도에 비해 모니터링 결과가 다소 일찍 작성 및 보고되었음에도, 피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개선결과를 회신받고 자체개선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 O 가급적 모니터링 실시 1~2달 후에는 결과를 도출하여 피모니터링 기관에 송부할

#### 126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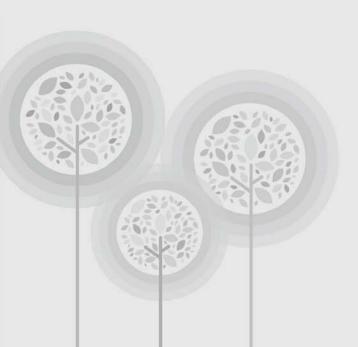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다. 기타 운영상 문제 및 개선방안

○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65%가량을 장애인으로 선발하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으 나, 청각장애인 등 특정 장애유형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유도

# V. 모니터링 활동 사진





## Ⅴ. 모니터링 활동 사진

## 1

##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인참정권 모니터링



▲ 경사로 없는 기표소 입구



▲ 경사로 없는 주출입구



▲ 주출입구 전면유효거리 미확보



▲ 주차 방지턱으로 인해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미확보





▲ 경사가 심한 투표소 가는 길



▲전면 유효거리 미확보 및 통과유효폭 미확보



▲ 경사가 심하고 좁은 경사로



▲ 경사로 없는 턱



▲ 전면유효거리에 배치된 쓰레기통



▲ 전동휠체어사용자의 비밀보장이 어려운 기표대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투표안내문과 음성 투표안내문

## 의료기관 이용 모니터링



▲ 휠체어장애인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급경사 ▲ 경사로 끝에 주차 된 자전거와 오토바이







▲ 회전이 어려운 경사로



▲ 계단(49cm) ○, 경사로 등 ×



▲ 자갈바닥으로 된 경사로



▲ 전면 유효거리 미충족



▲ 급경사로 인해 이동이 어려움



▲ 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상 전화기

134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전면 유효거리 부족(0.9m)이하



▲ 점형블럭이 없는 주출입구



▲ 고정되지 않은 점형블럭



▲ 화분에 가려진 촉지도식 안내판



▲ 접근이 어려운 촉지도식 안내판



▲ 장애물로 접근이 어려운 점자 안내판





▲ 점자안내판과 음성안내장치



▲ 핸드레일의 점자표지판



▲ 장애물로 가려진 점형블럭



▲ 휠체어가 다니기 어려운 통로



▲ 가설물 설치 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 표지판

136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자차가 주차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장애인 전용 창구



▲ '장애우'라는 잘못된 표현



▲ 규격에 부족하나 장애인 전용 창구



▲ 깊이가 부족한 장애인 전용 창구



▲ 휠체어 전용 접수 창구





▲ 장애인 전용 창구



▲ 규격에 맞지 않은 장애인 전용 창구



▲ 장애인 전용 화장실



▲ 점자 표시가 있는 엘리베이터 버튼



▲ 진료실 마다 붙어있는 점자 안내판



▲ 원무과 내에 비치된 확대문서기

138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문화 · 예술시설 이용 모니터링





▲ 일반화장실 규격과 같지만 장애인 전용 화장실 표기 ▲ 오픈 가능한 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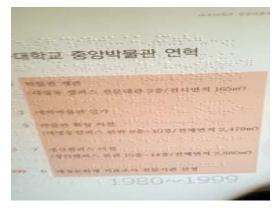


▲ 장애인 지정석



▲ 맨 뒤에 지정된 장애인 지정석





▲ 점자안내책자 제공



▲ 보이스바코드가 부착된 박물관 전시품





▲ 수직·수평 손잡이 설치된 장애인전용화장실 ▲ 수직·수평 손잡이가 설치되었으나 좁은 화장실



▲ 임시 경사로 설치



▲ 고정 경사로 설치





▲ 주출입구에 설치된 점·선형블럭



▲ 계단 ○, 경사로 등 X



▲ 촉지도식 안내판 / 음성안내장치



▲ 촉지도식 안내판 / 음성안내장치



▲ 장애물 있는 통로



▲ 전동 휠체어 탑승 어려운 작은 엘리베이터





▲ 층간 이동을 위한 리프트



▲ 내부를 이용하기 위한 완만한 경사로



▲ 내부를 이용하기 위한 급한 경사로



▲ 층간 이동을 위한 수단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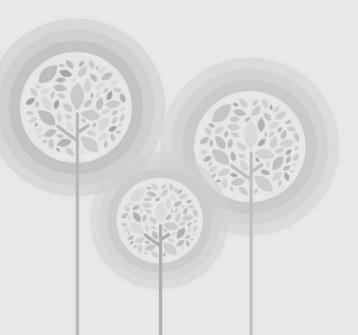
▲ 깊이 부족 매표소



▲ 창고로 사용되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









### 〈부록 1〉활동소감문(가나다순)

###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①

권 은 선 (대전 모니터링단)

작년에 이어 2012년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단이 구성이 되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번년도에는 투표소와 의료 기관 등에서의 장애인 접근성과 편의제공 등에 대한 감시 활동을 시작하였다. 올해 현장 모니터링단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서의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 제공,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국·공립 및 민간 종합공연장, 사립대학 소속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게 되었다.

장애인이 소형병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접근이 어려워서 대학병원 등 중심으로 큰병원을 찾는다는 점이다.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잘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로에 곳곳에 놓여진 대리석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과 휠체어 장애인들은 출입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대리석 기둥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 바로 옆에 설치돼 있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고, 휠체어 장애인이 출입하기에는 대리석 간 간격이 좁아 힘 겹게 겨우 통과할 수 있었던 점이었다. 또, 설치된 점자촉지도도 부식형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읽기가 매우 불편하였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편의시설의 확보이다. 현황은 매우 낮은 데 비해. 장애인들의 욕구 중대는 매우 커서 편의시설 필요성도 커지게 되었다. 실제로 장애인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노인, 임산부, 어린이, 심지어 비장애인들까지 모두에게 편리하고 동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장애인편의시설은 대폭 개선이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실 있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최근 장애인전용화장실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이름만 장애인시설일 뿐 장애인들이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았다.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②

김 경 우 (서울 모니터링단)

지난 4월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으로 위촉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이다. 이 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모니터링단의 역할은 장애인 시설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여부, 홈페이지 정보접근성 등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목적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인과의 활동과 접근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찾아낸다. 또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주어지는 과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러한 피드백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차별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리고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우리가 활동한 과제는 2012년 4월에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모니터링', 5월'의료기관 이용 모니터링'에 이어, 6월 '문화·예술시설 이용 모니터링'과제가 대표적인 활동내용이다. 이를 중심으로 장애인 시설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홈페이지 정보접근성 등에 관하여 그 실태와 소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은 ○○구투표소에서 이루어졌다. ○○ 제2투표소는 재개발지역내 위치한 연립주택단지이다. 투표소는 낡은 빌딩의 1층 사무실임대장소였다. 턱이 4cm가 되며 경사로가 있으나 장애인이 이용할수 있는 그런 경사로가 아니라 시멘트의 마찰용 경사로로서 불편하였다. 출구에는 제1계단 높이 14cm, 제2계단 17cm로서 일반인도 불편한 계단 설치이다. 이동권에 장애요소의 걸림돌이 구조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출입조차 하기 어려웠다. 기표소로들어갔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용 투표용지와 투표보조용구가 준비는 되고 있다고 하나 실제 투표현장에서는 점자형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사무직원의 인식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5월에는 의료기관 이용 모니터링으로 우리 6조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 대상은 종합병원, 요양병원, 한방법원이다. 병원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이 대학병원에는



전용주차구역을 갖고 있었으나 그 외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이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등 본인의의료관련 기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대학병원은 요구시에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6월에는 문화・예술시설 이용 모니터링과제가 대학의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예술의전당(공연장)으로 이동하였다. 다른 어떤 기관보다 예술의 전당이 시설접근성과 편의제공에 있어 표본이 되고 있었다. 문화예술시설은 예술의 전당을 기본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는 장애인의 차별화에 대한 지표와 기준이 되었으면 한다. 그나마 실망과한숨가운데 모니텅링단으로 활동한 보람을 이 곳에서 희미한 등잔불과 같은 희망을 갖게 해 주었다. 사실 예술의 전당에도 촉진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시설이나 이동권 등 통합적 관점에서 장애인이 접근과 편의시설로서의 역할이 충분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출입구부터 복도와 통행로의 유효폭이나 전체적인 통행로가 적절하게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동에 따른 부분적인 충별 안내 및 일부 전용화장실의 접근과 시설은 갖춰져 있었다. 그리고 공연장의 좌석에 까지 장애인의 착탈식 공연과 감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건축초기부터 갖추어져 있었고 가변식 좌석도 갖춰져 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다.

오늘날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구조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장애인에게 무엇보다 음악, 공연, 미술교육 및 재활치료 활성화 차원에서도 문화와 예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애인 독창연주, 공연, 연극, 음악, 미술창작활동 및 교육활성화를 위한 문화생활의 공공기관위주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장애예술인 활성화와 지원정책과 지원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81억여원)를 포함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16억여원), 지역의 문화재단(2~3천만원)이 장애인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으로 이는 전체 문화예술예산중 0.5~1%에 불과하다. 또한 장애인 공연을 위한 음악, 예술, 문화의 강사 양성의 중요성도 주장하고 싶다. 문화공연양성을 위한 교육 및 취업기회도 확대해야 하며, 장애인고연 및 강사에게 교육기회와 함께 강의기회, 공연기회도 부여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자연스러운 독서조차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 '점자'의 도움을 받아



독서를 한다해도 요즘은 점자를 익히는 장애인도 많지가 않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는 점자도서만이 전부가 아니라 촉각도서도 개발되고 있다. 촉각도서란 기존의 점자로만 구성된 시각장애인용 책과는 다르게 다양한 재료로 입체감 있는 모양을 만들어 손으로 그 모양을 느껴가며 책을 읽도록 도와주는 도서를 말한다. 이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배려가 시급하다. 홈페이지 사용 및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장애인이 홈페이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았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웹 접근성을 고려해 사이트가 리뉴얼된 곳이 많았으나,실제 중증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키보드와 스크린리더로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접근이 어려운 문제점들이여전히 남아있어 사이트 리뉴얼과 함께 사용성 진단평가가 함께 이뤄져야할 것으로본다. 장애인들의 세계에 대해 이해해보고 소통하는 창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위해 사회가 함께 공감하는 인식이 우선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방문하는 곳마다 장애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지를 물었다. 대답은 장애인들은 거의 혼자 내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 줄 있는 내용은 없다고 답변했다. 무관심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동권과 보건의료에 관한 복지이다. 장애인의 이동에는 거리의 보도, 시설이나장치가 되어 구비되어 있음에도 관리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도 많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무엇보다 변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에 대한 인식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나 사회적 가치를 논하지 않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 같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그것은 법으로 지켜져야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속에서 당연히 따르고 반드시 누려할 사회적 원칙이다. 이것은 참다운 민주주의요 국가의 출발이 된다. 이번 모니터링단을통하여 오감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불평등을 인간의 권리로 반성하고 개선하여야 함을 새삼 느끼게 하였다.

끝으로 활동하는 기간내 가족처럼 함께하고 움직이며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조원들에게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와 기쁨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팀, 우리의 멘토 권미진 선생님, 그리고 항상 우리와 교통하시고 도와주시고 코디네이터 해주신 고여진 선생님에게 이런 기회와 자리를함께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③

김 나 영 (부산 모니터링단)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알다시피 2008년 4월 11일 부로 시행되면서 사회에서 차별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물론, 당사자의 시선에서 보면 아직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차법 현장 모니터링 제도」실시하여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끎으로써 국가와 개인 간의 다리 역할로 노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올해 처음 모니터링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청각장애인 입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쓰고자 한다. 지난 3월 말 모니터링단 발대식에서 청각장애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통역지원이 제공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왔다. 수화통역사와 속기내용이 빔 화면 하나에 적절한 위치로 같이 나와 황홀할 정도로 대만족이었다. 이렇게 완벽한 토탈(Total) 통역서비스는 내 인생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렵다. 언제 어디서나 청각장애인이 원하는 통역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세상이왔을 때 우리 '청각장애인'이라는 딱지를 힘껏 내던질 수 있으리라.

장차법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주제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이다. 국회의원 후보들의 연설, 홈페이지 동영상, 선거당일(4·11) 투표안내 등 청각장애인 위한 통역이 전무해 나와 동행했던 수화통역사도 한 국민으로서부끄럽고 안타까워 할 정도였다.

정치철학 떠나서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내가, 한 대통령 후보에게 감동받은 일이 있었다. 그 후보는 지난 대선출마선언 현장에서 최초로 수화통역사 배치하여 단상에 함께 올랐으며, 대변인실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영상마다 한글 자막 제공하는 등 기존 정치인과 다르게 청각장애인 참정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

단언하건대 그동안 그처럼 진정성을 담은 통역서비스로 청각장애인과 함께 공유하고자 노력한 정치인은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만큼 청각장애인이 국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통역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정책을 공유하기는커녕 공감도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이 자유롭게 활보하며 행복해 마지않는 선진정치가 실현되어야 자연스레 모든 국민에게도 공정공평한 선진국가 대한민국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당사자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고 특히, 청각장애인 단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화로 안내하는 등 홍 보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많이 느꼈다.

마지막으로 부산지역 모니터링단원 중 유일한 청각장애인이었던 나의 수화통역 요 청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 나와 함께 활동한 팀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④

김 태 우 (제주 모니터링단)

처음 모니터링 단원이 되었을 때만 해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접근성, 그리고 모니터링이라는 말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져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더하여 장애 당사자로서 제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의입장을 고려하여 대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부담으로 작용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하지만 4월에서 6월까지의 지난 3개월을 되돌아보면, 걱정과 부담감에 짓눌린 모습이 아니라 장애라는 굴레 안에서 묵인되어 온 사회적 차별에 분노하는 제 자신을 볼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4월 총선에 맞춰 시작한 참정권 모니터링에서 의료기관과 문화·예술시설 접근성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매월 선정된 주제는 장애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 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졌던 문화 ·예술 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들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 고,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기대감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현실의 물리적 장벽과 이를 대하는 사 람들의 인식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공연장 조차 장애인에 대한 편의와 접근성, 그리고 관계자들의 인식 모두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접근성과 편의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실제 장애인이 느끼는 장벽과 여기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모멸감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공연장이 장애인 관람석을 맨 앞이나 뒤에 따로 마련해 둠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있었고, 장애인석과 비장애인석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장애인 가족들은 공연을 함께 관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실망스러운 부분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공연장 관계자들은 개선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계 변경이 어렵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모니터링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도



편하다는 인식이 더 절실한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기울기가 높은 경사로와 높은 턱으로 장애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서비스도 많습니다. 이는 유・무형의 여러 시설물과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기준이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비장애인에 의해 만들어져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의문제를 파악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장차법 모니터링 활동이 단순한 사후 모니터링이 아니라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를 위해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모니터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번 활동 결과가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나 보다 발전된 모니터링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⑤

노 동 주 (광주 모니터링단)

2011년 모니터링단을 했었던 도현이 형이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로 모니터링단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던 중 2012년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시각장애인인 나는 버스를 이용할 때, 자주주변 사람에게 버스번호를 묻곤 한다. 그런데 자주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도움을 거절 받곤 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있다 보니까 나뿐아니라 다른 장애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평범한 시민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었다. '모니터링단'이라는 명찰을 달고 병원, 문화시설, 대학교를 돌아보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 암행어사가 된 기분이었다. 암행어사는 '백성의 질고를 임금에게 아뢰는 것'을 직무로 했다. 그렇기에 나도 우리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평범한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모니터링단원은 조별로 한 팀을 4~6명으로 만들어 움직였다. 각 팀들은 모니터링 단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뇌병 변장애를 가진 모니터링단원들은 이동권에서부터 서로 의사소통하기도 어려웠다. 이점을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장애인이동차와 수화통역사로 도와주었다. 이들의 도움으로 처음에 병원을 갔더니, 장애인 주차시설은 차에서 내려온 휠체어가 놓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있더라도 좁았다. 건물 안에서는 휠체어가 돌아다니기에 힘들었다. 병원 내에서는 접수하는 곳이 휠체어가 닿지 않았고, 유도 블록과 점자 블록, 점자지시판이 없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없었다. 어떤 대학교는 언덕이 심한곳에 지어졌기에 보통사람이 걸어 다니기에도 힘들었다. 하지만 그 학교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 있다고 했는데, 그 학생들을 보조해 주고 있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시설이 전혀 없어서, 화장실을 찾는 것도 힘들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자리가 앞쪽은 없었고. 맨 뒷자리는 몇 개 없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명찰을 차고 점검 나가는 시설들마다 겁에 질린 듯 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대학교 사무처장들은 우리에게 사법적인 권한이 있는 줄 알고 우리를 무서워했다. 모니터링단인 우리에겐 특별한 권위 보다는 장애인들을 위해점검을 나간 것임을 모른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장애인들에게 차별을 하고 있었기에 찔린 것이다. 직원들마저도 장애인인 모니터링단을 차별하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에게 시설을 설명하는 태도가 불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⑥

박 미 라 (대구 모니터링단)

#### • 2012년 모니터링 활동 평가

투표소, 의료기관, 문화예술시설,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각 팀으로 구성되어 움직였다. 의료기관은 큰 병원을 위주로 하여서인지 미흡한 점도 있으나 대체로 시설물이 갖추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시각, 청각장애인의 필요한 시설물은 거의 부족한 상태다. 큰 건물 보다는 조금 작은 건물 위주로 활동이 필요할 것 같다.

팀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해보니 모니터링 시간은 조금 단축되나 작은 건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주위가 너무 복잡하였으며 특히 각 개인 사정으로 모니터링 날짜 한 번정하기도 매우 어려워 불편하였다.

#### • 2013년 모니터링 활동 관련 제언

팀별로 움직이되 4~5명으로 구성되기 보다는 2명 정도로 구성되고 모니터링 기관을 더 늘리는 것이 효율적일 거라 생각된다.

#### • 총평

앞으로도 활동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어야 한다. 모니터링을 해온 결과 이 활동은 사회와 소통하는 발판이라 생각된다.



#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⑦

박 상 진 (울산 모니터링단)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단을 2년째 하고 있는 울산의 박상 진이라고 합니다. 어느새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원이 된지도 2년이 되어가 고 있다는 점이 놀랍고 신기합니다. 작년에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울산 남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소개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저 또한 장애인이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몰랐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접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시설이 많다는 사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좀 더 확충되어지는 데 보탬이 되고자 올해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4월 울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하게 될 팀원 모임이 있었을 때 작년 한해 모니터링단 경험이 팀원들에게 인정되어 팀장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단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팀장이 되면서 저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팀장들을 따라서 도와주기만 하면 되었지만 이번에 팀장이 되어 팀원들을 이끌게 되어보니 좀 더 인권위원회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또한 팀원들과의 협동을 통하여 일을 진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작된 모니터링단원의 일은 4월, 총선을 맞이하여 울산 선거 투표소 5월 은 울산의 의료기관, 6월에는 울산에 있는 박물관, 7월에는 울산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편의시설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 팀원들과 함께 여러 장소를 모니터링하면서 울산에 있는 여러 장소들의 편의시설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알아보는시간이 되었으며 저에게도 이 장소들을 이용하는데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니터링을 한 장소 중에는 기준에 맞게 잘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었고 반면 기준



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모니터링하기가 쉽지 않았던 곳이 바로 선거 투표소였습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도 투표소로 사용해야 하다 보니 편의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이 대다수였으며 특히나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곳이 많았습니다. 모니터링 팀원들 대부분이 휠체어 이용자다보니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힘이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팀원들 간에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도 겪게 되었으며 팀장으로써 그들과 마음을 맞춰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각자가 가진 좋은 생각들을 취합하여 진행하다보니 점차 마음을 맞춰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부분을 서로 맞추어가며 열심히 하다 보니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팀원들도 모니터링단 일에 적응을 하였고 저 또한 팀장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다른 일을 하게 될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팀원들의 보고서를 받아 보면서 제가 본 관점이 아닌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편의시설을 어떻게 확충하면 좋을지 고민해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저에게도 모니터링단 팀장을 맡았던 것이 저에게도 도움이되는 감사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저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경험으로 남게 될 것같습니다. 또한여전히 울산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올해 우리 팀원들이 조사한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 계속해서 장애인들을 위한편의시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편의시설 모니터링단원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하며 올 한 해 동안 저희 울산 모니터링 단원들을 도와 주신 이유희 선생님과 최수희 선생님, 김대희 선생님께 감사드리며울산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⑧

안 시 형 (부산 모니터링단)

2011년부터 시작했던 장애인 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활동도 어느덧 그 결실을 맺으려 한다. 2009년, 훌쩍 영국으로 떠나, 학습 장애인(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생활 공동체인 캠프힐 커뮤니티에서 생활했다. 그리고 2년 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보고 겪었던 영국에서의 장애인 생활과 한국 실정을 비교·대조해보고자 모니터링단 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2년째. 대학생으로 학교생활과 모니터링단 활동을 병행하였기에, 누구보다도 바쁘게 생활하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현장모니터링은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법제화 된 법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를 결코 따라갈 수 없고 이 때문에 현실과 법률이 상응하지 못하여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등을 통하여 그 공백을 채워나가고 있는데, 이 공백을 채우는 활동 중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장모니터링이다. 또한, 권리보호의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함께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이상적인데, 이는 한쪽으로만 편중된 시각을 배제할뿐더러, 비장애인에게도 현실의 문제점들을 자각하게 해줌으로써 부가적인 효과를 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2년간 활동을 해온 나 스스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현실에서의 물적, 인적 인프라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 대학교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했을 당시, 모니터링 대상 본교에 장애인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인프라 구축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 제약이 있는 경우 또한 많았다. 이로 말하자면 그 끝이 없다.

모니터링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크게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부재와 모니터링단의 해당 법률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이었다. 모니터링 활동이 팀별 로 상이하다고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의 활동에 대하여 팀장중심으로 역할분담을 하



거나 팀장의 주도하에 다 같이 함께 활동하는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기 체크리스트를 들고 다니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산발적으로 하는 것은 모니터링 대상기관에 대한 예의에 어긋날뿐더러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일관된 결과가 아닌 다중의 결과를 만들어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빙성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현장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신법과 구법과의 관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등 기본적인 법률지식의 학습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쉬우며, 법률의 내용은 이해한 상태에서 논리성을 갖추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모니터링을하는 당시에 일관된 논리성이 아닌 감정적으로 해당기관을 비판하고 대하는 태도가종종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도 사전교육을 좀 더 확대・강화 그리고 세분화하고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2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은 과연 장애인만을 위한 법적장치일까?'라는 질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이동권(移動權)이 확보된다면, 이는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인 노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이동 편이성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가 증진됨으로써 비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또한 상승한다. 즉,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비용이 아닌 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 보험을 넘어서 우리 전체를 위한 복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모니터링활동은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며 또한 비장애인의 권리도 따라서 증진된다는 점에서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크고 값진 경험이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부산인권사무소 소장님을 비롯한, 사무관님, 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



#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⑨

이 민호 (대구 모니터링단)

### • 2012년 모니터링 활동 평가

- 팀원들 간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 모니터링단 활동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의문점이 따랐습니다.

#### • 2013년 모니터링 활동 관련 제언

- 이번 모니터링 단의 경우 지체장애인의 비중이 너무 높았습니다. 2013년 모니터 링단 활동의 경우 청각·시각장애인 단원의 비중을 높여 좀 더 균형 잡힌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 총평

- 모니터링단 활동이 이동편의증진법·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들에게 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선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⑩

이 형일 (광주 모니터링단)

- "잘 몰랐습니다."
- "지금까지 그런 요구를 받아 본 적 없었습니다."
- "장애인들이 요구를 안해서요"
- "재정이 없어서요.."

모니터링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이다. 이런 답변을 받을 때마다 "예, 귀 귀관이 장차법 제 OO조에 위반 되어 권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모니터링하는 겁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투표소, 의료기관, 교육기관, 문화시설등 총 4곳을 올해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을 했던 의료기관을 몇 달 후 방문한 경험이 있다. 3곳 모두 전혀 바뀌지 않았다. 고치겠다고 했던 3cm높이의 턱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옮기겠다고 했던 장애인 전용 접수실은 화장실 옆 구석에 그대로 있었으며, 장애인 창구는 여전히 없었다. 그럴때마다그렇게 했던 모니터링이 얼마다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그래도 울어야 젖을준다는 김용목대표의 말을 떠올리며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다짐을 한다. 그렇다 그마나 장애인들이 이만큼이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된 것도 목숨 걸고 지하철 점거하고 지차제앞에서 시위했기 때문 아닌가? 그렇기에 이러한 모니터링 특별히 공공기관의 모니터링-일반 시설의 모니터링은 받아주지도 않는 데 그나마 '인권위 모니터링단'은 무시 못하기에 말이다-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삶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합법적'으로 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중 하나이기에 말이다.

모니터링을 다니면서 계속 느꼈던 것이 있었다. 코디 선생님과 활동보조원들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모니터링단이 해야할 많은 부분을 그분들이 거의 도맡아 해주셨다. 치수를 재는 것은 물론이고 각도가 안나오는 곳 촬영, 식사할 때 도움주시는 것, 잊고 있었던 추가질문들 하나하나까지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정말로 많이 힘들었을 듯 하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에 정식으로 요청드린다. 재정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시라



는 것이다. 한두 사람이 도맡아하지 않도록 장애인 단원들을 협력할 수 있는 비장애 단원들을 의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래서 장애인 단원들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비장애 단원들은 그 외 수치적인 부분을 감당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이나 비교하는 마음 갖지 않을거라생각한다.

2012년 인권위모니터링단의 일정이 이제 마무리되고 마지막 토론회만 남았다. 모 쪼록 본 토론회의 제안을 국가인권위가 정부에 정책으로 제안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현재의 식물 인권위가 아닌 출범할 때의 그 위상,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그때 의 인권위 위상을 되찾길 진심으로 바란다.



#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⑪

임형민(제주 모니터링단)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임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8년 전 군대 전역 후 사회 경험을 쌓아보겠다고 공사장에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에 다치는 사고로 하반신마비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고가 났을 당시엔 더 이상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좌절감에 죽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사고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현실이 너무가슴 아파 제 자신이 미웠고, 움직이지 않는 다리와 함께 찾아온 신체적 변화는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재활치료를 받았고 이런 저를 위한 가족들의 도움과 병원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의 비슷한 장애를 가진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장애를 받아들이고 살아야한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2년간의 긴 병원 생활을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예전처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신체적 장애는 저 스스로가 받아드리고 적응을 하면 되었지만 저를 가로막은 것은 저를 바라보는 동정의 시선과 휠체어를 가로막는 높은 턱과 계단 등 사회적·물리적 장벽이었습니다. 음식점, 편의점, 은행, 버스정류장, 병원 등 우리가 흔히 이용할 수 있는 근린시설들. 하지만 휠체어를 탄 저에게는 너무나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힌 저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성을 깨달았고 마침 제주장애인인권포 럼에서 연락이 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차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니터링 단원으로 신청하여 이번 활동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변화를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부푼 기대와 책임감은 저로 하여 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장벽과 차별을 조사하는 모니터링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 조사하고 경험하며 느꼈던 감정과 생각 하나 하나가 저에게는 매우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니터링 주제인 의료기관 접근성을 조사하기 위해 한 병원을 방문한 때의 일입니다. 해당 병원에는 휠체어가 편히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와 장애인화장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 안내판이 설치됨은 물론 장애인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에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점자자료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도면 누가 봐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완벽하게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장애인당사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은 장애인들의 이용 빈도가 높을뿐더러 일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지만, 그에 반해 장애인화장실은 그 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휠체어 이용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에 깁스를 해서 다리를 접을 수 없는 사람, 링거를 맞고 있어서 거취대에 링거를 걸고 다니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합니다. 장애인화장실이 넓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화장실은 한 층에 겨우 하나정도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지 않고 공용으로 만들어놔서 행여나 여성분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여간 무안한게 아닙니다.

장애인주차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휠체어 이용자 및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승하차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폭을 일반 주차 공간보다 충분히 확보하는 게 기본이지만, 일반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 공간 표시만 해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단순히 형식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가로막는 것이오히려 더 장애 당사자를 우롱하는 행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장애인들의 능력이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앞서 말한 장애인 화장실과 주차장의 경우도 결국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무지에서 파생된 결과일 것입니다. 과거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극복해야 할 문제로, 동정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 당사자들의 활발한사회 활동과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당사자 스스로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감시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장차



법 모니터링 활동이 의미있는 결과를 낳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제거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는 더 이상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⑩

정 방 섭 (서울 모니터링단)

며칠 전에 S대학병원에 갔다. 친척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아파 급히 치료를 받아야하기에 응급실에 동행했다. 응급실 접수대가 꽤 높았다. 마침 휠체어를 탄 어느 한 장애인도 접수를 하려고 접수대 넘어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지난 3개월 동안장애인 차별 금지법 모니터링을 한 나로서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금방 알 수가 있었다. 휠체어 탄 장애인에게는 접수대의 높이와 깊이가 법에서 정한 그 규격이 아닌 것이 분명했다. 서울에서 가장 좋다는 병원의 응급실 접수대마저 제 규격이 아니라니참 안타까웠다.

나는 서울권역 모니터링단 1조로서 동료 모니터 2명과 함께 4월에는 국회의원투표 소 4곳, 5월에는 대형병원 4곳, 그리고 6월에는 사립대학 박물관을 모니터링 했다. 시설접근성, 정당한 편의제공, 홈페이지 정보제공 등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짚어 보고자 한다.

#### 1. "시설접근성"이 취약하였다.

- 가. 주출입문이 회전문이나 무거운 재질의 문으로 되어 있어 통과하기가 어려웠다.
- 나. 투표소 안내부재로 주출입구가 막혀 있어 휠체어 접근이 어려웠다.
- 다. 복도 또는 통행로의 유효 폭이 1.2미터 이상이지만, 화분이나 의자 등 기타 장 애물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하였다.
- 라.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 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마.** 건물(공연장 및 박물관, 미술관)내부 각 층을 휠체어 사용자가 모두 이용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는 곳도 있었다.
- 바. 매표소나 접수대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는 곳이 있었다.



- **사.** 매포소나 접수대 하부 공간은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는 곳이 있었다.
- 아.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었다.
- 자.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 손잡이가 설 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었다.

### 2. "정당한 편의 제공"이 잘 되고 있지 않았다.

- **가.** 시각장애인이 팸플릿 등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곳이 있었다.
- 나. 장애인이 문화 예술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를 현장에서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하지 못한 곳이 있었다.
- 3. "홈페이지 정보제공"을 살펴보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은 전무 하였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내 이야기가 될수도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잘 알려져 규정에 따라 신규 시설은 설비되어야할 것이며, 규정에 미흡한 기존 시설은 이 규정에 따라 보완되어야할 것이다. 장애인이 편하면 우리 모두가 편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⑬

채 경 훈 (대구 모니터링단)

### • 2012년 모니터링 활동 평가

-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활동하면서 많은걸 보고 느낌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의 대상 선정의 폭이 조금은 좁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조원들의 시간이 맞지 않아 조사 날짜를 잡기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점들을 조금이나마 반영을 해주셨음은 감사하겠습니다.

### • 2013년 모니터링 활동 관련 제언

- 내년에도 모니터링을 한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물건을 구매할 때 판매자의 행동, 표현등도 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 총평

- 2012년 장애인차별금법 모니터링 조사원이 되어 좋은 경험이 이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되었고, 아직 장애인에 인식이라던지 부족한 부분들 도 알게 되어서 저에게는 또 다른 발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⑭

홍 남 희 (서울 모니터링단)

우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모니터링단원으로 활동한 것이 제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단원들 네 명이 1조가 되었는데 그 중 두 분이 장애인이었고 우리 조에는 시각 장애를 가진 분이 한 분, 뇌병변 장애를 가진 분이 한 분 이렇게 배정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장애를 가진 조원 두 분과 함께 다니면서 매달 정해진 기관에 가서 시설 현황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점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이었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들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 분들에 대하여 무엇 하나 알지 못했거든요. 시각 장애인이면 앞을 못 본다는 이야기인데 옆에서 계속 부축을 하여 이동을 해야 할 것이고 본인이 시설을 볼 수 없는데 모니터링 활동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뇌병변 장애는 정확하게 어떠한 장애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는 분이 아닐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같이 이동하려면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결국 뇌병변 장애를 가진 조원은 활동을 안 하고 그만 두어서 한 번도 뵙지 못하였고 시각 장애를 가진 조원은 계속 활동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원은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 것도 안 보이는 것은 아니고 글자 같은 것은 조금 보이고 보행할 때는 잘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하시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여 그 정도가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장애의 정도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서 놀랐습니다. 이 분은 저와 다른 비장애 조원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례로 저는 화장실의 면적이 휠체어가들어갈 정도면 될 텐데 왜 그 보다 더 넓은 면적을 요구하는지 이해를 못 했는데 휠체어를 회전시켜 나와야 할 정도의 공간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여대에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에 모니터링을 갔을 때 관계자가 장애인들이 방문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하시며 외국 여행객들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휠체어를 통해 이동하는 장애인이 두 명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은 휠체어에 의지하여 움직이는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먼 우리나라까지 여행



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자신이 사는 나라 혹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화시설에 한 번 가자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이 미안하고 갑갑하게 느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문제에 대하여 강제하지 못하고 권고하는 수준이고 권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 공공기관, 그 외 여러 시설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마련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는 점에 관하여 돈을 주면서 혹은 돈을 주지 않으면서 강제한다는 것은 결국 오래지 않아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디고 힘겨운 발걸음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활동이 사회의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보슬비처럼 젖어 들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활동에 제가 생업을 하면서 주말이나마 시간을 내어 동참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이었고 학교에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님을 외부강사로 초빙하여 '리걸클리닉'이라는 과목을 개설해 주어 수강을 하였습니다. 염변호사님이 사례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신내용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것이었고 저는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이 법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모니터링단원 모집에지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현재 변호사로서 일하고 있는데 리걸클리닉 과목을수강한 것과 더불어 모니터링단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제가 장애인 관련법 및 장애인들에 대해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의과정에서도 그렇지만 모니터링이 끝나고 조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는 과정에서 시각 장애를 가진 조원으로부터 시각장애인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는데 이 역시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각 장애를 가진 조원 및다른 비장애 조원과의 인연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활동에 시간과 체력이 허락하는 한 참여하고 싶습니다.



### 〈부록 2〉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원 명단

### 1. 서울 권역(총 24명)

권남행, 김경우, 김영애, 김은미, 김응철, 김홍영, 박윤구, 박지연, 방윤수, 심재우, 안자혜, 염원삼, 오양미, 유혜림, 윤영주, 이다희, 이지은, 임은주, 장현아, 정방섭, 조현대, 최선옥, 홍남희, 황철호

### 2. 대전 권역(18명)

권은선, 김대화, 김준학, 동준석, 박승현, 박옥경, 손원진, 송승훈, 안광평, 오세진, 이경아, 이명하, 이범주, 이자형, 이종돈, 정덕진, 천인수, 함석배

### 3. 대구 권역 (35명)

강경희, 김세령, 김시일, 김영주, 김영준, 김운용, 김이래, 김정자, 김형래, 김홍미, 문혜련, 박귀룡, 박미라, 박현경, 송재동, 신동자, 신태선, 안영찬, 원성필, 이건열, 이경수, 이대호, 이민호, 이삼희, 이성일, 이승협, 이영범, 이재숙, 장진호, 정동환, 정홍규, 조병기, 조성규, 채경훈, 정명관



## 4. 부산 권역 (26명)

강래성, 김경순, 김나영, 김민정, 김수균, 김승일, 김정민, 김종석, 김현민, 김현주, 도우경, 박상진, 박용민, 성수민, 손경연, 손주현, 안시형, 유길상, 이이헌, 장유성, 정선옥, 정성규, 정승천, 정진혁, 정현성, 황선일

### 5. 광주 권역 (32명)

강한새, 권순국, 김규형, 김대근, 김도연, 김성화, 김영애, 김용근, 김은숙, 김중기, 김현희, 노동주, 박경한, 박석진, 방철호, 변금섭, 오미광, 윤진호, 이나경, 이연호, 이한나, 이형일, 임옥연, 임은용, 장윤성, 장지호, 전응섭, 정은경, 조희정, 천성은, 최연서, 한가희

## 6. 제주 권역 (19명)

강문종, 강윤미, 고광일, 고봉균, 고혜숙, 김성일, 김태우, 박승필, 송창헌, 양동주, 유용한, 이경헌, 이기정, 이성욱, 이승훈, 임형민, 최은주, 허기원, 홍관수



# 〈부록 3〉 모니터링 관련 조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타)일부개정2011.6.7법률제10789호]	[(타)타법개정2011.12.8대통령령제2335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영은「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 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목적)이법은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를이유로한차 별을금지하고장애를이유로차별받은사람의권익을효 과적으로구제함으로써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 등권실현을통하여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구현함 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자동차기타기구의범위)「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 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3조제3호후 단에서"그밖에장애인의활동을돕기위한자동차기타기 구"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개정2009.8.21>
	1. 장애인이 승·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 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제2조(장애와장애인)①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행위의사 유가되는장애라함은신체적·정신적손상또는기능상 실이장기간에걸쳐개인의일상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 제약을초래하는상태를말한다.	<ol> <li>7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제1항제</li> <li>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li> </ol>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2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
제3조(정의)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제3조(공공단체의범위)법제3조제4호에서"그밖에대통 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기관을말한다.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보조건"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 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장애인복지법」제65조 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 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 적인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장애인고용촉 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ti	시행령
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정 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ol> <li>"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li> </ol>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사용자"라 함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집,「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교육기관의범위)법제3조제6호에서"그밖에대통 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개정2011.5.19>
<ol> <li>"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li> </ol>	<ol> <li>「영재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 교육원</li> </ol>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ol> <li>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호에 따른 한국학교</li> </ol>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 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 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 는 것으로 본다.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4. 『공무원 교육훈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 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 육훈련기관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 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제5조(사용자제공정당한편의의내용)법제11조제3항에 따라사용자가제공하여야할정당한편의의구체적내용 은다음각호와같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ŭ	시행령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 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 ·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 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 •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제3 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15. "시설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 부를 말한다.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 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 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 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 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제6조(사업장의단계적범위)법제11조제3항에따라장애 인근로자에게정당한편의를제공하여야하는사업장의 단계적범위는별표1과 같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 · 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 · 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의료법」제3조의 의료 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 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7조(의학적검사의비용부담방식등)①사용자가법제12 조제1항단서에따라의학적검사를실시할때에사용자가 지정하는의료기관이아닌다른의료기관에서근로자가 의학적검사를받은후그검사에드는비용의명세를사용 자에게제출하는경우에는사용자는그가지정하는의료 기관에서검사를받을경우통상적으로소요되는금액을 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tl	시행령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 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 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② 사용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 게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작업일정 변경 등을 통하여 의학적 검사를 받는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행위)①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이라함은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제8조(정당한편의의내용)법제14조제1항제6호에따라교 육책임자가제공하여야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 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하는 경우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 공을 거부하는 경우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 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 수단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 리 ·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 조장하는 광고 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 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제9조(교육기관의단계적범위)법제14조제3항에따른교육기관의단계적범위는별표2와같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 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방, 스타괴 조건로 마하다.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및담당자)①교육책임자는법 제14조제3항에따라해당교육기관에재학중인장애인의 교육활동에불이익이없도록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 따라장애학생지원부서또는담당자를두어야한다.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법	시행령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 지 아니한다.	1.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 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 는 경우	<ol> <li>「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li> </ol>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 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 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 용되는 것으로 본다.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아니한다.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판단)①차별의원인이2가지이상이고,그주된 원인이장애라고인정되는경우그행위는이법에따른차 별로본다.	제11조(시설물의대상과범위)법제18조제4항에따른시설 물의대상과단계적적용범위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7조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대상시설중2009년4월11일이후신축·증축 ·개축하는시설물로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 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관련정당한편의의내용및설치기준)법제 18조제4항에따른시설물의소유·관리자가제공하여야 하는정당한편의의내용및그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 에따른다.
제6조(차별금지)누구든지장애또는과거의장애경력또는장 애가있다고추측됨을이유로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	
	제13조(이동·교통수단등정당한편의제공적용대상및정당한편의의내용)①법제19조제8항에따라교통사업자·교통행정기관이장애인의이동및교통수단등의이용에필요한정당한편의를제공하여야하는적용대상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별표1에따른다.
제7조(자기결정권및선택권)①장애인은자신의생활전반 에관하여자신의의사에따라스스로선택하고결정할권 리를가진다.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법	시행령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 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 원할 수 있다.
제8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①국가및지방자치단 체는장애인및장애인관련자에대한모든차별을방지하 고차별받은장애인등의권리를구제할책임이있으며,장 애인차별을실질적으로해소하기위하여이법에서규정 한차별시정에대하여적극적인조치를하여야한다.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의단계적범위및편의의내용)①법제21조제1항전단에따라장애인이접근·이용할수있도록수화,문자등필요한수단을제공하여야하는행위자등의단계적범위는별표3과같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 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제9조(다른법률과의관계)장애를사유로한차별의금지및 권리구제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것외에는「국가인권 위원회법」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한다.
	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차별금지	⑤법제21조제3항에따른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의구체 적인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신설2011.5.19>
	<ol> <li>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 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li> </ol>
제1절 고용	<ol> <li>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수화통역</li> </ol>
	<ol> <li>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 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li> </ol>
제10조(차별금지)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5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의 이행에필요한기준,방법등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한다.이경우방송통신위원회는미리국가인권위원 회와협의하여야한다.<신설2011.5.19>



법	시행령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⑦법제21조제4항에따라통신설비를이용한중계서비스 를제공하여야하는기간통신사업자의단계적범위는별 표3의2와같다.<신설2011.5.19>
	®법제21조제4항에따른통신설비를이용한중계서비스 는중계자가통신설비를이용하여문자나수화영상등을 음성으로변환하거나음성을문자나수화영상등으로변 환하여장애인과장애인또는장애인과장애인이아닌사 람간의통화를실시간으로중계하는서비스로한다.<신 설2011.5.19>
제11조(정당한편의제공의무)①사용자는장애인이해당 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장애인아닌사람과동등한근로 조건에서일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정당한편의를제공 하여야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차별금지)①법제24조제2항에 따라장애인이문화·예술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정당 한편의를제공하여야하는문화·예술사업자의단계적 범위는별표4와같다.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 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 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 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 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체육활동의차별금지)①법제25조제2항에따라국 가및지방자치단체가제공하여야하는정당한편의의내 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법	시행령
제12조(의학적검사의금지)①사용자는채용이전에장애 인여부를조사하기위한의학적검사를실시하여서는아 니된다.다만,채용이후에직무의본질상요구되거나직무 배치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 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 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 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 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 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제2절 교육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제13조(차별금지)①교육책임자는장애인의입학지원및 입학을거부할수없고,전학을강요할술 수 없고,「영유 아보육법」에 따른어린이집,「유아교육법」및「초·중 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는장애인이당해교육기관 으로전학하는것을거절하여서는아니된다.<개정 2011.6.7>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에따른교육기관의장은 「장애인등에대한특수 교육법」제17조를준수하여야한다.<개정2010.5.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사법・행정절차및서비스에있어서의편의제공 등)①공공기관및그소속원은법제26조제8항에따라장 애인이사법・행정절차및서비스를이용하거나그에참 여하기위하여요구할경우보조인력,점자자료,인쇄물음 성출력기기,수화통역,대독(代讀),음성지원시스템,컴 퓨터등의필요한정당한편의를제공하여야하고,장애인 의장애유형및상태를고려하여교정・구금시설에서계 구(戒具)를사용하거나고충상담,교도작업또는직업능 력개발훈련을실시할수있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 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44조의5에 따른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 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리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증인 장에인 및 장예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등수교육보조 및, 장애인 관련 지두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의료육적임자는 장애인의 제가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계 황에따른교육을실시하는경우정 당한사유없이해당교육과위정원학업시수들위반하 여서는아니된다.             제19조(직장보육서비스의용등에필요한사항)법제33조계 개최재계호에따른직상보육서비스의용등에필요한사항)법제33조계 개최재계호에따른직상보육서비스의용등에필요한사항 비계경기 방자치단체는장애인에게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계 황에따른교육을실시하는경우정 당한사유없이해당교육과위정원학업시수들위반하 여서는아니된다."개정2011.12.8>  제14조(정당한원의제공의무)①교육책임자는당해교육기관에제학증인장애인의교육활동에불이익이없도록 전체인 없도록 장애를 제기 의장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보이의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어 및 주대             1. 장애인의 문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를 제기 의장어린이집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원이의 및 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2. 직장어린이집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를 제기 문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소속 장애연성 근로자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ti	시행령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형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에게 『장애인등에비한 하는 경우정당한사유없이해당교육과정에정한학업시수들위반하여서는아니된다  제19조(직장보육서비스이용등에필요한사항)법제33조 제3항세3호에따른직장보육서비스이용등에필요한사항 한산사유없이해당교육과정에정한학업시수들위반하여서는아니된다  제14조(정당한편의제공의무)①교육책임자는당해교육기 문에 대학하인 장이에 의료 환수 학원 이 이 없도록 다음 가호의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제공하여야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작에인 및 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원용 책상 가증보안 내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배치나 휠세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사 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 통역, 문자통역속기), 정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남독 우래대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즐덕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등 의사소통 주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20조(시정명령의신청방법)법제43조제1항에따른시정 명령으신청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신청인의 성병・주소	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 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	법제33조제3항에따라직장보육서비스이용등에정당한 편의를제공하여야하는적용대상사업장은「영유아보육 법시행령」제20조제1항에따라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 여야하는사업장으로하되,이규정은2009년4월11일부
특수교육법」제3조제1항에따른교육을실시하는경우정 당한사유없이해당교육과정에정한학업시수를위반하 여서는아니된다.<개정2010.5.11>  제14조(정당한편의제공의무)①교육책임자는당해교육기 관에재학중인장애인의교육활동에불이익이없도록다음각호의수단을적극적으로장구하고제공하여야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배치 보건이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남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거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3항제3호에따른직장보육서비스이용등에필요한사항은다음각호와국서비스 이용 연외소 지원 1.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2. 직장어린이집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3. 소속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5.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5.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4. 사・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남독학제 보존에 발문하는 학생인을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 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	
지원  제14조(정당한편의제공의무)①교육책임자는당해교육기 관에제학증인장애인의교육활동에뷸이익이없도록다음각호의수단을적극적으로강구하고제공하여야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여유 공간확보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20조(시정명령의신청방법)법제43조제1항에따른시정명령은신청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을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6. 그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하는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특수교육법」제3조제1항에따른교육을실시하는경우정 당한사유없이해당교육과정에정한학업시수를위반하	제3항제3호에따른직장보육서비스이용등에필요한사
관에재학중인장애인의교육활동에불이익이없도록다음각호의수단을적극적으로강구하고제공하여야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여유 공간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각종 장애인보조기구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20조(시정명령의신청방법)법제43조제1항에따른시정명을신청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을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6. 그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하는		
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및 보조견의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및 평가방법의 제공  4.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5.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4.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5.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4.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5.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5.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대체가 제계를 하여야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관에재학중인장애인의교육활동에불이익이없도록다	
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20조(시정명령의신청방법)법제43조제1항에따른시정명형을신청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을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 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 ·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 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 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20조(시정명령의신청방법)법제43조제1항에따른시정 명령을신청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1. 신청인의 성명·주소		
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 •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 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 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20조(시정명령의신청방법)법제43조제1항에따른시정 명령을신청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1. 신청인의 성명·주소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5.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명령을신청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1. 신청인의 성명·주소	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 • 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 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명령을신청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을
'		1. 신청인의 성명·주소



ü	시행령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 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제21조(시정명령기간)법무부장관은법제43조제1항에따라피해자의신청에의하여시정명령을하는경우에는신청을받은날부터3개월이내에,직권으로시정명령을하는경우에는권고불이행을확인한날부터3개월이내에시정명령을하여야한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22조(시정명령서면)법제43조제3항에따른시정명령의 서면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제15조(재화·용역등의제공에있어서의차별금지)①재화·용역등의제공자는장애인에대하여장애를이유로장애인아난사람에게제공하는것과실질적으로동등하지않은수준의편익을가져다주는물건,서비스,이익,편의등을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1. 시정명령의 이유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 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 여서는 아니 된다.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제16조(토지및건물의매매·임대등에있어서의차별금 지)토지및건물의소유·관리자는당해토지및건물의매매,임대,입주,사용등에있어서정당한사유없이장애인 을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제17조(금융상품및서비스제공에있어서의차별금지)금 융상품및서비스의제공자는금전대출,신용카드발급,보 험가입등각종금융상품과서비스의제공에있어서정당 한사유없이장애인을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 는아니된다.	제23조(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①장애인차별에대 한시정명령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법무부에장 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한다) 를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ti	시행령
제18조(시설물접근·이용의차별금지)①시설물의소유 ·관리자는장애인이당해시설물을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대피함에있어서장애인을제한·배제·분리· 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 무실장, 인권국장, 인권 및 장애인차별문제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 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 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 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위촉위원의임기)제23조제3항에따라위촉된위원 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5조(위원장의직무및회의)①위원장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심의위원회의직무를총괄한다.
제19조(이동및교통수단등에서의차별금지)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및제6호에따른교통사업자(이하"교통사업자"라한다)및교통행정기관(이하"교통행정기관"이라한다)은이동및교통수단등을접근·이용함에있어서장애인을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개정2010.5.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해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 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ш	1150 24
<b>법</b>	시행령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 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견청취)위원장은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과관 런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계인을출석시켜의 견을들을수있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간사)심의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심의 위원회에간사1명을두되,간사는법무부소속공무원중 에서심의위원회위원장이지명하는자로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차별금지)①개인・법인・공공 기관(이하이조에서"개인등"이라한다)은장애인이전 자정보와비전자정보를이용하고그에접근함에있어서 장애를이유로제4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서금지한차 별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 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 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운영세칙)이영에서규정한것외에심의위원회의 운영에필요한사항은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 이정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등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의무<개정2010.5.11>)①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후단및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규정된행위자,제12호·제14호부터제16호까지의규정에관련된행위자,제10조제1항의사용자및같은조제2항의노동조합관계자(행위자가속한기관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행위자등"이라한다)는당해행위자등이생산·배포하는전자정보및비전자정보에대하여장애인이장애인아닌사람과동등하게접근·이용할수있도록수화,문자등필요한수단을제공하여야한다.이경우제3조제8호가목후단및나목에서말하는자연인은행위자등에포함되지아니한다.	제29조(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존중)법무부장관은시정 명령여부결정시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를존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방송법」제2조제3호에따른방송사업자와「인터넷멀 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따른인터넷멀티미 디어방송사업자는장애인이장애인아닌사람과동등하 게제작물또는서비스를접근・이용할수있도록폐쇄자 막,수화통역,화면해설등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를제공 하여야한다.<개정2010.5.11>	제30조삭제<2011.5.19>



법	시행령
④「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만해당한다)는장애인이장애인아 닌사람과동등하게서비스를접근・이용할수있도록통 신설비를이용한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문자서 비스또는그밖에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중 계서비스를포함한다)를확보하여제공하여야한다.<개 정2010.5.11>	
⑤다음각호의사업자는장애인이장애인아닌사람과동 등하게접근・이용할수있도록출판물(전자출판물을포 함한다.이하이항에서같다)또는영상물을제공하기위 하여노력하여야한다.다만,「도서관법」제18조에따른국 립중앙도서관은새로이생산・배포하는도서자료를점 자,음성또는확대문자등으로제공하여야한다.<신설 2010.5.11>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부칙〈제20766호,2008.4.10〉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제1항에따른필요한수단을제공하여야하는행위자등 의단계적범위및필요한수단의구체적인내용과제2항에 따른필요한지원의구체적인내용및범위와그이행등에 필요한사항,제3항과제4항에따른사업자의단계적범위 와제공하여야하는편의의구체적내용및그이행등에필 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신설2010.5.11>	이 영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①장애인의개인정보는반드시본 인의동의하에수집되어야하고,당해개인정보에대한무 단접근이나오·남용으로부터안전하여야한다.	
②제1항을적용함에있어서「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관련법률의 규정을준용한다.<개정2011.3.29>	부칙(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제21698호,2009.8.21〉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2조제5 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 ④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법	시행령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국가및지방자치단체 의의무)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특성을고려 한정보통신망및정보통신기기의접근・이용을위한도 구의개발・보급및필요한지원을강구하여야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 · 제작 · 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제22926호,2011.5.19〉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차별금지)①국가와지방자치 단체및문화·예술사업자는장애인이문화·예술활동 에참여함에있어서장애인의의사에반하여특정한행동 을강요하여서는아니되며,제4조제1항제1호·제2호및 제4호에서정한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 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 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 ·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 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3356호,2011.12.8〉
제25조(체육활동의차별금지)①체육활동을주최·주관하는기관이나단체,체육활동을목적으로하는체육시설의소유·관리자는체육활동의참여를원하는장애인을장애를이유로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 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46>부터 <54>까지 생략



법	시행령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2]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
제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별표 3]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제26조(사법·행정절차및서비스제공에있어서의차별금지)①공공기관등은장애인이생명,신체또는재산권보호를포함한자신의권리를보호·보장받기위하여필요한사법·행정절차및서비스제공에있어장애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별표 3 의2]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7 항 관련)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4]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별표 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 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 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 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사법기관은사건관계인에대하여의사소통이나의사 표현에어려움을겪는장애가있는지여부를확인하고,그 장애인이형사사법절차에서조력을받기를신청할경우 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하여서는아니되며,그에필요 한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개정2010.5.11>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와공직선거후보 자및정당은장애인이선거권,피선거권,청원권등을포함 한참정권을행사함에있어서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 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모·부성권의차별금지)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ti	시행령
③교육책임자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어린이집및 그보육교직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아동복지시설 및그종사자등은부모가장애인이라는이유로그자녀를 구분하거나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개정 2011.6.7>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차별금지)①모든장애인의성에관한권 리는존중되어야하며,장애인은이를주체적으로표현하 고향유할수있는성적자기결정권을가진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 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등에서의차별금지)①가 족·가정및복지시설등의구성원은장애인의의사에반 하여과중한역할을강요하거나장애를이유로정당한사 유없이의사결정과정에서장애인을배제하여서는아니 된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u></u> 법	시행령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차별금지)①의료기관등및의료인 등은장애인에대한의료행위에있어서장애인을제한・ 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 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등의금지)①장애인은성별,연령,장애의유 형및정도,특성등에상관없이모든폭력으로부터자유로 울권리를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 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시행령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 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 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대한차별금지)①국가및지방자치단 체는장애를가진여성임을이유로모든생활영역에서차 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 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 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 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 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 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법	시행령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ol> <li>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li> </ol>	
<ol> <li>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 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li> </ol>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대한차별금지를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여성에대한차별요인이제거될수있도록인식개선및지원책등정책및제도를마련하는등적극적조치를강구하여야하고,통계및조사연구등에있어서도장애여성을고려하여야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대한차별금지)①누구든지장애를가 진아동임을이유로모든생활영역에서차별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 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 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대한차별금지를위한국가및지방자치 단체의의무)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아동이장애 를이유로한어떠한종류의차별도없이다른아동과동등 한권리와자유를누릴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다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 런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장애를가진사람에대한차별금지등)①누구든지정신적장애를가진사람의특정정서나인지적장애특성을부당하게이용하여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행위로인하여피해 를입은사람(이하"피해자"라한다)또는그사실을알고 있는사람이나단체는국가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그내용을진정할수있다.	
제39조(직권조사)위원회는제38조의진정이없는경우에 도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행위가있다고믿을만한상당 한근거가있고그내용이중대하다고인정할때에는이를 직권으로조사할수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①위원회는이법에서 금지하는차별행위에대한조사와구제업무를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①제38조및제39조에따른진정의절차 ·방법·처리,진정및직권에따른조사의방법에관하여 이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사항에관하여는 국가인권위 원회법,의규정을준용한다.	



법	시행령
②「국가인권위원회법」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통보)위원회는이법이금지하는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권고를한경우그내용을법무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43조(시정명령)①법무부장관은이법이금지하는차별행 위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의권고를받은자가정 당한사유없이권고를이행하지아니하고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그피해의정도가심각하고 공익에미치는영향이중대하다고인정되는경우피해자 의신청에의하여또는직권으로시정명령을할수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 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확정)①법무부장관의시정명령에대 하여불복하는관계당사자는그명령서를송달받은날부 터30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법	시행령
제45조(시정명령이행상황의제출요구등)①법무부장관 은확정된시정명령에대하여차별행위자에게그이행상 황을제출할것을요구할수있다.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①누구든지이법의규정을위반하여타 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로인하여피해를입은사람에 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진다.다만,차별행위를한자가 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증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 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배분)①이법률과관련한분쟁해결에 있어서차별행위가있었다는사실은차별행위를당하였 다고주장하는자가입증하여야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 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구제조치)①법원은이법에따라금지된차 별행위에관한소송제기전또는소송제기중에피해자의 신청으로피해자에대한차별이소명되는경우본안판결 전까지차별행위의중지등그밖의적절한임시조치를명 할수있다.	



ŭ	시행령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 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①이법에서금지한차별행위를행하고 그행위가악의적인것으로인정되는경우법원은차별을 한자에대하여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할수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사용인,그 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악의적 인차별행위를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 는개인에대하여도제1항의벌금형을과한다.다만,법인 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 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 는그러하지아니하다.<개정2010.5.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①제44조에따라확정된시정명령을정당 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한자는3천만원이하의과태료 에처한다.	
②제1항에따른과태료는법무부장관이부과·징수한 다.<개정2010.5.11>	
③삭제<2010.5.11>	



ť	시행령
④삭제<2010.5.11>	
⑤삭제<2010.5.11>	
부칙〈제8341호,2007.4.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해당규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소위원회의 설립준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 의 소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소위원회 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소위원 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 로 본다.	
부칙(건축법)(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생략>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법률의개정)①부터<42>까지생략	
<43>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44>부터 <7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제9705호,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법률의개정)①부터⑥까지생략	
⑦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제2조제1호"를 각각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제2조제3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5호"로 한다.	
⑧부터 ②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제10280호,2010.5.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 은 조 제6항(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 내용별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은 같은 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개인정보보호법)〈제1046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법률의개정)①부터⑦까지생략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다목 중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 호"로 한다.	



ŭ	시행령
제22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법률의개정)①부터<24>까지생략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3 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8 조제3항 중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를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26>부터 <32>까지 생략	



## [별표 1]

##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

-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 [별표 2]

###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

- 1. 다음 각 목의 시설: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 가. 국・공・사립 특수학교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 급 학교
  -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
- 2. 다음 각 목의 시설: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 가. 제1호나목 외의「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제1호다목의 학교는 제외한다)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
  - 라.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100명 이상인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제1호라목 의 시설은 제외한다)
  - 마.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 3. 다음 각 목의 시설: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 나.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 다. 나목 외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 다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 라. 국·공립 보육시설 및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 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 바. 「공무원교육훈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 [별표 3]

#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제14조제1항 관련)

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1. 공공기관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교육기관	•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3. 교육책임자	•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5. 문화·예술사업자	•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6. 의료인 등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7. 의료기관 등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8. 체육 관련 행위자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9.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0. 시설물 관련 행위자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1.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1을 적용함
1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1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관계자	•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별표 4]

###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 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 · 예술사업자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 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각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대학박 물관
  -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대학미 술관
- 2.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미술관
- 3.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
  -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전시실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전시실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별표 5]

#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 (제16조제2항 관련)

### Ⅰ. 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설치 내용	
공통필수	편의 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 •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샤워실 · 탈의실 등 위생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실내시설	수영장	•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 · 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 보조 휠체어	
실	실내체육관	•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실외시설	야외경기장	• 경기장 진입 시설	
결퍼시얼	생활체육공원 등	•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 Ⅱ. 설치의무 적용 시기

- 1.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0년 4월 11일 부터 적용
- 2.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 3.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



### 「장애인 ㆍ노인 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 <개정 2012.8.2>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 1. 공원
-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 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4) 대피소
    - (5) 공중화장실
    -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 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 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

####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바. 의료시설

-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3) 삭제 <2012.8.22>
-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 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아. 노유자시설

-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 자. 수련시설

-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
- (2) 자연권수런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 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1) 체육관
  -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 ·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 카. 업무시설

-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타. 숙박시설

-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 하. 자동차관련시설
  - (1) 주차장
  - (2) 운전학원
-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더. 묘지관련시설
  - (1) 화장시설
  -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러. 관광휴게시설
  -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공동주택

- 가. 아파트
-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 4. 통신시설

- 가. 공중전화
- 나. 우체통



## [별표 2] <개정 2012.8.22>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12조관련)

## 1. 삭제 <2006.1.19>

## 2. 공원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 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 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 · 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ul> <li>(1) 「자연공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li> <li>(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li> </ul>



##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가. 일반사항

편이니셔이 조금	서리기조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ul> <li>(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ㆍ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 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li> </ul>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ul> <li>(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본다.</li> <li>(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li> </ul>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ul> <li>(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 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li> </ul>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ul> <li>(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등의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li> </ul>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ul> <li>(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 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ul>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 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충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충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 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 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 안내설비	<ul> <li>(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li> <li>(나) 삭제&lt;2007.2.12&gt;</li> <li>(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li> </ul>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피난설비	<ul> <li>(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괴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li> <li>(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li> </ul>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 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 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 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 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마	개시	널	내	부시설	1		우	생시설	설		인	내시	설		7	기타시	설		
대성	편의시설	주 출 입 구 접 근 로	정 중 인 전 용 사 차 구 평	주 출입 구 높 이 차 이 제 거	출 히 구 만	꽤 너	계 단 또 는 승 강 기	대 변 기	화장실 소 변 기	세 면 대	욕 질	샤 워 실 · 탈 의 실	점 자 블 록	유 দ 및 한 ザ 절 ᄞ	졍 뫄 밅 피 난 젤 피	객 실 ㆍ 침 실	관 람 석 ㆍ 열 람 석	접 수 품 ㆍ 착 집 품	田 묲 소・ 판 매 기・ 음 료 대	임산 부 IIO @	비 고
제 1 종	수퍼마켓 ·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 · 미용원 · 목욕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근 린 생 활 시 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마	개시설	설	내	부시설	₫		우	생시	설		인	내시	설		7	기타시	설		
	\	주 출	장 애	주 출	출 입	복 도	계 단	<u> </u>	화장실		욕실	샤 워	점 자	유 도	경 보	객 실	관 람	접 수	매표	임 산	
대심	면의시설	할입구접근로	이 전 용 주 차 구 역	a입구높이차이제거	급 구 (문)		또 는 승 강 기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n	며실 탈의 실	지 블 록	고 및 안 내 설 비	모 및 피 난 설 비	· 침 실	ㅁ석 · 열 람 석	대 ・ 작 접 대	·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고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비 고
	고용공단・근로 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용도의시설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소 (산후조리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지역아동센터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300㎡ 이상만 적용
제 2 종 근 린 생 활 시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 제과점 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300제곱미터 이상)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설	안마시술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문 화 미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및	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회 시 설	전시장, 동·식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종 교 시 설	종교집회장 (교회・성당・ 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m² 이상
판 매 시 설	도매시장・소매 시장・상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 m² 이상



		0	개시설	설	내	부시실	₫		우	생시	설		인	내시	설		7	타시	설		
	\	주	장	주	출이	복 도	계다	3	화장실	!	욕시	샤	점	유	경	객시	관	접	매	임사	
대성	편의시설	출 입 구 접 근 로	애인전용주차구역	출입구높이차이제거	입 구 (문)	포	단 또 는 승 강 기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실	워 실 ㆍ 탈 의 실	자 블 록	도 및 안 내 설 비	보 및 피 난 설 비	실 ㆍ 침 실	람 석 · 열 람 석	수 대 ㆍ 작 집 대	표소・판매기・음료대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비 고
의 료 시 설	병원·격리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교 육	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면 구 시 설	교육원 · 직업 훈련소 · 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m² 이상
	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1000 m² 이상
노	아동관련시설 (어린이집 · 아동복지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유 자 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을 포함 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수 편 시 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운 동 시 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m² 이상
업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무 시 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m² 이상



		마	개시	설	내	부시설	₫		우	생시	설		인	·내시·	설		7	기타시	설		
대싱	편의시설	주 출 입 구 접 근 로	장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 거	출 입 구 (문)	복도	계 단 또 는 승 강 기	대 변 기	화장실 소 변 기	세 면 대	여 길	샤 워 실 ㆍ 탈 의 실	점 자 블 록	유도및안내설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객 실 ㆍ 침 실	관 람 석 ㆍ 열 람 석	접 수 대 ㆍ 작 접 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비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 공단・근로복지 공단 및 그 지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1000 m² 이상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숙 박 시 설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 관광호텔, 한국 전통호텔, 가족 호텔, 휴양콘도 미니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공 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자 동	주차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 차 관 련 시 설	운전학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방 송 통	방송국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 m² 이상
신 시 설	전신전화국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 m² 이상
교 정 시 설	교도소・구치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종교시설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마	개시	널	내	부시실	1		위	생시설	설		인	내시	설		7	타시	설		
대신	편의시설	주 출입 구 접 근 로	장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 출입 구 높 이 차 이 제 거	출 집 구 문	복도	계 단 또 는 승 강 기	대 변 기	화장실 소 변 기		여 고	샤 워 실 · 탈 의 실	점 자 블 록	유도및안내설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객 실 ㆍ 침 실	관 함 작 ㆍ 열 함 작	접수대ㆍ착접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비 고
관 광 휴 게 시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 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설	휴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장례식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 4. 공동주택

## 가. 일반 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ul> <li>(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ㆍ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li> </ul>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ul> <li>(가) 아파트의 아파트의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 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li> <li>(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li> </ul>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ul> <li>(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li> <li>(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li> </ul>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ul> <li>(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 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li>(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li> </ul>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 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 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ul> <li>(가)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나) 「주택법」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li> </ul>



##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0	H개시	설	내	부시설	₫		우	생시	설		인	내시	설		7	타시	설		
편의 시설 대상 시설		장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 입 구 (문)	복도	계 단 또 는 승 강 기	대 변 기	화장실 소 변 기	네 면 대	욕실	샤 워 실 ㆍ 탈 의 실	점 자 블 록	유도및안내설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객 실 ㆍ 침 실	관 람 석 ㆍ 열 람 석	접수대・작업대	田 표 소・ 판 매 기・ 음 료 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비 고
아파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연립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다세대 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기숙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 에만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의 경우 출입구 (문)는 권장사항임

## 5. 삭제 <2006.1.19>

## 6. 통신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별표 1] <개정 2011.9.2>

## <u>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u>제2조제1항관련)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 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기울기 등

-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다. 경계

-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여야 한다.
-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 라. 재질과 마감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 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3)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 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 는 그 가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보행장애물

-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 2. 삭제 <2007.3.9>
- 3. 삭제 <2007.3.9>
-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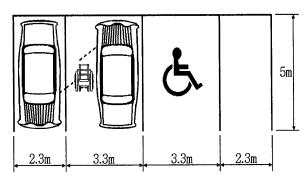
#### 가. 설치장소

-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 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주차공간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 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 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로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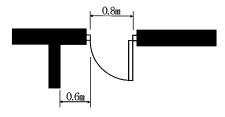
-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나. 문의 형태

-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 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

#### 224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 가. 유효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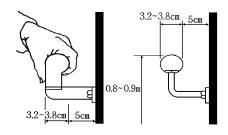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나. 바닥

-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 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삭제 <2007.3.9>

### 다.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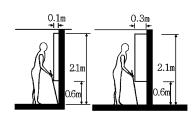
- (1)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라. 보행장애물

-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안전성 확보

- (1)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 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 가. 계단의 형태

-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 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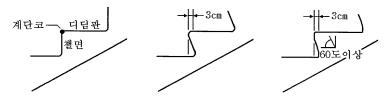
#### 다. 디딤판과 챌면

- (1)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 하도록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 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마. 재질과 마감

-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 (2)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개로 마감하여 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 을 달리하여야 한다.

### 바. 기타 설비

-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 (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 9. 장애인용 승강기

####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나. 크기

-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다. 이용자 조작설비

-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라. 기타 설비

-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 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



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 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 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 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 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 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 도록 하여야 한다.
- (9) 충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가. 유효폭 및 속도

-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 나. 디딤판

- (1)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 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 다. 손잡이

-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 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 야 한다.
- (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11. 휠체어리프트

#### 가. 일반사항

-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 (3) 운행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 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 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 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 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 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 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 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 나. 기울기

-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 다. 손잡이

-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 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다.

#### 라. 재질과 마감

-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 야 한다.
-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 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가. 일반사항

- (1) 설치장소
  -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 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재질과 마감

-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3) 기타 설비

- (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 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 (2) 구조

-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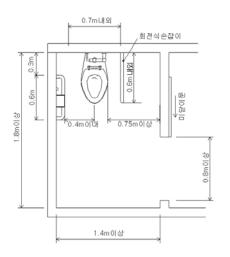
#### (3)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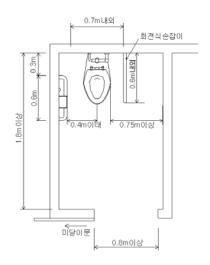
-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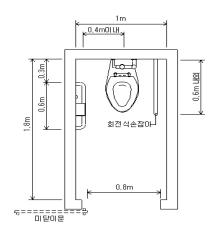
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 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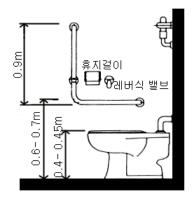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신축건물)〉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4) 기타 설비

- (가)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 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 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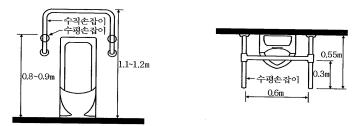
##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 (2) 손잡이

-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 하여야 한다.
-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 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 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세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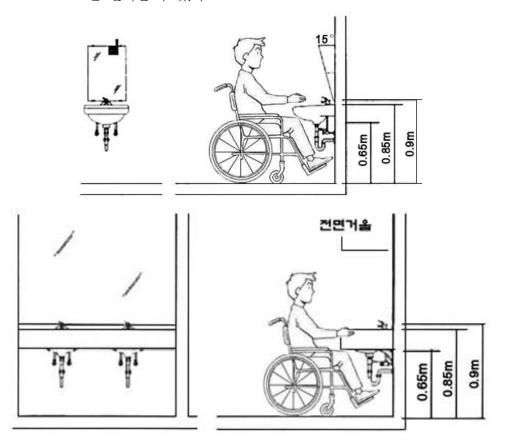
### (1) 구조



-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 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 를 설치할 수 있다.
-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 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 을 설치할 수 있다.





####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 가.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구조

-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 (1)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라. 손잡이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마. 기타 설비

-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 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 (4)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 1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 가.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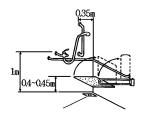
-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 야 한다.

#### 라. 손잡이

샤워실에는 장애인 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 를 설치할 수 있다.

#### 마. 기타 설비

-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 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 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6. 점자블록

#### 가. 규격 및 색상

-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



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 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점형블록

선형블록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설치방법

-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 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 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 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 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 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 17. 시각장애인 유도 · 안내설비

####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 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 나.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18.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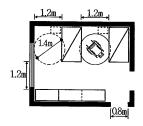
1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 나. 구조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 바닥

-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라. 기타 설비

- (1)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 및 제14호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가. 일반사항 중 (2)의 (가)·(3)의 (나), 나. 대변기 중 (1)내지 (3)·(4)의 (가), 라. 세면대 및 장애인 등의 이용이가능한 욕실의 나. 내지 마.의 규정을 적용한다.
- (3)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 (5)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관람석의 구조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다. 열람석의 구조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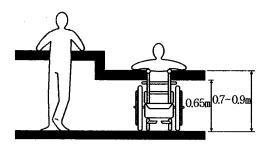
-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나. 구조

-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 판매기 또는 음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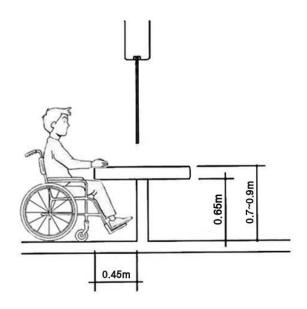
#### 가. 활동공간

때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 공가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나. 구조

- (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 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다. 기타 설비

- (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행선지 등을 점 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 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 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23. 삭제 <2007.3.9>
- 24. 삭제 <2007.3.9>
- 25. 삭제 <2007.3.9>
- 26. 삭제 <2007.3.9>
- 2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 가. 설치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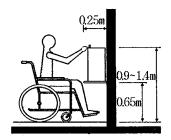
공중전화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2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다. 이용자 조작설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라. 기타 설비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 2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 가. 설치장소

우체통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구조

우체통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비고 : 위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항목 중 "…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항은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임

### 2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구조

-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244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공직선거법

[법률 제11485호 일부개정 2012. 10. 02.]

###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②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⑦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 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 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 일 후 2일까지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대에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1.7.28]

####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⑥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4.3.12]



##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 · 대행등)

- ③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의 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회(이하 "읍·면·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그위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7.28]
- 1. 선거벽보의 접수·확인·첩부 및 철거에 관한 사무
- 2. 매세대발송용 선거공보(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의 접수·확인 및 발송에 관한 사무
- 3.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시 · 도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 제74조(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①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이라 한다)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71조(투표용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 서식에 의하되, 점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글점자로 표시한다.[개정 1995.4.14, 1997.11.14, 2002.3.21]

②구·시·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 투표관리관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보조용구는 시각장애선거인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표를 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5.8.4]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0367호 일부개정 2010. 06. 10.]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2009.3.5] [[시행일 2009.6.6]]
-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012.8.13>

## <u>문화시설의 상세 분</u>류(제2조제2항 관련)

#### 1. 공연시설

-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 1) 종합공연장: 시ㆍ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 상영장
-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 2. 전시시설
  -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 3. 도서시설
  -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나. 문고: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
- 4. 지역문화복지시설
  -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



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 나. 복지회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그 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ㆍ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 5. 문화 보급·전수시설
  -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 6. 종합시설: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 7. 그 밖의 문화시설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I인 쇄I 2012년 11월

| 발 행 | 2012년 11월

| 발행인 | **현 병 철**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조시국 장애차별조사1과

I 주 소 I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Ⅰ전 화Ⅰ (02) 2125-9832 ⅠFAXⅠ (02) 2125-9848

I Homepage I www.humanrights.go.kr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Ⅰ전 화Ⅰ (02) 313-7593 ⅠFAXⅠ (02) 393-3016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337-10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